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JANUARY 1988. NO. 226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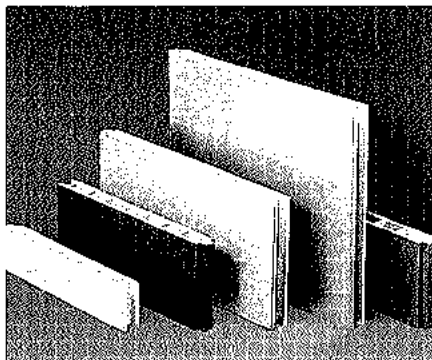


1988. 1



• 동일신약GMP 공장 • 설계 • 감리 / **正原 綜合建築士事務所**

미려한 건축물을 계획하신다면 베이스판넬을 선택하십시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 경량성** / 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내구성** /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사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 용도 / 건축물의 외벽 · 칸막이 · 계단 · 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의 압출제품

벽산 베이스

• 제품·시공문의상담 / 273-9211~9 (구내281) 베이스사업부

‘韓國의 建築’ 原稿마감 案内

본 협회에서는 건설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나라 건축 문화의 고금(古今)을 집대성한 “韓國의 建築”誌를 발간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여 왔으며, 2월 10일으로써 원고를 마감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간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발간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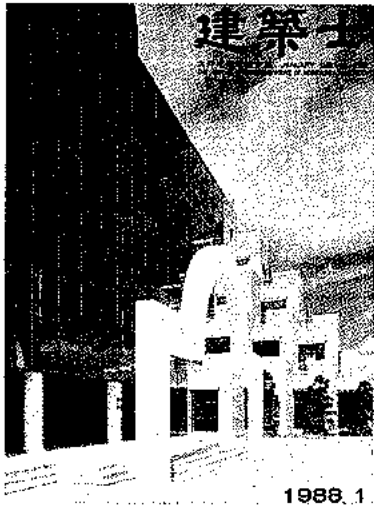
- ☐ 각 시대별 건축작품에 대한 개요기술
- ☐ 수록내용 / 傳統建築編 약50작품
近代建築編 약100작품
現代建築編 약250작품
총 400작품(400페이지)
- ☐ 책의모양 / 5×7배판(한·영문 / 원색인쇄)

편집내용

- ☐ 우리나라 建築文化의 位相 定立
- ☐ 建築時代史의 再照明
- ☐ 國際化時代의 韓國建築 弘報
- ☐ 現代建築의 質的向上 도모

작품별 편집내용

- 1) 설계의 주안점(문제점) : 설계상의 특이한 점 · 새로운 점 · 장점 · 기술 등
- 2) 작품의 연혁 : 수상경력 · 용도 · 면적 · 건축주 · 소재지 · 준공년월일(작품명 및 설계자명은 영문표기)
- 3) 작품의 사진
- 4) 도 면 : 선정된 작품의 주요 평면도 1매



建築士

차 례

1988년 1월호(통권226호)

표지사진: 수원대학 사회과학관
설 계: 姜錫元(종합건축사사무소 구름기)

발행인 안기태

편찬위원회

위원장 안장원 위 원 강태석
부위원장 김 린 위 원 변 용
위 원 김기석
위 원 박영호
위 원 김경동

편집 출판사업부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동1603-55
우편번호 135
전화: 서울(02) 교 581-5711(대)
5712, 5713, 5714
등록번호 제라-1251
등록일자 1967년 3월23일
U.D.C. 69/72(054-2): 0612(519)
인쇄: 광문정판사
인쇄인: 전윤규

Publisher: An, Kie-Tae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Ahn, Chang Won
Vice Chairman: Kim Lin
Member: Kang, Tae-Suck
Byun, Yong
Kim, Ki-Seok
Park, Young-Ho
Kim, Chung-Dong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Editorial Department

Editorial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603-55 Seocho-dong, Kangnam-gu, Seoul Korea
☎ Seoul 581-5711 ~ 5714
Zip Code: 135

Registered Numb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D.C.: 69/72(054-2): 0612(519)

Print: Kwangmoon Printing Co.

Printer: Jeon Yun Kyu

본지는 한국도시잡지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新年辭

- 6 '88년은 더욱 일하는 해..... 安箕泰會長
8 國土開發 內實있게 추진..... 崔同燮建設部長官

제3차 아시아建築士大會 開催案内

會員作品

- 15 동광빌딩..... 盧亨來
18 한신대학 임마뉴엘관..... 金仁錫
21 수원대학 가정생활관, 사회과학관..... 姜錫元
24 안현장..... 吳基守
26 주택은행 사당동지점..... 張錫雄
28 제일은행 본점..... 尹承重·卞鎔·李永熙

隨筆 / 새해를 맞으며

- 32 永遠한 建築과 建築士..... 曹龜鉉
33 “우리”의 소중함을 再認識..... 金武彦
34 넷물 속에 저 돌을 보아라..... 崔英集
35 올림픽과 나, 그리고 異空..... 柳春秀

批評

- 36 한국현대건축의 오늘..... 申在淳

- 42 올림픽광장..... 이덕시

座談會

- 43 건축사업무에 있어서 협업의 실제와 전망

이달의 詩

- 60 내가 사랑하는 집..... 황금찬

企劃連載

- 62 外國의 現代建築家 소개③ / 피터 아이젠만..... 成仁洙

資料

- 59 '88정부 勞賃 단가 기준
79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
98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안
100 協會消息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226 호
구입년월일	1988.1.31.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전국시도지부 및 분소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동1603-55 /
561-5715-8

서부분소/서대문구연희동169-16/333-1873
남부분소/관악구신림동1422-17/882-6744
북부분소/도봉구수유동191-13/903-3425
강동분소/강동구성내동317-4/484-6387
강서분소/강서구화곡동1105-5/604-7168
동대문분소/동대문구신설동101-7/923-6213
성동분소/성동구구의동252-16/446-5244
영등포분소/영등포구당산3가81/634-2143

부산직할시지부/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17가(부산에파르네)
(051) 23-3584~5

대구직할시지부/대구직할시수성구벌어동37가1-8/
(053) 72-5141~2

광주직할시지부/광주직할시동구대인동323-11/(062) 521-7598
인천직할시지부/인천직할시남구간석1동558-1/
(032) 424-0146, 5100

(한국종합빌딩 204호)

경기도지부/경기도수원시매산로37가124-5/(0331) 42-6490
7072

안양분소/안양시안양동719-9/(0343) 2-2898, 2-0012
부천분소/부천시원미동74-6/(032) 63-3144

성남분소/성남시신원동5512/(0342) 2-5445

의정부분소/의정부시외정동182/(0351) 2-1083

송탄분소/송탄시신광동21/(0333) 4-6153

고양분소/고양시원당읍주교리38번지16번지/(0344) 63-8992

구리분소/구리시수택동409-2/(0346) 63-8112

이천분소/이천시이천읍중리216-8/(0336) 2-3396

광명분소/광명시철산동454-7/682-2875

강원도지부/강원도춘천시육천동39-5/(0391) 2-2442

원주분소/원주시일산동206/(0371) 42-3257

강릉분소/강릉시내동6/(0391) 2-2262

속초분소/속초시중앙동468-66/(0392) 2-5081

삼척분소/삼척시남양동55-43/(0397) 2-3106

영월분소/영월군영월읍영월1리959-35/(03732) 2659

충청북도지부/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2가116-168/
(0431) 2-2752

충주분소/충주시연전동673-1/(0441) 2-3082

제천분소/제천시외동8-8/(0443) 2-6253

옥천분소/옥천군옥천읍삼산리139-4/(0433) 2461

충청남도지부/충청남도대전시중구대흥동497-1/
(042) 22-4088

천안분소/천안시문화동160-14/(0417) 2-4551

홍성분소/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0451) 2-2853

부여분소/부여군부여읍문리710-2/(0463) 2-2217

전라북도지부/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대륙빌딩508)
(0652) 3-3881

익산분소/익산시남중동1가77-22/(0653) 52-3304

군산분소/군산시중앙로1가85/(0654) 2-4060

남원분소/남원시하정동106-2/(0671) 2-6002

전라남도지부/전라남도서구화정동783-23(추선회관)
(062) 364-7567

목포분소/목포시호남동1/(0631) 2-7280

순천분소/순천시광천동51-3/(0651) 2-7892

여수분소/여수시관동435/(0662) 64-1144

경상북도지부/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17285번지/
(053) 45-4904

포항분소/포항시죽노동96-70/(0562) 74-9713

경주분소/경주시노동9-1/(0561) 2-2680

구미분소/구미시원평동356-2/(0546) 52-7903

안동분소/안동시삼산동125-19/(0571) 2-3641

김천분소/김천시남산동23-10/(0547) 2-2263

영주분소/영주시영주4동470-17/(0572) 2-4566

문경분소/문경시점촌동261-2/(0581) 2-2706

경상남도지부/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 3가 3/
(0551) 2-4530~1

울산분소/울산시남구신정동585-6/(0522) 74-8836

74-2555

진주분소/진주시본성동7-20/(0591) 2-6403, 42-3434-5

충무분소/충주시서호동177-101/(0557) 2-2504, 2-7420

김해분소/김해시부원동25B-17L/(0594) 2-3155

밀양분소/밀양군밀양읍내일동67-1/(0527) 53-2110

거창분소/거창군거창읍하동483-9/(0598) 2-3777

양산분소/양산군양산읍다방리500-3/(0523) 4-2669

거제분소/거제군신현읍고현리139-2/(0553) 32-1086,
2-3372

제주도지부/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5/(064) 22-3248

52-3248

서귀포분소/서귀포시서귀동425-1/(0642) 62-3920, 3322

CONTENTS

January 1988 Vol.226

NEW YEAR ADDRESS BY KIRA PRESIDENT..... 6

NEW YEAR ADDRESS BY MINTSTER OF CONSTRUCTION..... 8

INTRODUCTION OF THE 3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11

WORKS

Dongkwang Buildin(Shin Sa-dong)..... Ro, Hyung-Rae 15

Immanuel Hall, Hansin College..... Kim, In-Suk 18

Home Economics Law and Politicalscience Building(Suwon College)·· Kang, Suk-Won 21

Ahn-Hyun Jang..... Oh, Ki-Soo 24

Sadang-dong Branch, Korea Housing Bank..... Jang, Suk-Woong 26

Korea First Bank Headquater Yoon, Seung-Jung + Byun, Yong & Lee, Young-Hee 28

ESSAY

..... Cho, Koo-Hyun 32

..... Kim, Moo-Eon 33

..... Choi, Young-Jip 34

..... Ryu, Choon-Soo 35

CRITICISM

Today's Korean Architecture..... Shin, Jae-Soon 36

OLYMPIC PLAZA

..... Lee, Duk-See 42

TABLE TALK

The Present and Furture of the Co-ordination in the Archtitectual Practice..... 43

POEM

My Favorite Housing..... Whang, Keum-Chan 60

SERIAL

Overseas Contemporary Architects-Peter Eisenman..... Seong, In-Soo 62

METERIALS

..... 79

KIRA NEWS

..... 100



會長 安箕泰

'88年은 더욱 일하는 해

1988년 새 해를 맞아 會員 여러분의 가정에 幸運이 넘치시고 事業이 더욱 번창 하시기를 祈願 합니다.

지난 1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協會와 會員 모두에게 큰 일이 많았던 해였습니다만 協會를 중심으로 協調를 잘 해주셔서 希望찬 新年을 맞게 되었음을 感謝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16년만의 大統領 直接選舉 등 이 땅에 民主化를 실현하려는 意志가 具現되는 역사의 한 章에 온 국민이 다 함께 동참할 수 있었던 감격을 경험할 수 있었고 經濟的으로도 안정기반의 지속 가운데 놀라운 高度成長을 달성하는 등 큰 성과가 기록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월에 새 民主政府가 출범하고 또 올림픽을 개최하게 됨으로써 또 한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분야에서 눈부신 跳躍이 기록될 것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우리 建築分野에도 올해는 이같은 고무적인 여러 여건에 힘입어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만, 發展은 問題를 解消하고 難關을 克服하는 忍耐와 研究와 努力가운데서 수확되는 結果인 만큼, 본인은 이 해를 <더욱 일하는 해>로 뜻을 세우고 本協會의 業務發展을 위하여 會員 여러분의 倍前의 協力を 當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오랜 연구와 준비 끝에 실시하는 본협회의 獨立豫算制度는 그 궁극의 목표가 聯合會制度의 實現에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여기에 필요한 定款과 諸規程의 합리적인 改正이 되도록, 聯合會制度 定着을 위한 研究가 있어야 할 것이며 올해 그 努力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獨立豫算制度를 연구할 당시에는 豫算의 대폭적인 절감을 附隨效果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만 支部豫算만을 놓고 87년도와 대비하여 볼 때 統合豫算制度下에서 보다 전체적으로 37.4% 정도 팽창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豫算이 팽창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支部 및 會員들의 發展意志가 높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해되어 본인은 마음 든든하게 생각 합니다만, 이처럼 넘치는 의욕을 여하히 조정하면서 효과적으로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도록 豫算을 運用해 나가느냐 하는 점에서, 특히 獨立豫算制가 아직은 익숙하지 못해 때로는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現 與件으로 보아서도 支部長을 비롯한 任員陣의 투철한 責任感과 높은

管理能力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름든 궁극적으로 독립예산제 실시는 연합회제도 실시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과도적 조치인 만큼 연합회 제도로의移行・發展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방안을 찾고, 문제가 있다면 치유해 나가면서 堅實하게 독립예산제를 발전시켜 주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建設技術管理法에 대하여는 建築士가 바라는 바가 施行令에 적극 반영되도록 관계 실무자와 긴밀한 협조가운데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의 主張이 貫徹될 때까지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努力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본협회가 서울에 誘致,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개최기로 한 ARCASIA大會도 우리와 협력관계에 있는 세계 건축사기구 중의 하나인 아시아地域建築士會議 (Asian Congress of Architects)가 主管하는 대회로서 13개 會員國과 10여개 參觀國에서 총 8백여명의 建築士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大會에서는 本機構의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외에 특히 다음과 같은 행사도 병행하여 이 대회의 開催成果를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會員建築設計作品展示會

우리 建築士의 수준 높은 設計實力을 과시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地位를 향상하고 국제 건축계에서의 建築文化의 창조적 분담자로서 同參의 幅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시아地域 建築學生 奩보리大會

아시아地域 建築專攻 學生들을 초청, 작품발표, 논문발표, 토론 등의 기회를 갖게 하여 아시아지역 건축문화의 발달에 대한 關心을 높이고 또 貢獻할 수 있도록 이해와 협력증진의 動機誘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建築資材展示會

훌륭한 國產建築資材를 엄선하여 한 자리에 모아 전시・선전 함으로써 우수한 生産技術과 品質을 참가국 建築士들에게 알려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증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협회는 또한 「韓國의 建築」發刊, 「住宅部」新設建議, 우르콰이 뉴라운드 對策樹立, 特別銓衡制度 改善, 建築行政의 合理的 改善 등을 위해서도 전심전력 하고자 합니다.

尊敬하는 會員 여러분

이상 몇가지로 본협회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重要業務를 요약하여 말씀드렸읍니다만 이 외에도 많은 業務가 協會發展의 次元에서 또 會員權益伸張의 次元에서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업무추진의 결과가 뜻한대로 좋은 結論에 도달 하려면 무엇보다 회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關心과 幇援이 있어야 함은 두말 할 필요 없습니다.

바라건대 會員 여러분께서도 協會와 會員의 더 큰 발전을 위하여 「더욱 일하는 해」로 新年 目標를 設定한 本人의 뜻을 적극 理解하고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가 심기일전 하여, 跳躍을 기약하는 엄숙한 自己省察과 마음의 宣誓가 가슴을 뜨거워지게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尊敬하는 會員 여러분,

88년 戊辰年은 龍의 해라 하여 모두가 希望에 빅차고 幸運이 넘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本協會도 이 해에는 會員 여러분이 協會를 중심으로 和合 團結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일과 더 큰 일들을 이루어 내는 跳躍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며, 龍이 구름을 얻어 昇天하는 큰 幸運이 여러분의 家庭과 하시는 일 위에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戊辰元旦

會長 安箕泰



建設部長官 崔東曄

國土開發 內實있게 추진

건설不條理一掃,
公共開發에 補償現實化

희망에 찬 戊辰 새해를 맞이하여 건설인 여러분과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祈願합니다.

돌이켜보전대, 지난 7년간은 우리 국민 모두가
對內外的으로 많은 難關과 隘路를 슬기롭게 이겨내면서
땀흘려 일한 결과 획기적인 物價安定基盤을 확고히 다져
또한 이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高度成長의 지속과 雇傭의
安定을 유지하면서 外債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각 부문간
국민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국민의 무한한 잠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반을 튼튼히 다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建設人 여러분들께서도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國土建設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直選制方式에 의하여 수립되는 새로운 政府가
출범하게 되며 모든 국민이 새 政府와 더불어 힘을 모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우리 民族의
優秀性을 온 세계에 당당하게 펼쳐보이게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北韓의 금강산댐 건설에 대응하기
위한 平和의 댐 1段階 建設工事が 완공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에 새롭게 펴 나갈 국토건설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地域間均衡 開發과 國上의 效率的 利用으로
內實있는 國土開發을 즐기차게 推進해 나가겠습니다.

首都圈은 人口와 産業의 集中을 繼續 抑制하고, 작년
12월에 확정 발표한 中部圈과 東南圈 綜合開發計劃을
알차게 推進하며, 西南圈 綜合開發 基本計劃을 年內에
確定시키고, 濟州道를 비롯한 多島海, 太白山 및
88올림픽 高速道路周邊等 特定(落後) 地域開發도 繼續
推進하겠습니다.

新規工業團地의 確保와 大陸圈 및 美·日 등 太平洋
經濟圈과의 交易仲介基地造成을 위하여 始華地區開發
事業을 착실하게 推進하여 1단계 사업은 '90년까지,
2 단계 사업은 '97년까지 마치겠으며, 鳴旨·蓼山을
비롯한 大佛과 群山·長項 産業基地 開發計劃을 年內에
樹立,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國民生活 基盤施設을 質的으로 改善하고
福利增進에 最大限 力點을 두겠습니다.

無住宅國民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公共部門에서
19만5천호, 民間部門에서 12만5천호 도합 32만호의
주택을 건설 공급할 계획이며 이중 특히 도시영세민과

무주택 근로자를 위하여 賃貸住宅 6만호를 建設 供給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실질적인 住宅購入 能力向上을 위하여 각종 支援施策을 강화하며, 새로운 住宅融資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國民福祉年金 資金을 住宅融資金으로 활용하고 住宅抵當債券을 資金源으로 하는 새로운 주택금융제도를 연구하겠습니다.

한편 전국 어디서나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都市地域 給水 水準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邑·面 상수도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首都圈 3段階 (1,300천톤/일), 南江系統 (75천톤/일), 太白圈 (70천톤/일) 廣域 上水道事業을 完工하고, 이어서 達芳댐 (40천톤/일)은 '89년에, 琴湖江系統 (360천톤/일)은 '90년에 完工하며, 새로이 首都圈 4段階 (1,500천톤/일), 蟾津江系統 (75천톤/일) 廣域上水道 事業을 착수함과 동시에 122개 지방도시 상수도사업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수처리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全額 國庫投資로 추진중인 工業都市 下水道인 蔚山 (250천톤/일), 溫山 (150천톤/일)은 '90년까지, 昌原 (250천톤/일)은 '9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國庫支援 事業으로 추진중인 大邱, 仁川, 光州, 大田, 全州, 春川, 水原 등 19개 도시하수도는 '92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국민 휴식공간 擴充을 위하여 18개 국립공원에 대한 시설을 계속 整備하고, 閑麗海上國立公園을 國際休養地로 조성할 계획이며 새로이 月出山과 邊山半島를 국립공원으로 추가 지정할 뿐아니라 都市公園에 대하여도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소유자 및 개발 희망자의 투자를 유도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도시별로 시범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都市街路網體系를 재정비하고 주차장을 확대하며 肢體障礙者 專用駐車場을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방재지구를 신설하여 도시계획 입안시부터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등 재해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5회의 재해가 발생하여 951명의 귀중한 인명피해와 7,158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고 복구비만도 1조 399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의 河川流域別 및 海岸脆弱地域에 대한 恒久的이고 綜合的인 防災 中長期綜合對策을 수립하여 내쳐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蟾津江에 洪水豫警報施設을 설치하고, '89년에는 錦江, 榮山江에도 설치하여 홍수 예·경보의 과학화를 기하는 한편, 전국 163개 지구의 수해상습지를 모두 개선하고, 2 단계로 298개 지구를 선정, 올해부터 개선작업에 착수하여 '9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째, 經濟의 先進化를 위하여 社會間接資本을 持續的으로 擴充해 나가겠습니다.

국도의 혈맥인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일반국도 380km, 농어촌도로 780km를 포장하고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새로이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板橋~九里間 23.5km, 新葛~半月間 23.4km의 서울外廓 循環高速道路建設에 착수하여 '9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大邱~春川間 280km, 晉州~大田間 177km, 大邱~金海間 86km, 中部內陸間 (龜尾~尚州~利川間) 166km의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전장 505km의 西海岸 (仁川~木浦~順川間) 高速道路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실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공업항 건설은 浦項, 昌原, 麗川, 光陽工業港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90년까지 모두 완료하겠으며, 서해안 시대에 대비한 據點基地로서 西海岸 (牙山) 多目的港灣 開發計劃을 수립하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댐 건설은 陝川댐을 올해에 완공하고, 住岩, 臨河댐은 '90년에, 南江댐은 '91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개발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를 韓國水資源公社로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수자원개발 기능만을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네째, 土地政策을 發展的으로 再定立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不動產投機를 강력히 억제하므로써 地價가 어느 때보다도 안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기간중 弛緩된 분위기로 새로 개발사업이 시행될 지역에 투기조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土地去來申告區域 擴大와 아울러 土地去來許可制를 실시하고 모든 토지거래 신고서의 전산화, 신규개발사업이 추진될 지역에 대한 去來許可制 實施와 遊休地措置等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건물등의 소유자가 손실을 입지 않도록 모든 공공사업의 先補償後着工原則을 확립하고

소액소필지 및 재수용되는 주거용건물의 加算金 支給과 失業, 失農, 失漁補償 등에 대한 보상업무개선 대책을 마련 올해부터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을 현실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개발업무의 공영화 확대하여 공공개발택지중 國民住宅用地와 賃貸住宅用地는 造成原價以下로 싸게 供給하겠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토지자원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1단계로 부산 등 22개시 주변 지역에 대한 山地, 丘陵地開發適地 調査를 작년에 완료하였고, 춘천 등 26개시 주변지역에 대한 2단계 조사를 올해에 완료한 후, 산지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海岸保全 및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작년까지 해안현황조사 및 정책방향을 연구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海岸保全 및 利用基本計劃 樹立에 착수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원화된 工業立地關聯法律을 一元化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운영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덜고 능률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建設産業의 現代化와 海外建設의 內實化를 期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내외의 주변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하기 위하여 建設業 免許體系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능력있는 업체의 신규참여 요건을 정립하고, 原·下都給關係의 圓滑化를 기하도록 일정 공사에 대하여는 하도급을 의무화하며, 하도급 예정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시부터 附帶入札制를 導入하여 적정하도급 대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현 建設共濟組合으로부터 전문 건설업체를 분리하여 독립된 專門建設共濟組合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전문 건설업의 권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건설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과 해외건설의 연계진출을 도모하고, 해외투자 활성화로 기업의 국제화를 유도하며, 해외건설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건설용역의 대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建設技術開發을 促進하여 先進經濟 實現에 拍車를 加하겠습니다.

지난해에 建設技術管理法를 제정하여 건설기술 연구·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에는 建設技術振興基本計劃을 樹立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건설업체의 技術開發投資擴大와 研究開發專擔部署 設立을 적극 추진토록 하여 민간차원의 기술개발을 촉진토록 하는 한편 기업간 또는 협회등을 통한 공동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우수시공업체에 대하여 계약상 혜택을 부여하는 평가제도를 활성화하여 신기술, 신공법을 적극 도입 활용토록 하는 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공공연구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공사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품질 시험을 강화하며, 공사감리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고, 토목, 건축공사의 표준품셈을 공사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끝으로, 建設政策 決定過程의 公開主義를 實踐하고, 公正하게 運營하여 對國民 信賴度를 높이겠습니다.

建設法令을 제·개정할 때에는 입법초기 단계에서부터 국민과 관련 단체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현실과 遊離된 건설법령을 정비하여 민원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은 그 결정 과정에서부터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국민들이 믿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부조리를 일소하여 건전한 건설풍토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 새해에 퍼 나갈 기본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는 결코 어느 한 개인 또는 정부 단독의 힘으로 성취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건설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믿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노력하는 힘이 합쳐질때 이 모든것들이 이룩될 것으로 확언합니다.

우리 모두 가일층 분발, 노력하여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新年辭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988년 1월 1일

建設部長官 崔 同 燮

제 3 차 아시아 建築士大會 開催案内

주최: 大韓 建築士 協會

협찬: 아시아 建築士 協議會

THE 3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NOV. 7-11, 1988 SEOUL KOREA



우리 協會는 1988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ARCASIA 理事會議과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 3 차 아시아 建築士大會를 주최한다.

금번 會議의 공식 명칭은 亞細亞 建築士 協議會 第 3 次 서울대회 (ACA-3)이며 개최기간은 理事會 2일간, 大會 2일간, 建築旅行 1일간으로 總 5 日間이다. 회의내용은 총회와 세미나로 대별되며 주제는 <새로운 아시아 정신: 아세아 건축사의 역할>이다. 토론에서 <공동사회의 건축>, <건축사와 공동사회>, <건축사의 사회적 공약>, <새로운 시대의 건축사역할> 등이 세계적인 교수와 초청연사들에 의해 진행될 계획이다. 大會 기간중에는 會員國에서 선발된 건축을 전공하는 建築工學科 學生들 잔치인 學生 잼버리 행사와 建築資材 전시회, 建築設計 作品 전시회 등도 아울러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13개 ARCASIA 會員國들이 참가할 것이며 그들 국가는 방글라데시, 홍콩,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타일랜드,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중공, 한국등이고 비회원국가인 일본, 호주, 이집트, 피지, 통가,

보르네오, 英國, 美國, 불란서, 소련 등의 국가에서도 참가 예정의 뜻을 밝혀오고 있다.

참가예상인원은, 국내회원 4백명, 관련인사 1백명, 국외회원 1백20명, 국외비회원 50명, 학생잼버리 40명등 함께 7백10명 규모가 될것으로 보고 있다.

이 會議 개최장소는 大韓 建築士協會 강당을 비롯한 국내Hotel 國際會議場이 될 것이다.

이 大會를 개최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成果로는,

- 가. ASIA 지역국가 건축사협회간의 友好·紐帶강화와 회원국간의 技術交流 및 상호支援, 協調의 확대
- 나. 회원국의 地域與件을 감안한 建築設計 方向의 모색 및 建築環境 分野의 체계적 발전 추구.
- 다. 우리나라의 都市·建築發展相 및 建築材料 시공기술의 우수성 홍보.
- 라. 建築 및 觀光分野 해외시장 확대에 대한 기여 등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글은 全世界 建築士協會에 배포한 우리 建築士協會의 發送文案으로 전국의 회원들에게 홍보하고자 실어드리는 것입니다.

會長の 메세지

1988년 11월 7~11일에 서울에서 본 협회가 제3차 亞細亞建築士大會를 개최함에 있어서, 執行委員會를 대표하여 여러분을 이번 대회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본 협회가 이번 대회를 주관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고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는 總會와 討論會를 통하여 새로운 아시아정신을 확립하는 建築士로서의 專門職業의 발전과 建築士의 역할에 대한 見解를 교환하는 장소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또한 한국 국민의 깊은 인정과 그들의 풍부한 文化遺産을 보고 느낄 수 있게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1988년도 올림픽이 행하여지는 곳이기도 하며 그에 이어 11월에 제3차 亞細亞建築士大會가 개최되는 곳이기도 한 서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기 바랍니다.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安箕泰

1. 案 內

亞細亞建築士大會 隔年制로 개최되는 亞細亞地域建築士들의 國際總會로서, 제3차 대회는 今年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1984년의 제1차 대회는 마닐라에서 개최되었고 1986년의 제2차 대회는 쿠알라룸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었다. 아시아건축사대회는 제9회 아카시아 理事會, 建築教育委員會, 그리고 總會 및 討論會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행사로는 學生 展, 建築作品展示會, 文化의 밤, 그리고 建築旅行등이 펼쳐진다.

2. 주 최

亞細亞建築士協議會와의 協賛으로 大韓建築士協會가 主幹한다.

3. 장 소

대회는 서울에 있는 建築士協會 會館이나 국제회의 廳역실이 비치된 國際會議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4. 목 적

- 아시아지역 建築士 상호간의 의견교환 및 우의증진
- 상호교육과 협동을 위한 기회부여로 각 회원국 建築環境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
- 사회에서의 建築士 역할을 강화

5. 참석범위

아시아 지역내외에서 건축활동을 하는 建築士들과 관련된 단체회원 및 亞細亞 建築士協議會 활동에 관심이 있는자

6. 회의 캐치프레이즈

“새로운 아시아정신”

풍부하고 다양한 文化遺産을 가진 廣大하고 급속하게 발전하는 지역인 아시아에서 “새로운 아시아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축사들의 공통적인 임무와 목표가 今世紀 말을 향하여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낙관적인 未來의 발전, 그리고 명확히 식별되는 독창적인 특유한 建築物의 등장을 확신케 하는 정신인 것이다. 이러한 것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건축적 주제에서

Message from the President

On behalf of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3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I wish to invite you to the Congress scheduled for 7 to 11 November 1988 in Seoul, Korea.

We are happy and proud of hosting the Congress. The Congress will provide a venue for the Conference and Forum where we can exchange views on architect's role as well as on the improvement of professional services, conforming to a New Asian Spirit. The Congress will give you an opportunity to see and feel its rich cultural heritage and the warmth of Korean people.

Seoul is also the venue for the 1988 Olympic. See you in Seoul in November 1988 at the 3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Yours Sincerely,

An, Kie-Tae
President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in 1984. The Thi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is consisted of the 9th ARCSIA council meeting, ACAE meeting, the Conference and the ARCSIA Forum. Associated events include the Student Jamboree, exhibitions, cultural evenings and optional tours.

ORGANISER

The Conference is organised by the KIRA(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in conjunction with the ARCSIA.

VENUE

The conference will be held at the deluxe-class Hotel in Seoul, Korea.

OBJECTIVE

- Offer an opportunity for exchange of ideas among Asian Architects, strengthening comradeship in the profession of the region.
- Being a chance for mutual learning and cooperatio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in the creation of built-environment in each member country.
- Strengthen the role of the profession in Society.

PARTICIPANTS

Architects practicing in Asia are all welcome to the congress. Architects from outside of the region are also

eligible to register. Member of allied professions from Asia and the rest of the world are invited. Or others who might have interests in the activities of ARCSIA are welcome to participate in the congress.

CONGRESS CATCHPHRASE

“The New Asian Spirit”

Asia, this vast and rapidly developing that has a rich and varied cultural heritage arrives at the end of this century with a growing collective commitment in its architects that might be termed as a New Asian Spirit. It is a confident mood of an optimistic future, discovery and of inventively identifiable individual architecture. The consequences of this are evident in the emergent architecture where there are a number of ongoing themes. The endeavour is evident not only in the built environment, but in the way architecture is practised such as that arising from the search for roles that have greater social effectiveness with the vast Asian population.

THEME OF CONFERENCE

“The Role of Architects in Asia”

For a long time architects are no longer scattered individual talents seeking for their patrons. They are now an organised group of experts who

INTRODUCTION

The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is the bi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RCSIA(Architects Regional Council for Asia) and ACA3 follows from the earlier successful ACA2 held in Kuala Lumpur, Malaysia in 1986 and ACA 1 of Manila, Philippines

명백해진다. 건축사들의 공헌은 建築環境의 창조에서 뿐 아니라 방대한 인구를 가진 아시아 사회에서 더욱 알찬 사회적 효과를 줄 수 있는 建築士의 역할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7. 會議主題

“새로운 아시아정신: 공동 社會를 위한 建築”

建築士들이 그들의 고객에 의해 개인적으로 고용되던 때는 이미 오래전이며 이제는 전문성을 지닌 한 단체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생활환경에 부응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建築士들이 建築의 업무수행시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모든 양상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建築業務가 매우 세분화된 전문분야로 나뉘어져감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建築士의 역할은 다양하고 광범위해졌다. 고객층은 점차 개인들과 기관 그리고 사회집단으로 구성되는 복잡한 혼합체로 변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建築士 단독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수준 및 요구사항 준수에 애로점이 있다. 타분야 전문가들과 협동하지 않고는 建築士로서 모든일들을 독단으로 진행해 나갈 수가 없다. 建築士들에게 책임이 주어진다고 보는 대부분의 일들을 다른 분야에게 빼앗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建築環境에서의 시각적인 면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또한 여러 분야를 연결하는 능숙한 調整者로 남을 것인가?

建築士들은 社會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며 地域社會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재고할 때가 왔다. 그것은 개개인 建築士의 문제가 아닌 전문기업 집단으로서의 建築士 모두에 대한 급속히 변전하는 우리 시대의 요구인 것이다. 地域社會속에서 建築士들의 역할을 확립시키는 최상의 방법은 가장 관심을 늦추었던 建築士 業務에 관한 社會적인 차원을 재검토하는 데에 있는 것 같다.

가. 建築士와 地域社會

우리의 옛 시대부터 建築士의 역할은 변천되어 왔다. 建築士의 역할에 대한 建築士 자신들의 이미지와 사회로부터의 見解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성취되지 않은 사회로부터의 기대와 建築士들의 완수하지 못한 역할을 의미할지 모른다. 이러한 차이점을 줄여갈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은가?

나. 地域社會에 대한 建築士의 의무

과연 建築士가 社會構成員들중 대다수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해결해주고 있는가 자문해보자. 우리는 建築士들의 업무가 어디에서 요구되는가를 정확히 찾아야 한다. 사회의 필요 요구에 대처하는 그들의 업무가 어떻게 조직되는가를 밝힘으로써 建築士 職業團體와 그들이 봉사하는 사회와의 구조적 관계가 파악될 것이다.

다. 장래의 建築士 역할

地域社會에서의 建築士들의 역할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respond with their professional services to the needs of a community. In the past, it was not impossible for an architect to carry out the whole range of works required for providing a built environment. But now, the work of the profession has become compartmentalised into deeply specialised fields with work scopes that are diverse and wide. Also, the strata of clients turned out to be a complex mixture.

Contents of requirements to be met are too complicated for an architect to solve alone and technological standards to be achieved are too high for him to take command. Without collaboration with experts in other fields, architects are powerless in delivering their service.

Large parts of works for which architects are assumed to be responsible being taken away to others, are we going to remain as a skillful coordinator of expertise on top of being an interpreter of the visual context of built environment?

Time has come for architects themselves to rethink on what they are expected to do and should do for the community.

This is the request of our time in rapid transition addressed not only to individual architects but also to the profession as a whole.

The best way to enhance architects' role in their community is to reexamine the social dimension of the profession to which least attention has been paid.

Architects and the Community

The role of architects has changed since our forefather's day. There seems to be some gaps between the profession's self image on architects' role and that of public. This might imply the unfulfilled expectation from the community and the unfinished commitment by the profession. Are not there enough reasons to narrow the gaps?

Architects' Response to the Community

We may question if architects are properly responding to the needs of the most people in the community. We have to spot the location where the profession's service is required. By exploring how architects are now organising their services in response to the needs of community, the structural relation between the profession and the community in which they are working will be found.

Architects' Role in the Coming Age

The role of architects in a community changes according to the change in living patterns of people and their choice of values in society. The change in the life of people results in the working environment of architects in terms of

their working tools and their relation with other allied professions. A prospective model for architects' role in society in the coming to be set for an itinerary of the profession.

ARCASIA FORUM

on "Architecture for the Community"

In view of the message intended to be delivered through the conference theme it is appropriate to present real cases of architectural practice which are carried out successfully to meet the needs of people in the community.

As the conference continues with serious subject matters mainly through the medium of verbal and written languages, other forms of presentation, possibly audio-visual or others, would guarantee effectively envisaging the message of the conference to the mind of participants. The Forum will be an occasion for the attendants to reiterate the theme of the conference in another form of experiences.

STUDENT JAMBOREE

Architectural Student Jamboree will be held in association with the Congress. Student delegates from each member country get together with their own programmes. Their contacts with ARCASIA members and selective participation in the Congress are encouraged.

사회가치 판단에 따라 변한다. 사람들의 생활 내용의 변화는 建築士들이 구사하는 업무수행의 도구와 방법에 따른 작업환경에 영향을 주며 다른 분야와의 관계에도 변화를 준다. 다가올 시대의 사회에서 기대되는 建築士의 역할에 대한 모형을 정립함으로써 建築士 職業團體의 이정표가 세워져야 한다.

8. ARCASIA 討論會

“地域社會를 위한 建築”

본 會議主題를 통해 의도된 메시지의 관점에서 볼 때 본 討論會에서는 地域社會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建築業務의 실제적인 예를 적절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회의는 심각한 토의문제들을 언어를 매체로 하여 진행되지만 이 討論會는 또 다른 형태인 시청각 자료등을 사용하여 발표함으로써 참석자들로 하여금 메시지를 파악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것으로 확신한다. 討論會는 본 회의 主題를 재확인하고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가. 學生 贊보리

建築學生 贊보리는 본大會와 함께 開催된다. 각 會員國의 學生 대표들은 그들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함께 한다. 學生들은 아카시아 會員과 만나게 되는 기회를 갖게되며 선택적으로 ACA-3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建築士協會에서는 建築學會 교수님들의 협조하에 우리나라 대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建築科 學生을 선발하여 외국 建築科 學生들과 주거文化에 대한 討論을 갖을 예정이다.

나. 관련행사

관련행사로서는 開會式과 閉會式 때의 宴會와 함께 한국의 文化를 소개하는 文회의 밤과 화려한 파티로 추억에 남을 사교의 밤, 그리고 국내외 建築士들의 우정을 위한 향연이 베풀어지고 한국에서 생산되는 建築資材와 한국 建築士들의 設計作品을 展示하는 展示會가 開催된다. 뿐만아니라 역사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古建築으로부터 현대의 고층건물까지 견학할 수 있도록 건축여행이 계획되어 있으며 대회 기간중 배우자나 가족들은 관광여행 또는 쇼핑을 할 수 있게 된다.

9. 등록비

등록비는 미화 180달러이며 회의참가자들은 開會式과 1988. 11. 8일부터 11일까지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등록비에는 숙박과 선택여행 비용을 제외한 3일 동안의 회의자료와 오찬과 음료 및 문화, 사교의 밤 참석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배우자나 동반자의 등록비는 미화 50달러이며 開會式과 오찬 그리고 문화, 사교의 밤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를 만나질 동안의 여행을 제공받는다. 등록비는 등록양식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0. 회의 사무처

상세한 정보나 참석등록을 미리 할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 바람.

대한건축사협회 제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사무처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603-55
전화 : (02) 581-5711~4
텔렉스 : KIRAA 33550 FAX NO. 586-8823

ASSOCIATED EVENTS

There will be the banquet of opening and closing ceremonies with the cultural evening which introduces Korean culture, and the social evening which is to be wonderful and memorable party. Furthermore, there will be the friendship night for the architects, both from local and abroad, and the exhibitions of design works by Korean architects and of architectural materials produced in Korea.

Also, the architectural excursion is planned to visit the historically well-known Korean architecture of old days and modern skyscrapers. There is also the arrangement of shopping and sight-seeing tours for the spouses and family members of the participants of ACA 3.

REGISTRATION FEES

The registration fee is US \$180.00 and this entitles a delegate to attend the conference opening ceremony and sessions on 3, 4 and 5 November 1988. The fee includes the costs of all conference documents, lunches and teas for the three days, through not of accommodation and optional tours, and cultural and social evenings.

For accompanying spouses, the registration fee is US\$50.00 and this entitles the person to participate in the conference opening ceremony, cultural and social evenings and to enjoy lunches and two half day city tours during the conference sessions. Payment must accompany all registration forms.

The ACA 3 Secretariat

For more information or for early registration of attendance, please contact:

The ACA3 Secretariat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603-55, Seocho-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 (02) 581-5711~4
Tlx.: KIRAA 33550



사진 : 임정의

신사동 동광빌딩

Dong Kwang Building(Shinsa-dong)

Designed by Ro, Hyung-Rae

盧亨來 / 종합건축사사무소 建正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6-35/567-4638

□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29

□ 대지면적 / 530㎡

□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지역지구 / 주거지역 · 4종미만지구

□ 건축면적 / 243.79㎡

□ 연면적 / 1,343.25㎡

• 지하층 : 384.84㎡

• 1층 : 227.04㎡

• 2층 : 243.79㎡

• 3층 : 243.79㎡

• 4층 : 24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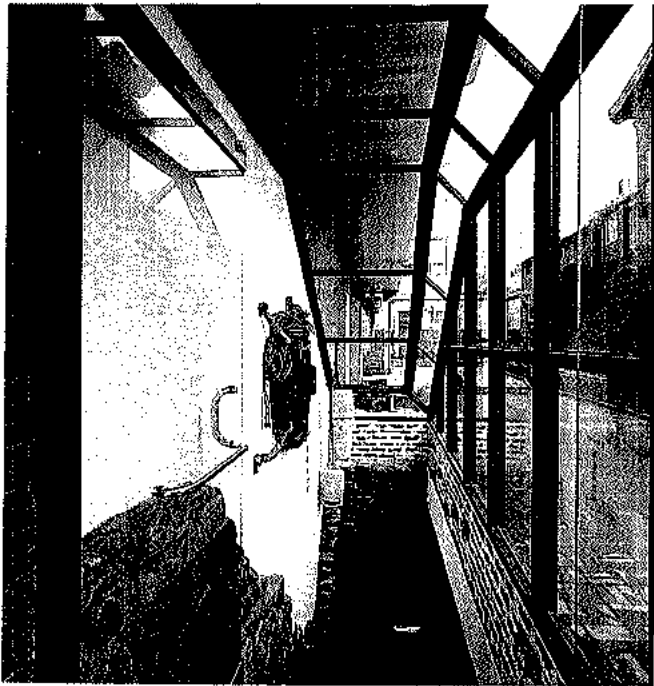
□ 구조 / 철근콘크리트멘조

□ 외장재료 / 도가집타일, 흑색화강석판, 그래스블럭, THK1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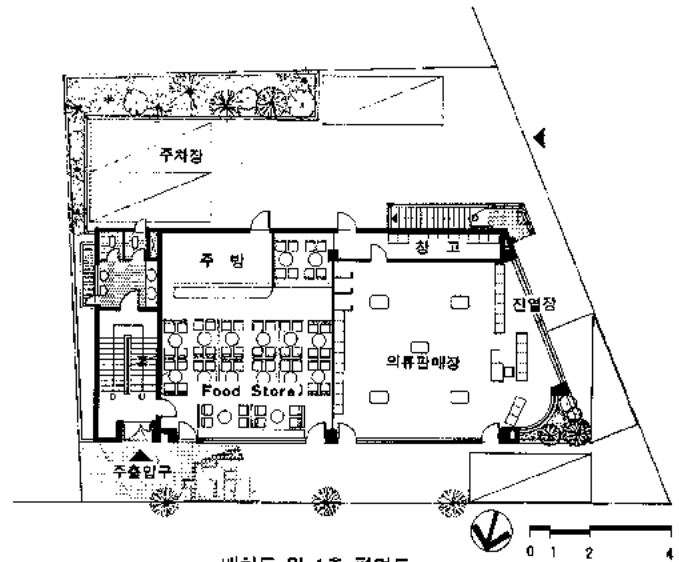
강화유리, 알루미늄장식판

□ 주변도로 / 30m, 7m

□ 주차대수 / 9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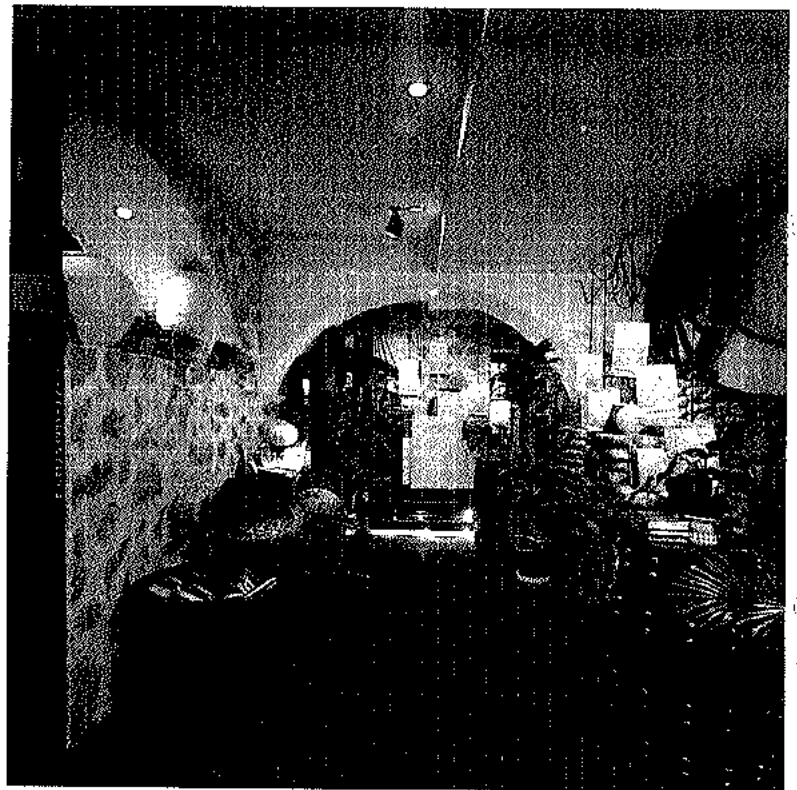
지하매장입구 ▲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미용실 내부 ▲



▲ 지하 레스토랑 내부

■ 設計의 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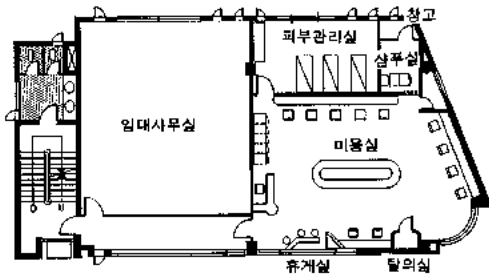
두 개의 道路가 銳角으로 마주치는 垓地角, 상업성 높은 주변 環境, Outdoor Parking 과 G.L층 매장면적의 최대확보, 施工의 경제성과 建物の High Quality 를 동시에 주문하는 Requirement.

이러한 조건을 놓고 작업은 垓地角을 순화시키는 Sketch로 시작되었다. 원통의 Glass Post를 강하게 세우고 도로쪽 두입면을 서로 다른 얼굴로 연결시켜 대청과 단조로움을 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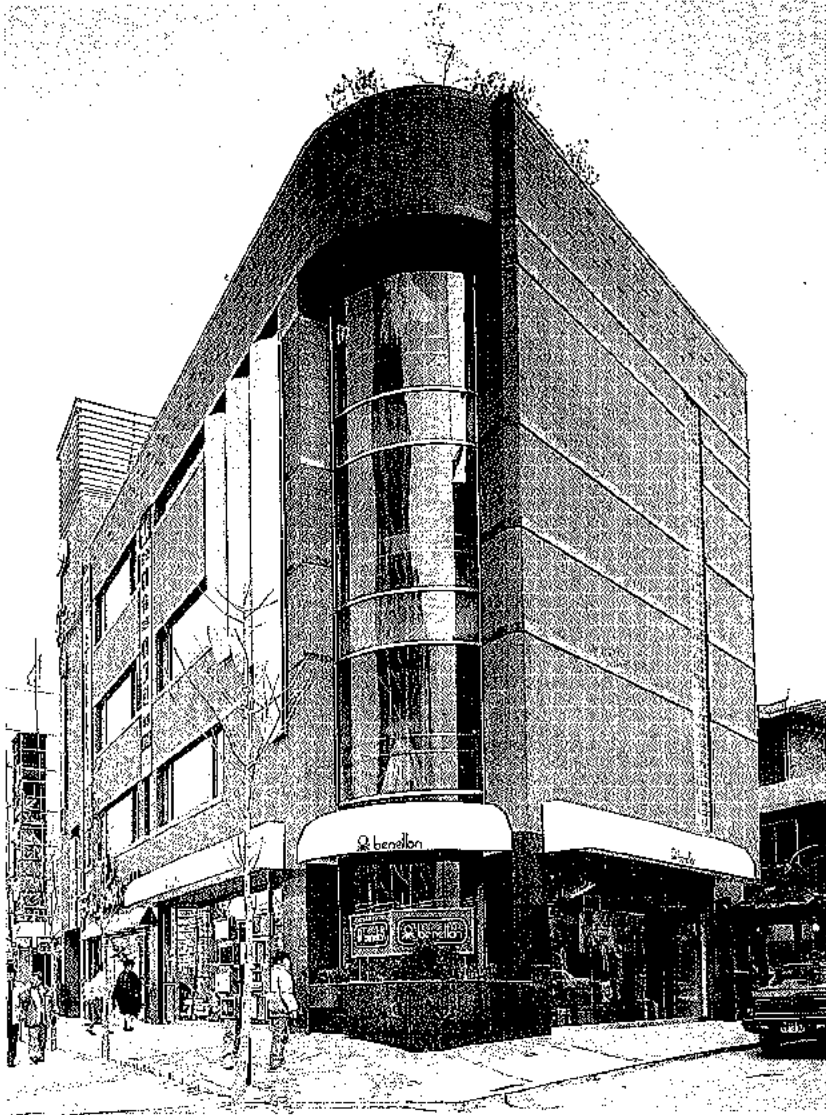
전면도로쪽 북측에는 지상층 임대매장의 Show Window 역할이 주요하고, 수직의 AL.post는 상업성 건물의 Accessory이나 Glass Post와 동일한 수직 어휘로 이 건물의 Visual Point로 작용케 했다.

소규모 상업건물의 높은 임대성은 이제 면적 확보나 시공의 확실적인 경제성 원칙에서 탈피하여 구매력 있는 건물 Image를 우선할 때 성공할 수 있으며 개성있는 도시환경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준층 평면도



▲ 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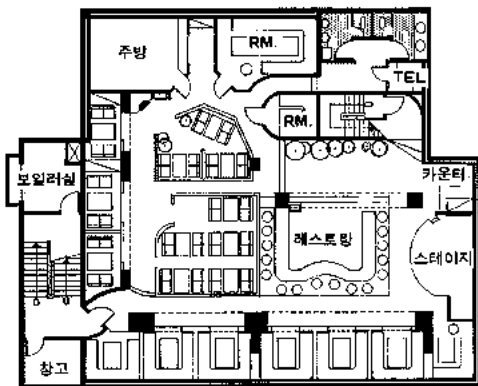


▲ 야 경



◀ 의류판매장

▼ 전면 주출입구



지하층 평면도





한신대학 임마뉴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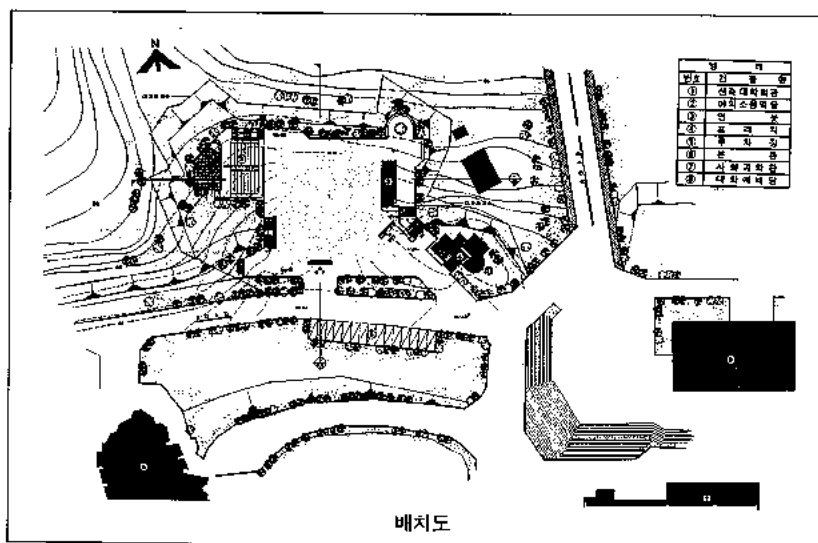
Immanuel Hall, Han-Sin College

Designed by Kim, In-S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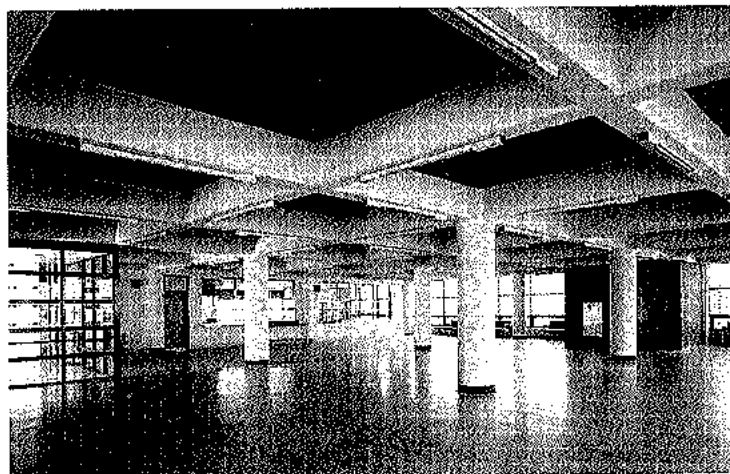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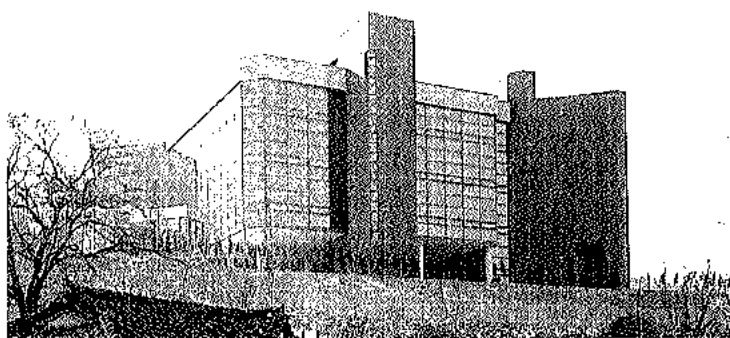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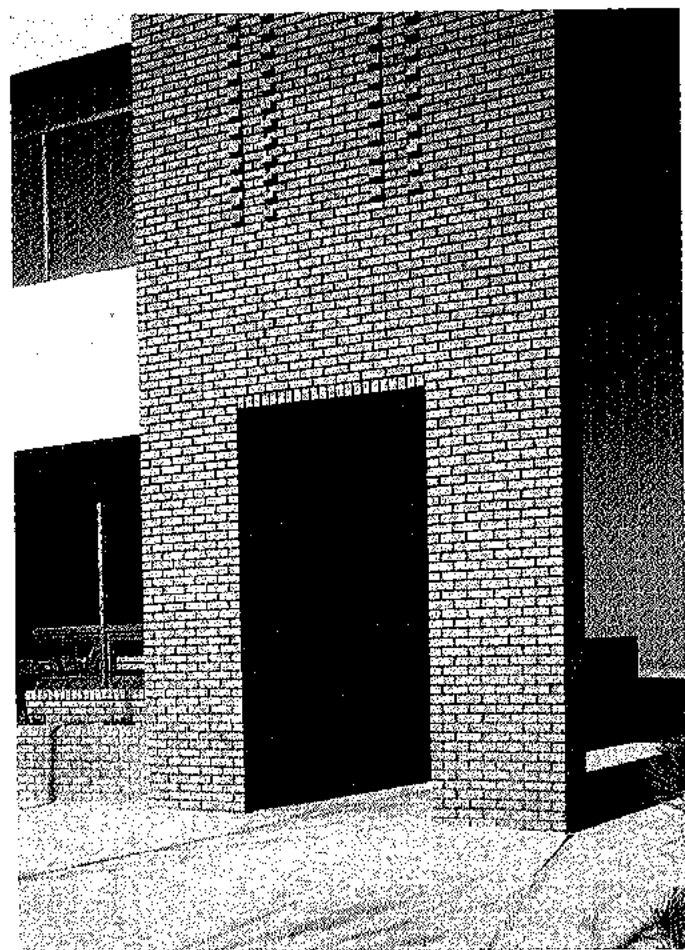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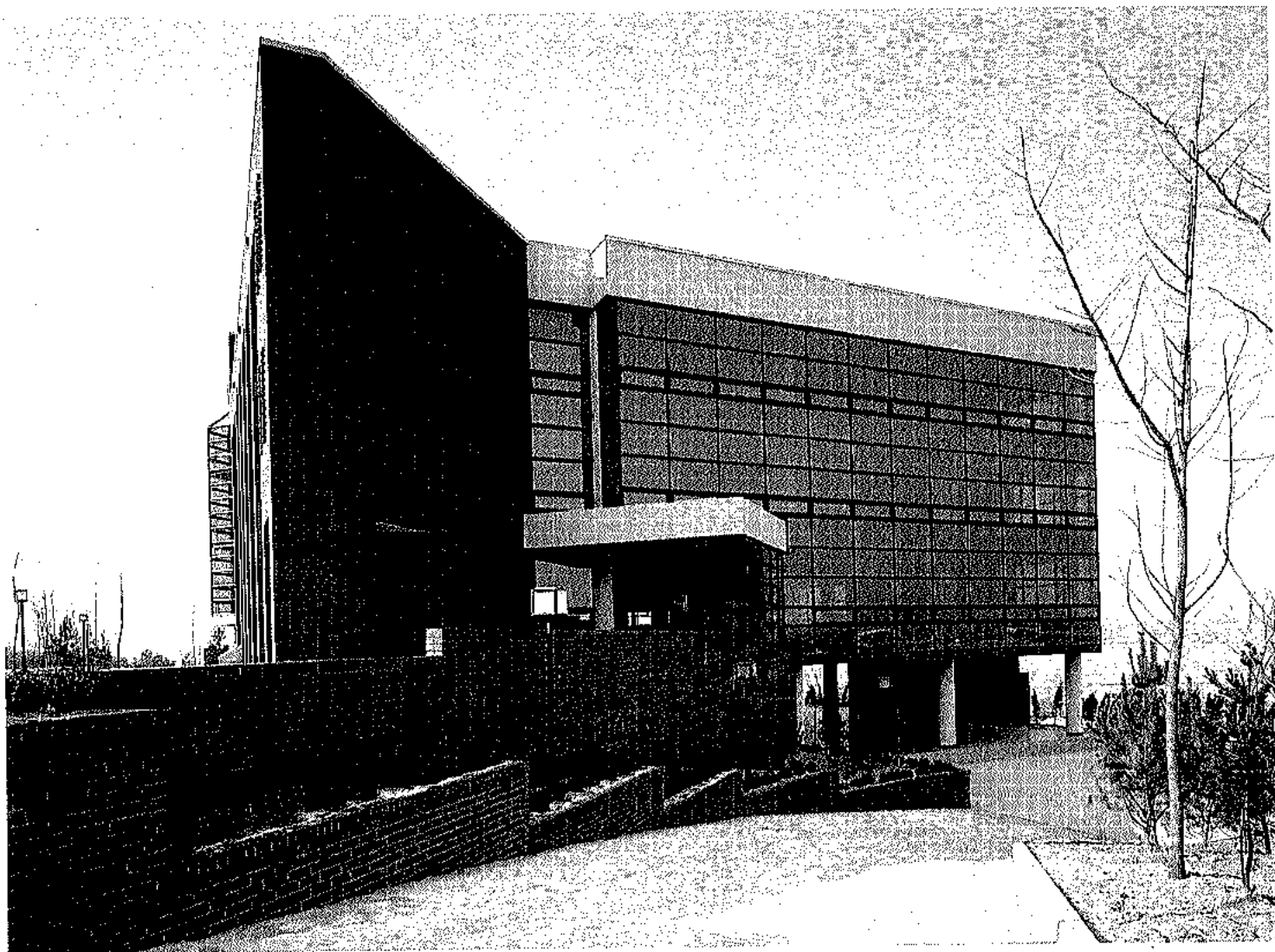
金仁錫 / 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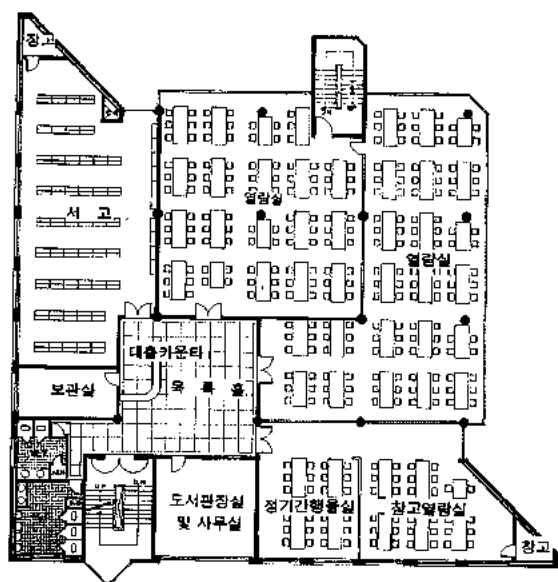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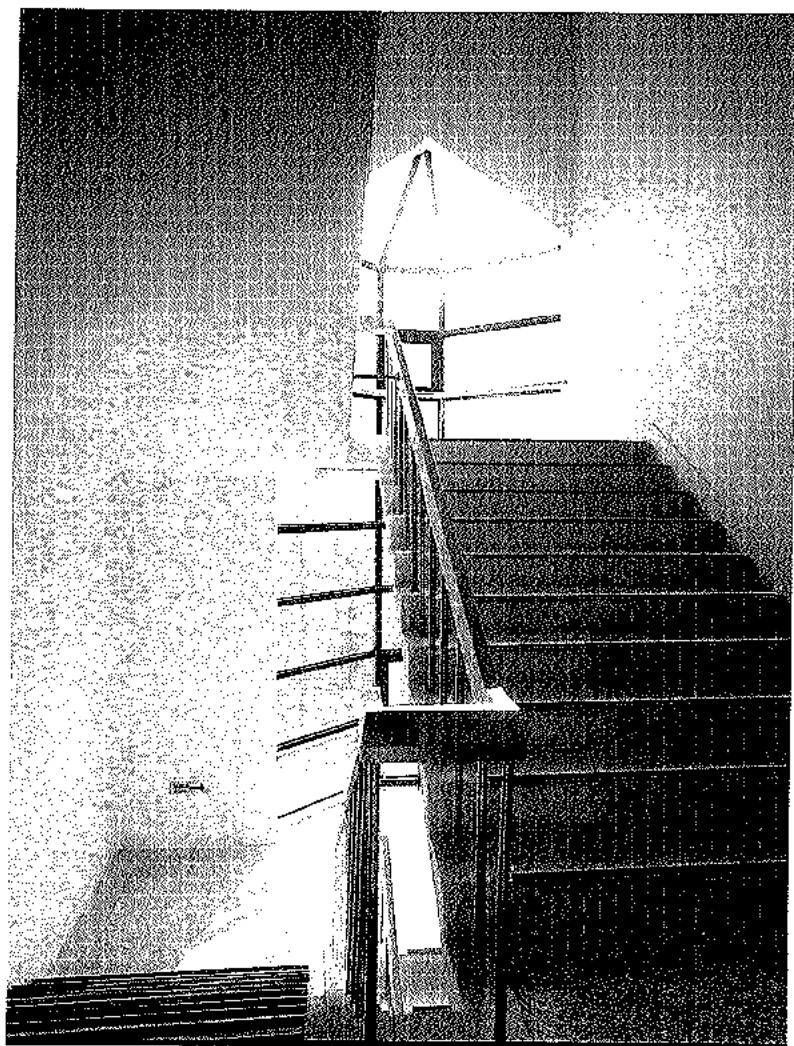
서울시 강남구 방배본동 792-10/593-7490

- 대지면적 / 5, 932㎡
- 건축면적 / 948, 59㎡
- 연면적 / 3, 612, 96㎡
- 용도 / 학생복지시설 (식당, 휴게실, 열람실, 자지회실)
- 규모 / 지하 : 층,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외장 / (외부마감) 붉은벽돌 차장생기 및 열선 반사유리 커튼월
- 준공일자 / 1987.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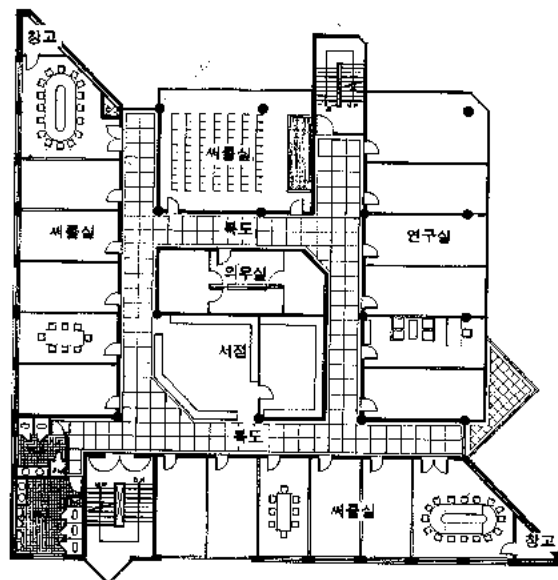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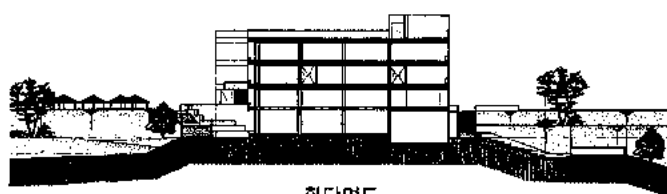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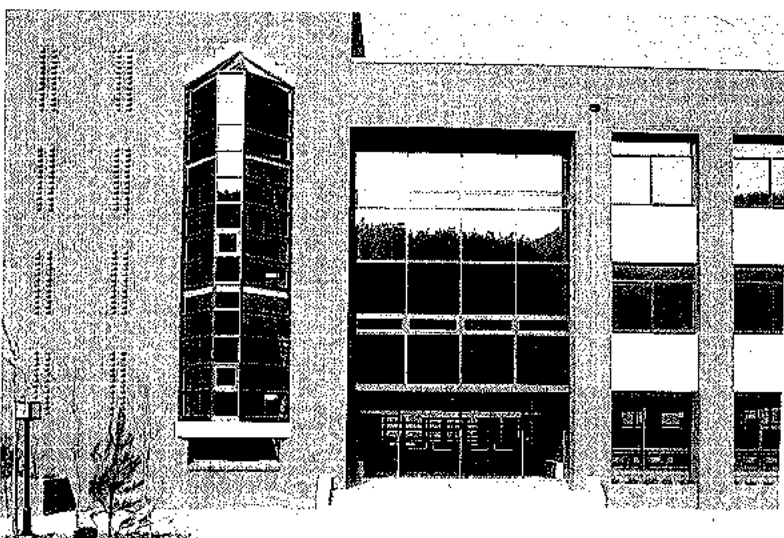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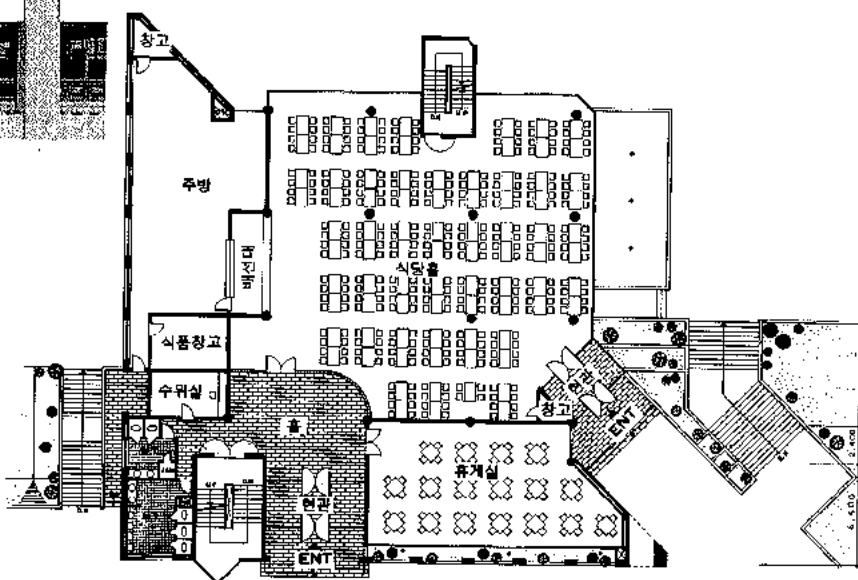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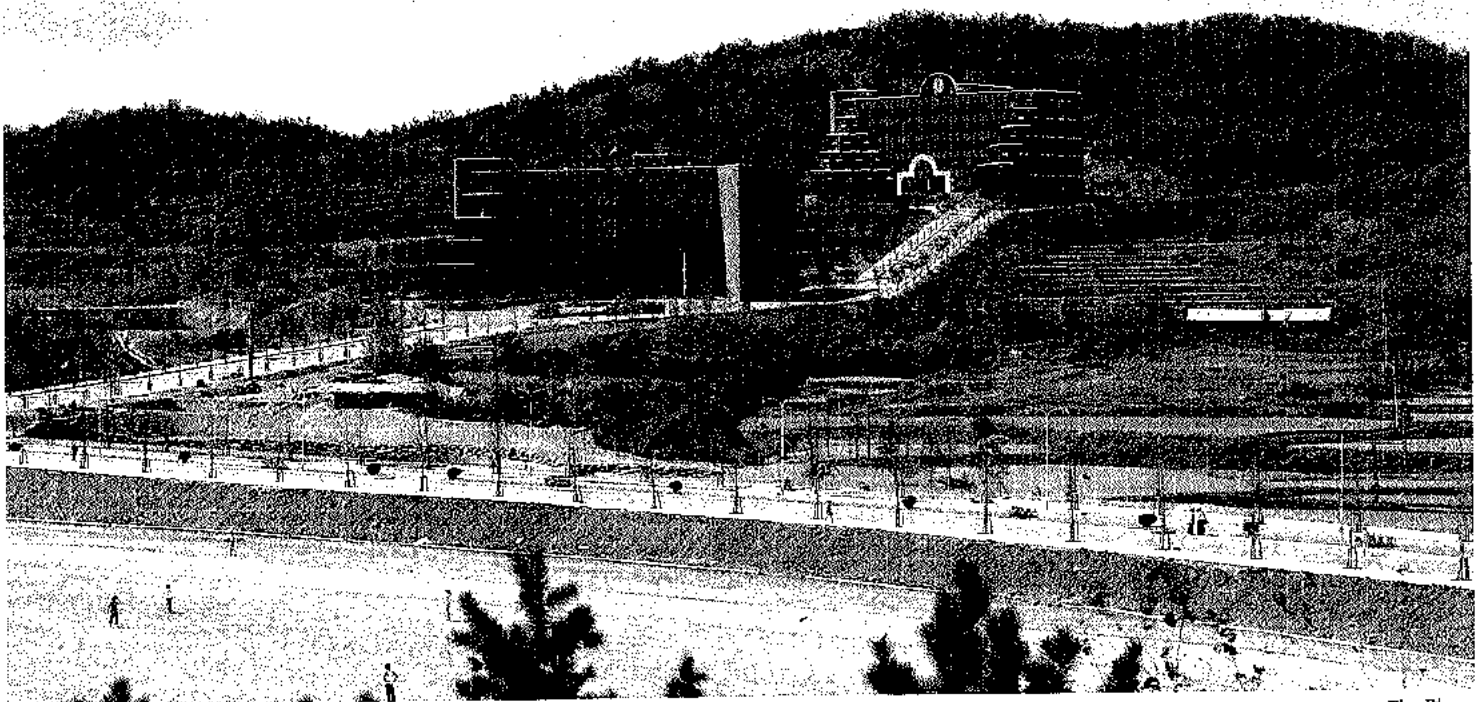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횡단면도



1층 평면도



전 경

수원대학 가정생활관 (서관) 및 사회과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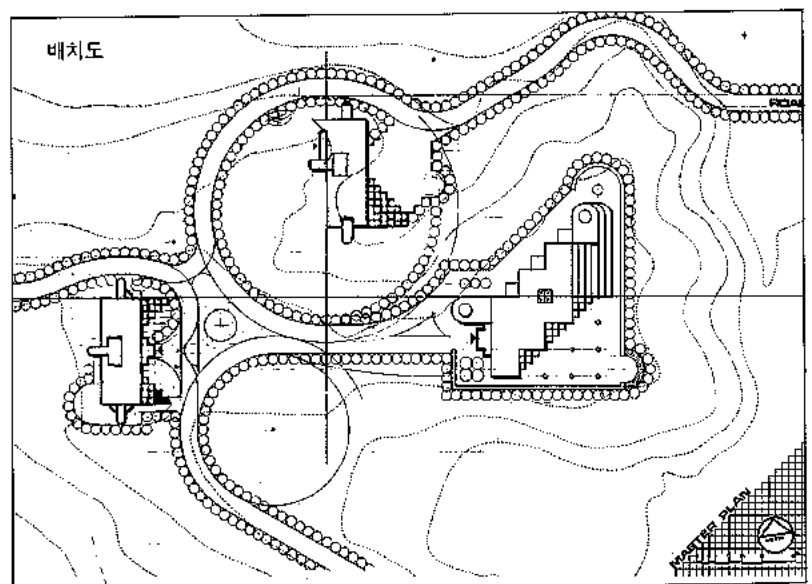
Home Economics · Law and Political Science Building (Suwon Colle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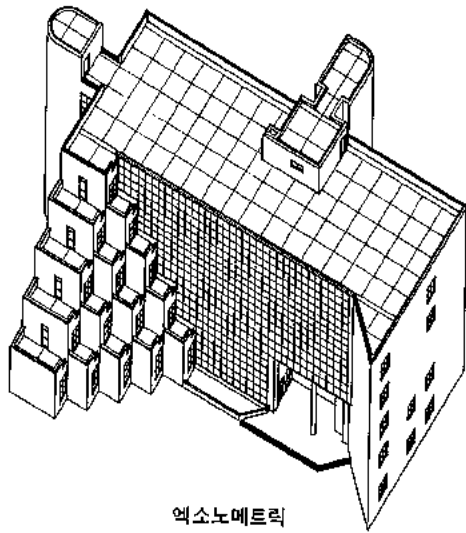
Designed by Kang, Suk-Won

姜錫元 / 건축사사무소 구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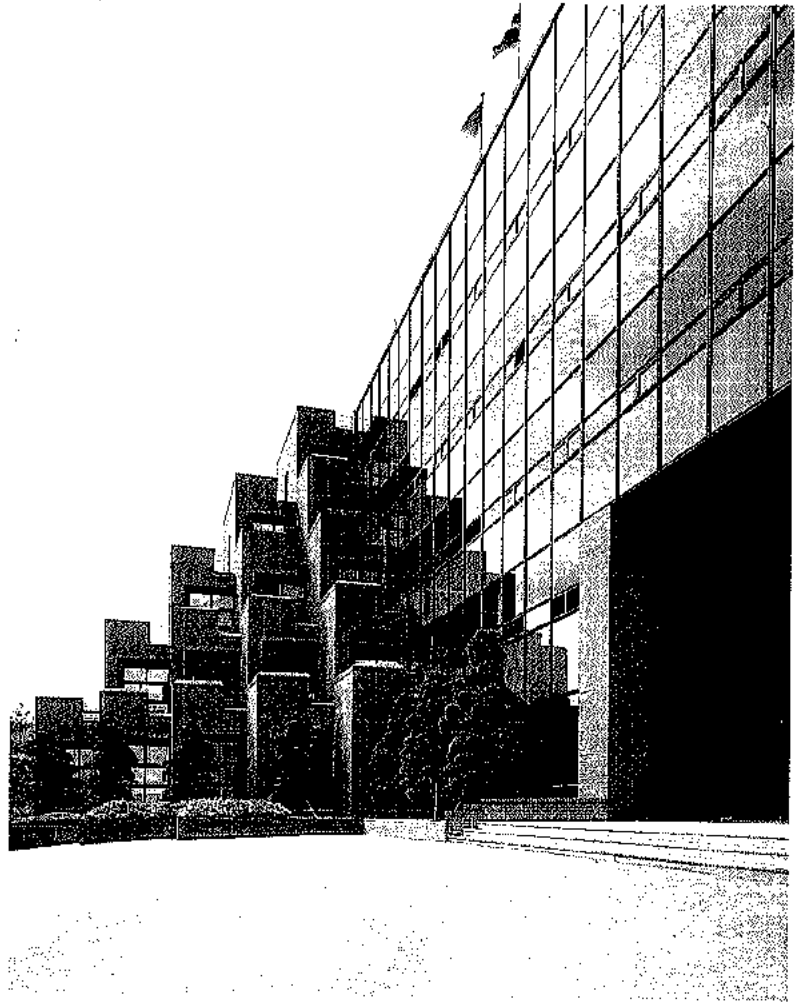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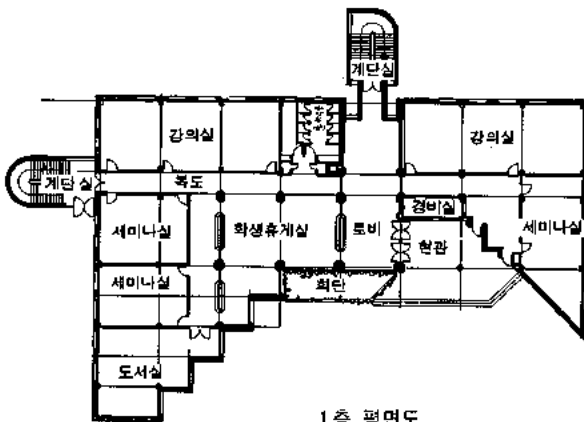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542 / 741-3656

- 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와우리 1의33 산4의 41
- 대지면적 / 69,868㎡
- 건축면적 / 1,053㎡, 사회과학관 - 1,009㎡
- 연면적 / 5,264㎡, 사회과학관 - 5,332㎡
- 용적률 / 15.17%
- 건폐율 / 2.95%
-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외장재료 / 적벽돌+커텐월 (Ø 16mm복중유리)
- 용도 / 강의실





엑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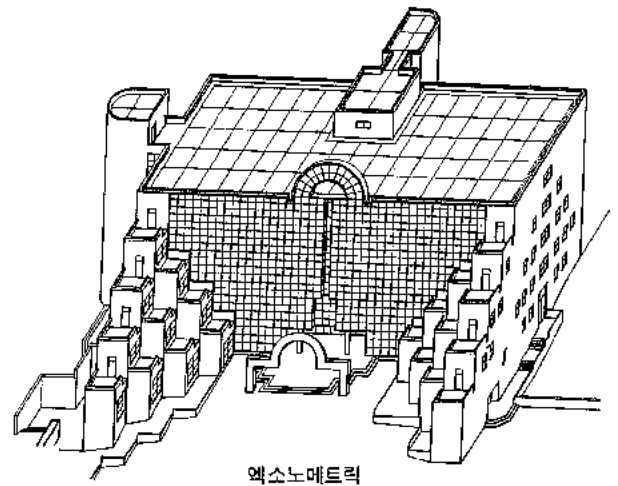


가정생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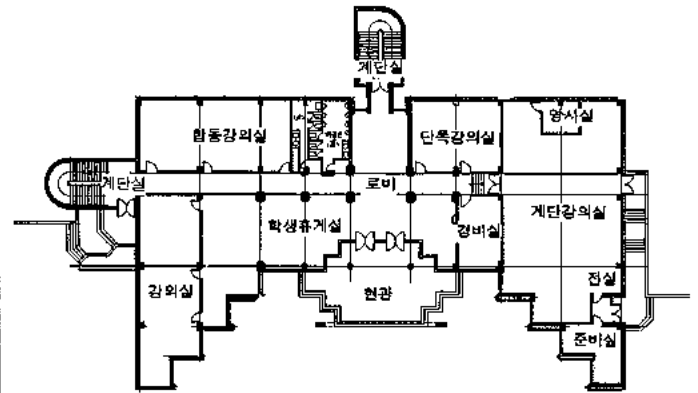




사회과학관



엑스노메트릭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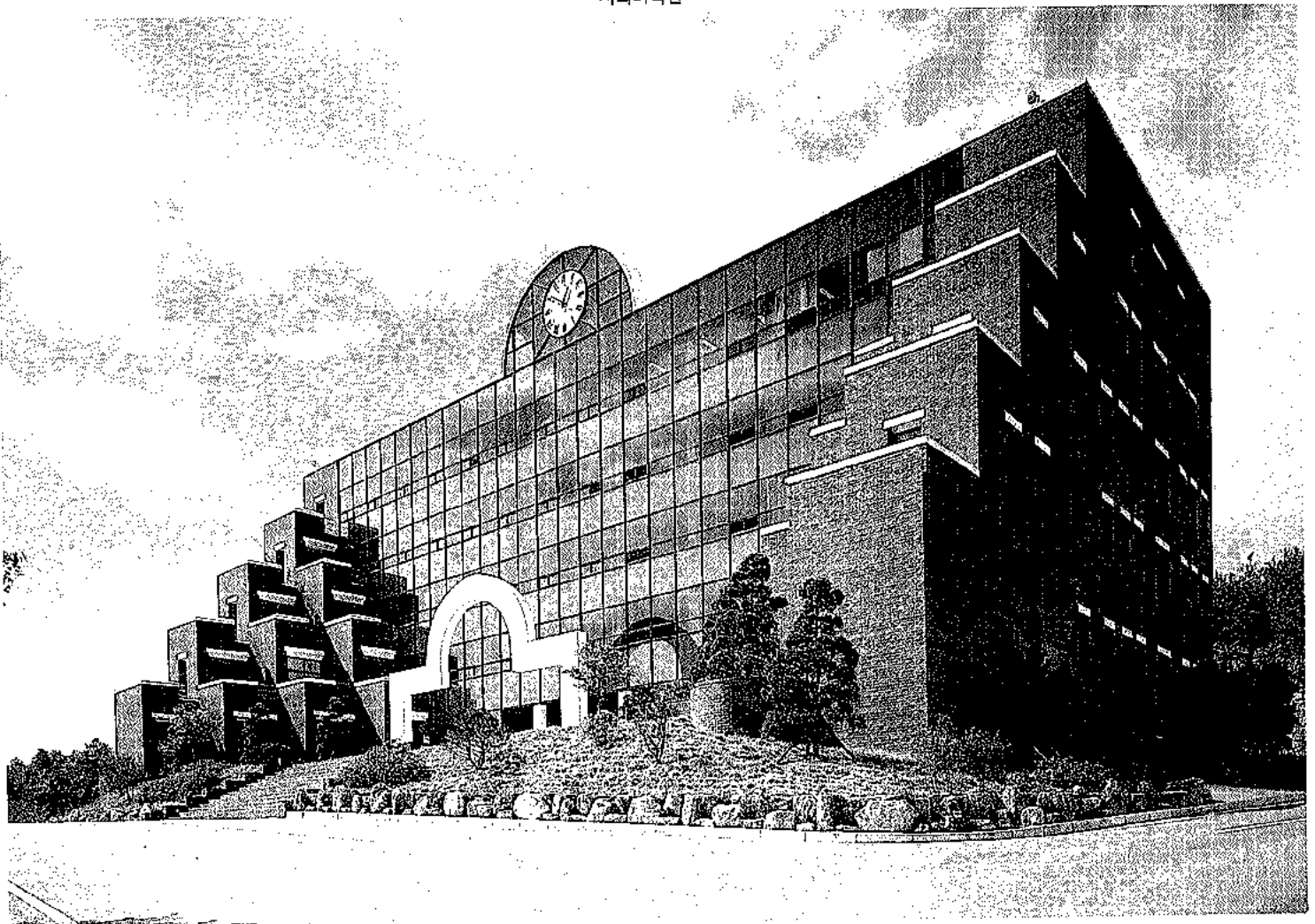




사진 : 정정웅

안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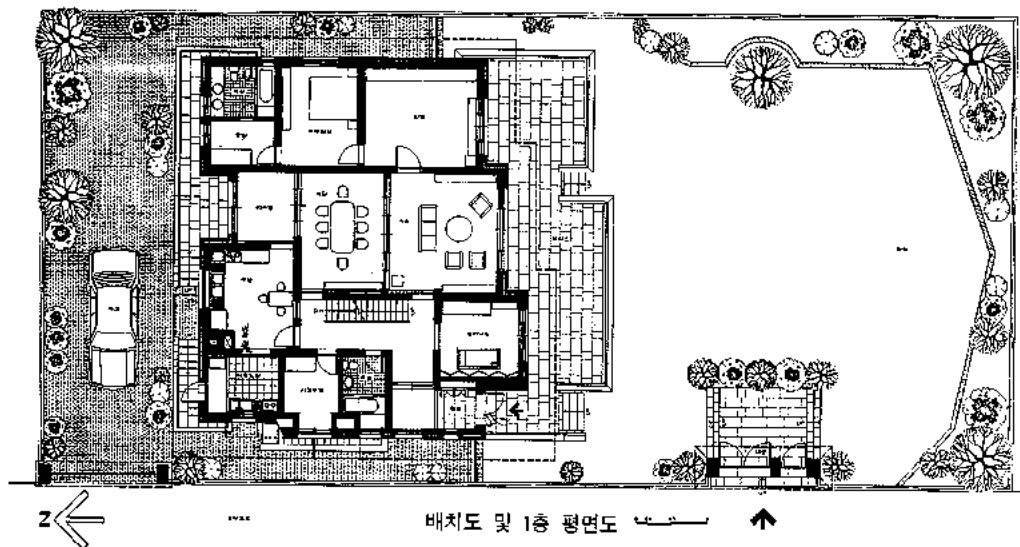
Ahn-Hyun Jang

Designed by Oh, Ki-Soo

吳基守 / 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 5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160-43/324-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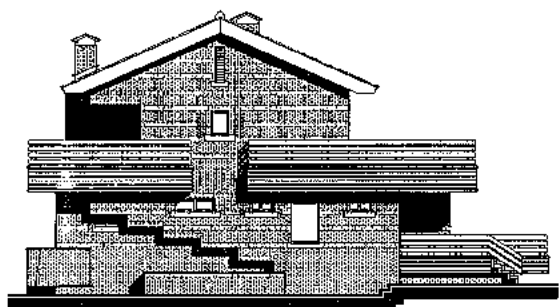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 대지면적 / 726㎡
- 건축면적 / 197㎡
- 연면적 / 320㎡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외장 / 연식벽돌, 후문링
- 준공 / 8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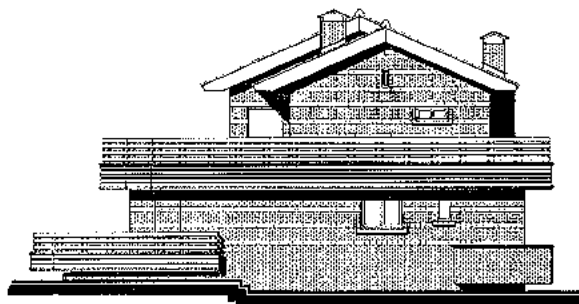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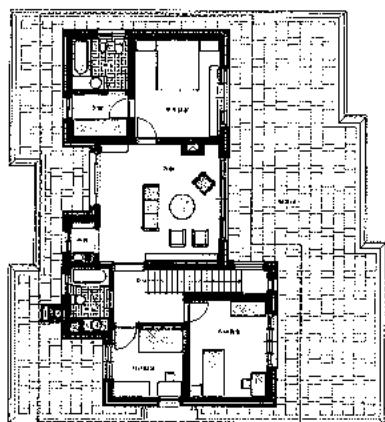
남측 입면도



서측 입면도



동측 입면도



2층 평면도





사진: 정정웅

주택은행 사당동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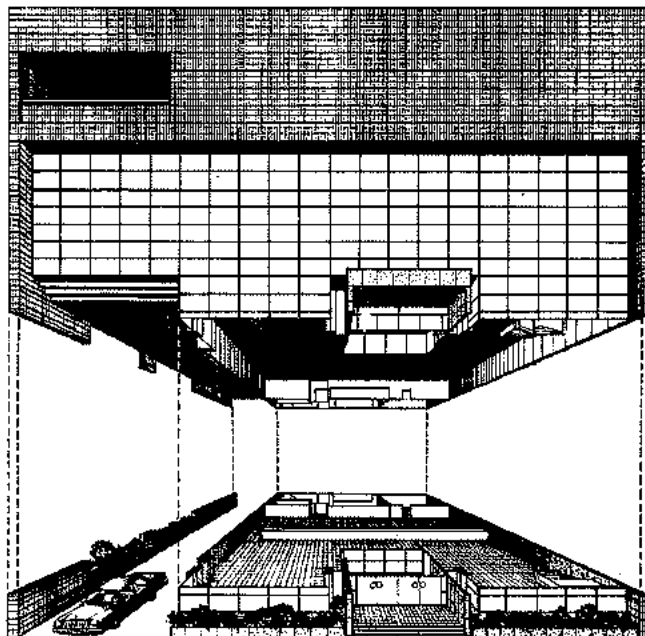
Sadang-dong Branch, Korea Housing Bank

Designed by Chang, Suk-Wo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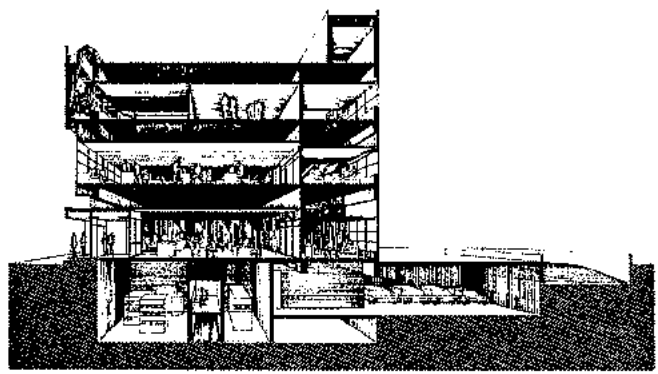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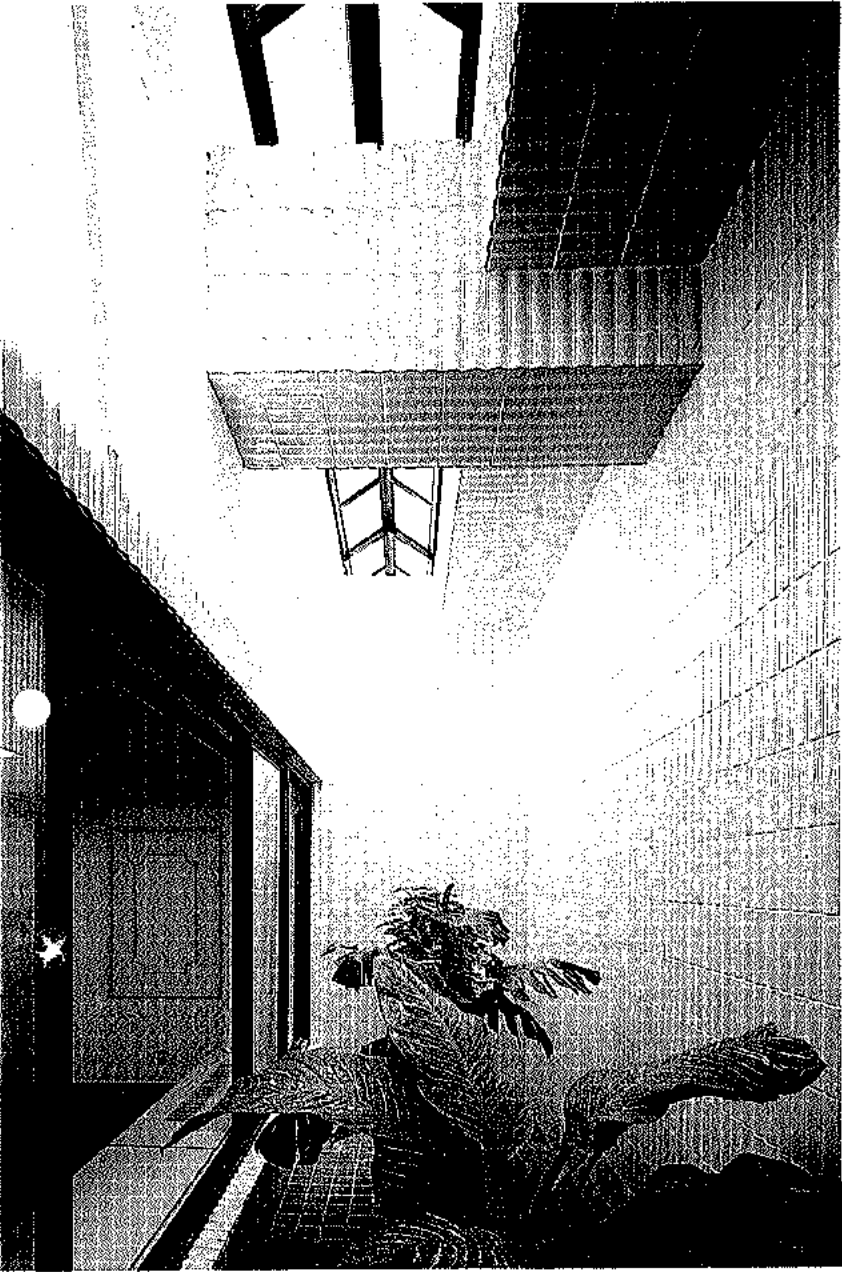
張錫雄 / 아도무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767-3 / 583-8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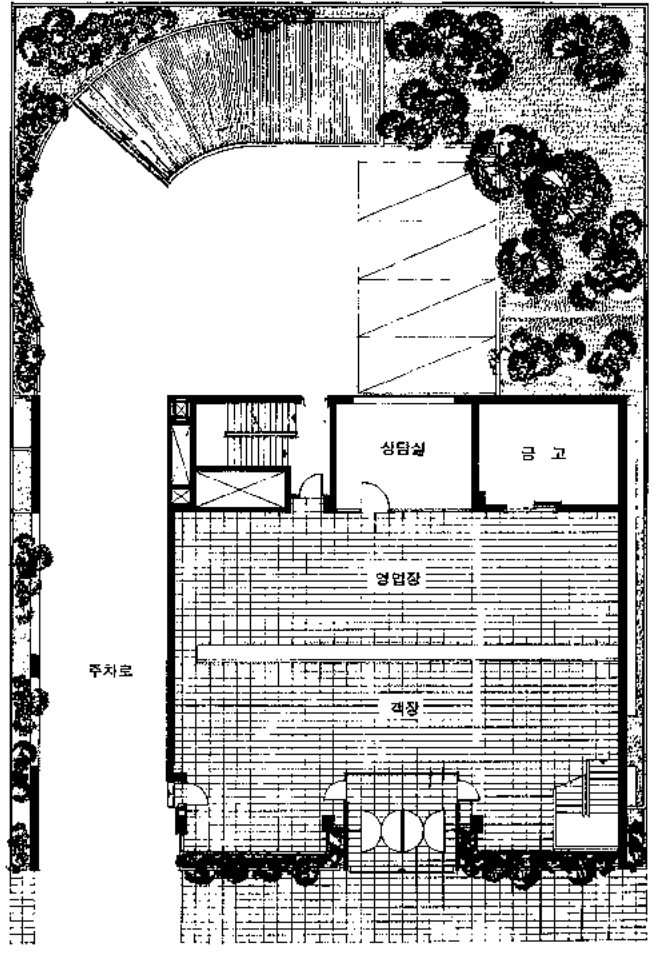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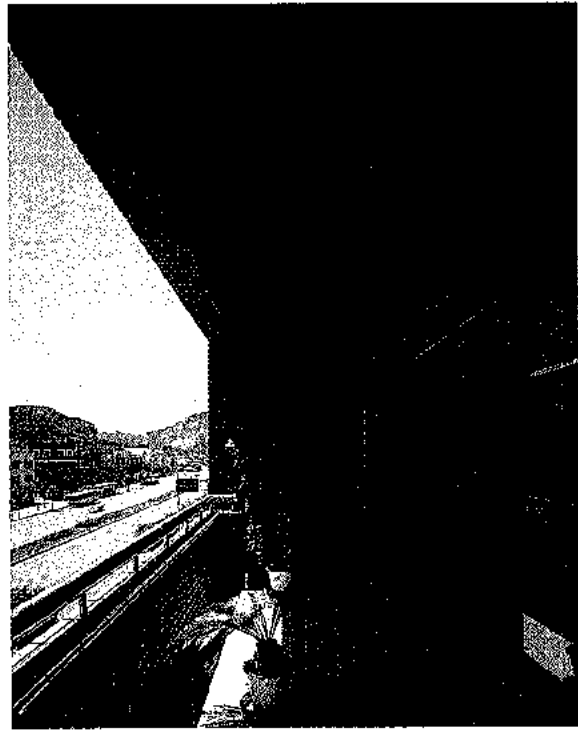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시 동식구 사당동 1031-31, 45
- 대지면적 / 1130. 60㎡
- 건축면적 / 514. 56㎡
- 연면적 / 2242. 44㎡
- 건폐율 / 45. 51 %
- 용적률 / 134. 08 %
-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차장 / 12대 (옥외 4대, 옥내 8대)
- 외장 / 습식외장타일



단면투시도



단면투시도



1층 평면도

제일은행 본점

Korea First Bank Headquarter
Designed by Yoon, Seung-Joong
& Byun, Yong + Lee, Young-Hee

尹承重 + 卞鎔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2-16 / 793-4977

李永熙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308-5 / 568-7863

□ 대지위치 /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100 (정신1지구 재개발)

□ 대지면적 / 9487.3㎡

□ 건축면적 / 3734.98㎡ (건폐율 : 39.3%)

□ 연면적 / 77415.78㎡ (용적률 : 534.2%)

□ 최고높이 / 97.4m

□ 층수 / 지하 4층, 지상 22층

□ 기준층면적 / 2059.2㎡

□ 기준층 높이 / 3.9m

□ 기준층 천고 / 2.6m

□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주차대수 / 옥내 : 365대, 옥외 : 69대 합 434대

□ 공사기간 / 84.5~87.10

□ 설계기간 / 82.12~84.10

□ 외벽 / 화강석바너구아판 및 작색복층 Low 유리

□ 기준층 / 바닥 - 제록크리트위 카펫타일

벽 - 열처리 절판

천정 - 임면흡음판

□ 1층 / 바닥 - 화강석 물갈기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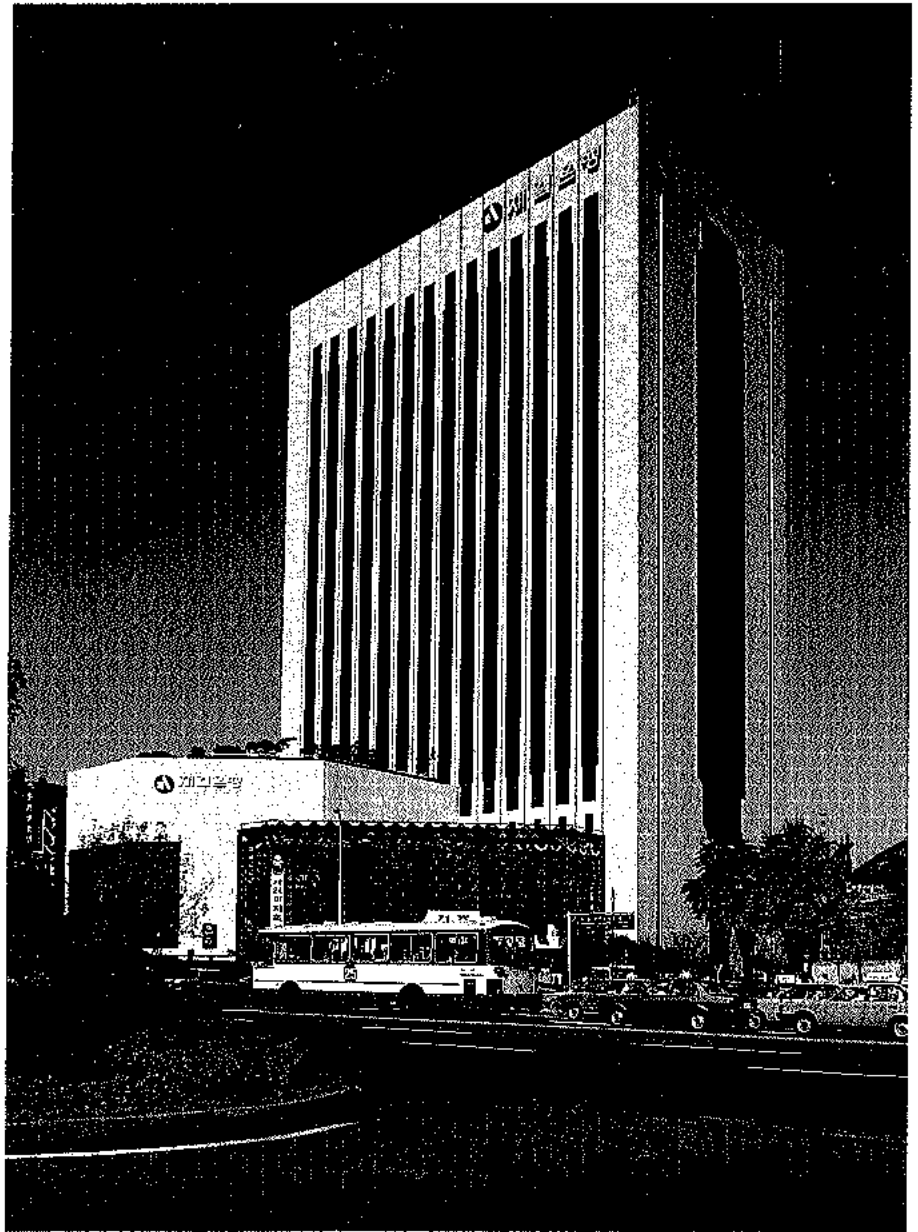
벽 - 화강석 물갈기판

천장 - 알미늄샌드위치 패널 / 격자형

□ 이트리움 / 바닥 - 화강석 물갈기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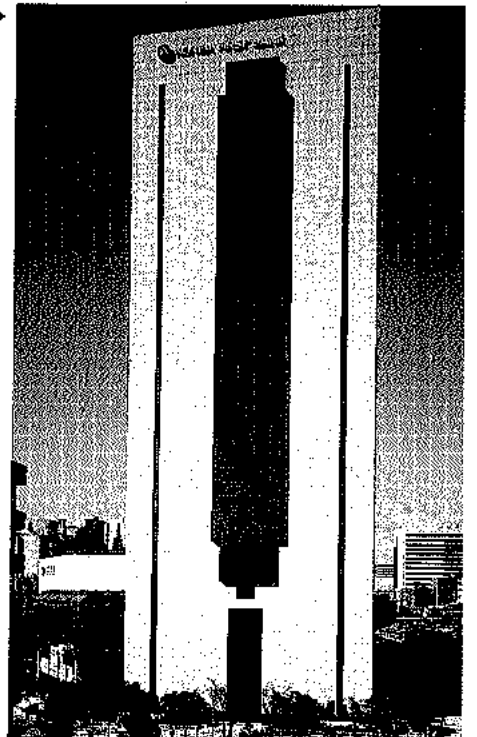
벽 - 작색복층유리

SKY LIGHT - 라미네이트 투명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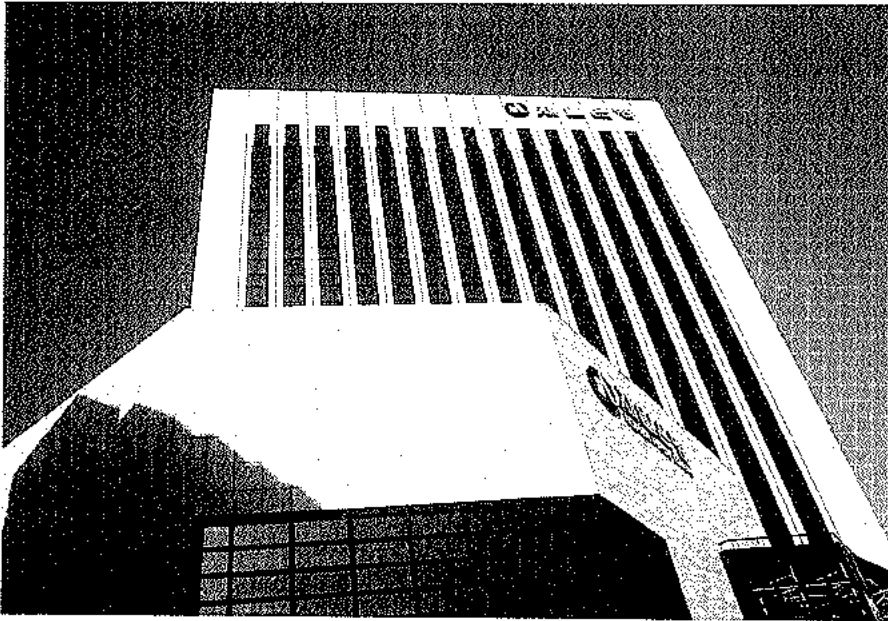


전경 ▲

동측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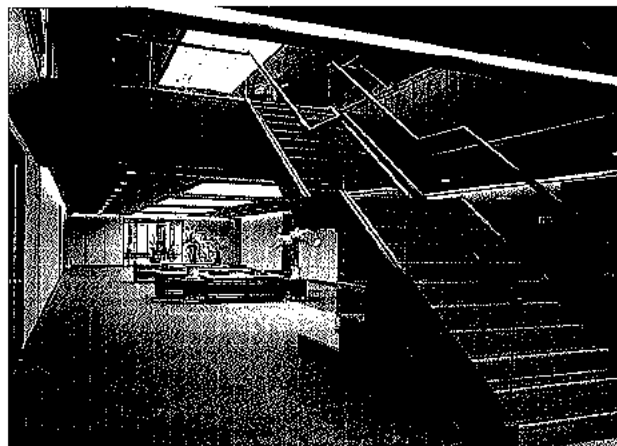
남측면 ▼





영업장 ▲

아트리움계단 ▼



▲ 중앙층 연결 계단

지하 1층 로비 ▼





▲ 아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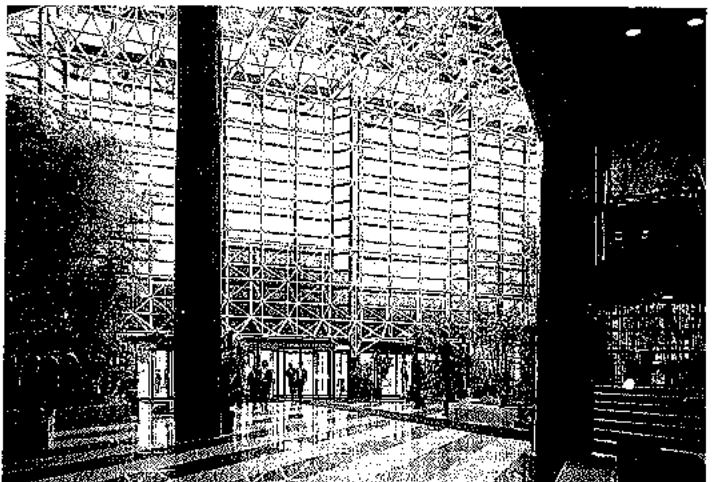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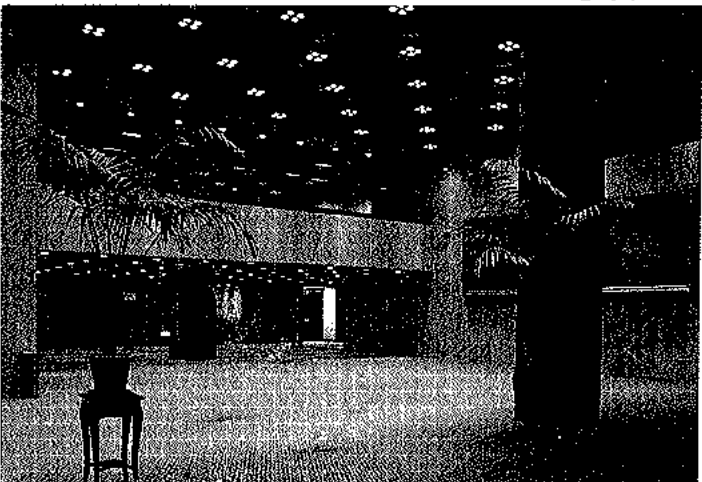
▲ 예술장식과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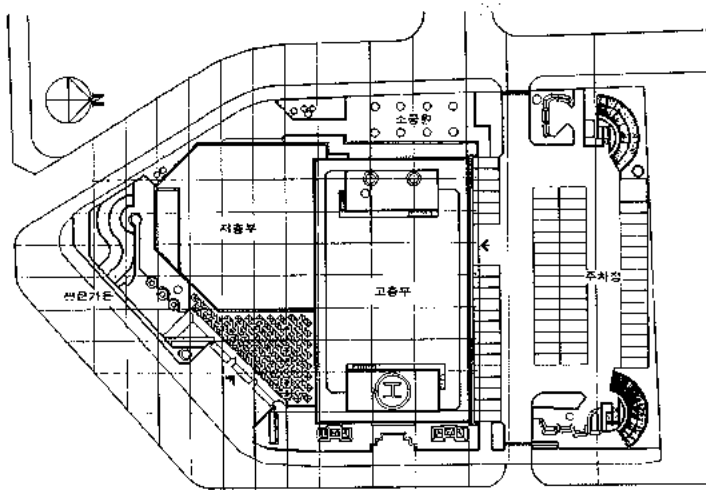
4층 강당로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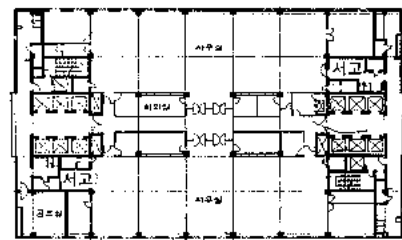
선관가든 ▲

▼ 아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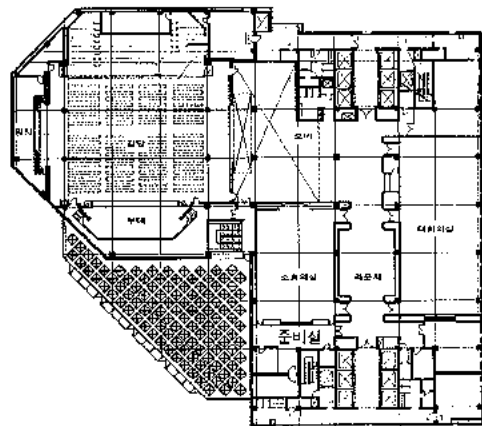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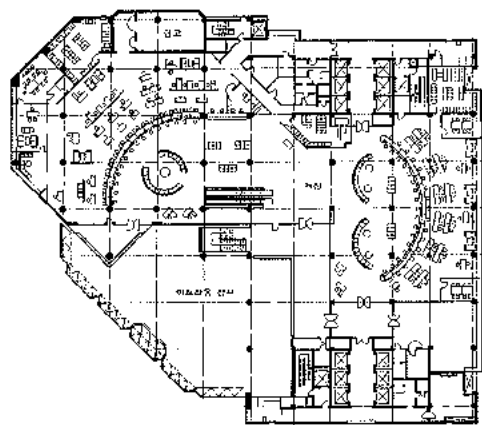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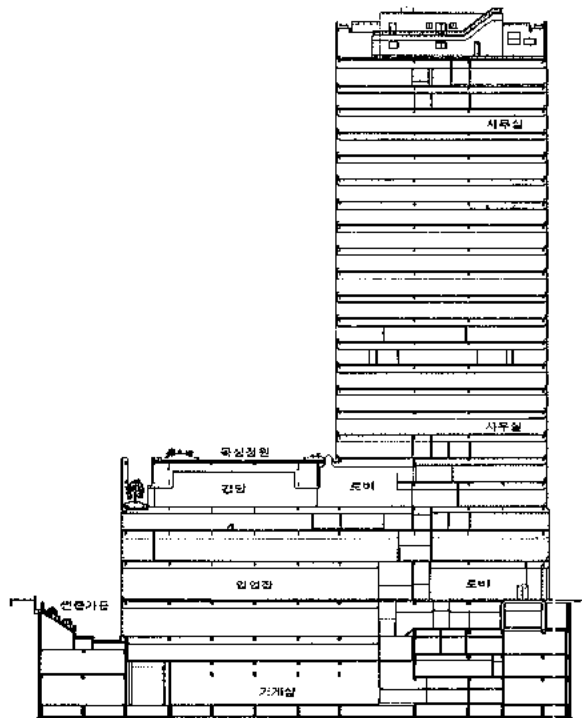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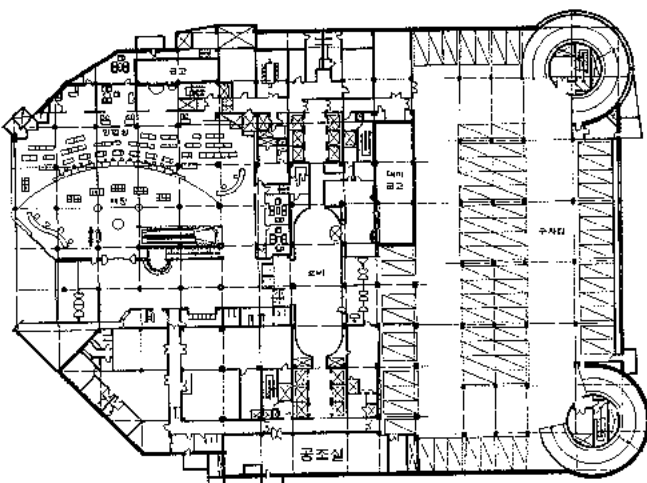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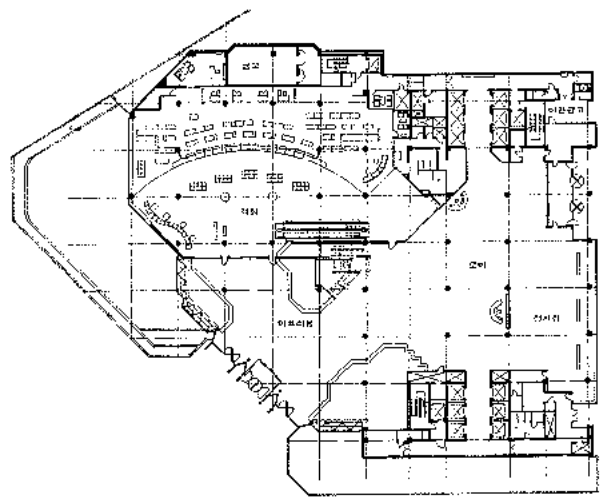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주단면도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永遠한 建築과 建築士

曹龜鉉

新世代 종합건축사사무소

작년 年末은 특히 바쁜나날을 보냈다. 年末인 관계로 대부분의 프로젝트(Project)들이 마감을 하는 계절이기도해서 더욱 더 그러했으리라 생각한다. 工事が 끝나 준공도하고 준공식이라는 形式이 있어서 감사패를 주거나 받거나 하기도하고 設計關係가 아니라도 자문위원이니 심사위원이니를 하다보면 年末에 가서는 으레 감사장 정도는 주고받는 형식이 있게 마련이다. 또 그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당에 자기가 설계한 작품이 마무리되어 그 都市속에서 하나의 空間을 차지하면서 보는이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기도하고 使用者들에게는 效用과 能率과 舒適함을 提供한 建築士들은 幸福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많다. 우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悲哀마저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일까? 기공식장에서는 주빈이어서 앞장서 삽자루라도 잡고있어야 할 建築士가, 준공식에서는 주빈자리를 찾아하고 있어야할 建築士가, 준공후에는 作品과 더불어 永遠하여야 할 建築士가 뒷전에 처지고 作品은 남되 建築士의 이름은 그 아는 이 아무도 없고, 作品名은 신문에 오르내리되 建築士의 이름은 눈물씻고 보아도 없고, 감사장 준다하여 가보면 수여자는 볼 수 없고 그의 밑에서 부(副) 字달고 일하는 자가 自己의 상사가 바쁘다며 대리수여나하고, 自尊心 상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뿐인가 設計 수주과정에서의 치열함은 차지하고라도 作品의 質을 論하기에 앞서 設計보수를 물건 값 따지듯 坪當으로나 말하고, 쥐꼬리만한 設計費를 주면서 別의別 뒷치닭거리 해주거나 바라고..... 이러한 일들이 나뿐인가 하였더니 대부분이 그러하다하니 우리 建築士들도 무언가 作心하지 않고는 못견딜 시점에 왔구나하는 생각이 금년들어 더욱더 거세게 일어나는 것은 50이 넘는 내나이 탓일까? 다른 분야의 藝術家들은 그 대우나 認識이 점차 改善되고 있음이 뚜렷이 보이거늘 어찌하여 우리 建築士들은 이러한가? 다른 분야의 藝術들이 해를 거듭하면서 그 作品의 質이 改善, 發展됨에 비금가도록 우리의 建築作品들도 그 質的 向上이 눈에 띄고 있음은 都市空間 속에서 느끼고도 남음이 있는데 그 地位는 그러하지 못하게 느껴지는 것은 남의 떡이 커보이는 때문일까? 우리가 生活하다보면 남이 나에게 잘하기 때문에 나도 잘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誠實하게 잘하기 때문에 待接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나에게 좋은 대우를

하여달라고 호소만을 한다면 우리의 지위는 더욱더 惡化되기만을 거듭할 것이다. 다만 수준높은 作品의 創作에 집착, 몰두하는일이 우리의 지위를 格上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남을 탓하기 以前에 생각해보는 自己反省도 해볼만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建築士의 수명에 관한 생각 또한 正初를 맞이하여 해볼직하다.

얼마전 나는 區美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런던의 고색창연한 탑(Big Ben) 위에 엄청난 큰 時計를 목격할 수 있었다. 나는 나 나름대로 저 시계는 문화재 정도의 골동품이겠거나 하였으나 분(分)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시계였다. 우리나라에서는 設置한지 불과 몇년 딱히 時計들이 아예 멈추었거나 한시간쯤 틀리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지고 있지 아니한가? 박벤의 틀림없이 가고있는 시계가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뿐아니라 영국, 불란서, 이태리를 거치면서 나의 황홀경은 더해가기만 하였다. 지금쯤은 再開發되어 없어졌거나 우리나라의 점성대나 안압지처럼 사용이나 기능은 접어두고 옛 얘기거리로서, 아니면 볼거리로서 선전용이 되다시피 되었어야 마땅할 노퍽남

(Notre Dame : 1163~1250)

사원이나 판테온(Pantheon)

신전은 물론 웨스트민스터

(Westminster : 1055~

1695) 수도원, 베르니니

(Bernini : 1598~1680)가

설계한 바티칸 교황청 등은

어느년에서나 준공 당시에

버금가는 위용과 기능을

현재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數百年을 지난 이런 作品들이

現代感覺에 전혀 뒤쳐짐이 없이 지금까지 장수를

누리는 것은 技能的으로, 수명적으로, 美的感覺으로,

또 철학적으로 句括的 時間帶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現在우리나라 建築의 흐름은 西歐의 영향을 받아

레이트-모더니즘(Late-Modernism)이나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 쪽으로 흐르고있다. 과연

이러한 등등의 主義(-ism)들이 말 그대로 哲學的意味

에서의 主義인지, 아니면 하나의 유행(Fashion)인지에

대하여 한번쯤은 생각해보고 싶은 1988년이기도 하다.

우리 建築士는 우리의 作品이 있음으로 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름을 後代에 永遠히 남기기 위하여는

헐리우지 않는, 改善(Renovation)되지 않는, 永遠한

작품을 함으로서만이 可能하리라고 보면서 금년은 그러한

작품을 하는 획기적 계기가 되는데 기대해본다.



“우리”의 소중함을 再認識

金武彦

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룹

항상 이 때가 되면 지난 한해를 뒤돌아 보며 새로운 각오와 결심들을 하게 된다. 금년에 만은…… 그러나 이러한 결심들은 날이 갈수록, 달이 지날수록 퇴색하여 버린다. 人之常情이다.

지난 해에 그 많았던 민주화 선언에 유독 우리 협회들은 초연하였다. 마음들을 비웠던 결과였을까? 인간은 본질이 새물과 같이 그치지 않고 항상 솟는 강한 욕망(욕심)을 지녔다. 바로 이 욕망이 우리를 자극하여 각종 문화를 창출해 내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시행착오를 일으켜 비극을 초래하기도 한다. 성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욕망에 사로 잡혀 이 마음을 비우지 못하여 엄청난 역사적 오점을 남기게 한 우리의 불쌍한 이웃들을 “우리”들은 작년에 분명히 보았다.

사노라면 지독히 어려운 역경에 처하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경험하게 된다. 이때 마다 우리는 중대한 결단과 변민을 하여야 할 때가 종종 있다. 유독 “나”를 비롯한 우리 민족은 “나”와 관계가 있는 결정은 추호의 양보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들은 너무나 간단히 용서하며 너그럽게 처리한다. 그리고 쉽게 잊어 버린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들은 공동생활을 전혀 할줄 모르는 민족이라는 혹평을 서슴치 않는다.

66

“나”의 것도 소중하며 “우리”의 것도 소중함을 인정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지독히도 비협조적이고 비판적인 자세에서 탈피하고, 진정으로 마음을 비운 “우리”가 되어 살기 좋고 아름다운 “우리”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며 우리에게 모든 국민들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우리”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주하는 선의의 경쟁자가 되어 서로를 격려하여 주며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99

요즈음 자라는 어린이들을 보면 ‘확실히’ 우리 시절과는 의식구조가 변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완전히 자기 보호적인 생각과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격세지감을 갖게 한다. 심지어 자기의 부모나 형제도 ‘일단은’ “나”의 세계에 개입되는 것을 강력히 그들은 거부하고 있다. 가치 기준이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나”의 권리와 이익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상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며 주장이다. 그러나 사회생활이란 참 묘한 구석이 있다. “나”만을 살수 없게 만든다. 분명히 “우리”들을 함께 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의 총선거의 결과와 같은 생생한 경험을 통하여 “나”만의 일방통행적인 이익 추구는 결국은 “우리”를 패배의 늪으로 몰아 버리는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였다. 아전인수의 좋은 표본이리라.

또한 우리는 “나”의 작은 일에는 끝까지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막상 “우리”의 큰일에는 오히려 무관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또 새해가 시작되었다.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던 “우리”의 모든 일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해결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갑자기 모든 것이 변화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우선 “나”는 긍정적인 자세에서 “우리”를 관찰하여 성의있는 관심을 갖어야겠다. “우리”의 세계는 너무나 많은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의 세계적인 흐름은 “우리”를 당혹하게 하고 있다. 작년 말미에 “우리”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았던 건설관리법과 같은 괴물이 금년에도 불쑥 등장 아니 한다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

우리는 “나”의 것도 돌보며 “우리”의 것도 돌볼 줄 아는 지혜를 갖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나”의 것도 소중하며 “우리”의 것도 소중함을 인정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지독히도 비협조적이고 비판적인 자세에서 탈피하고, 진정으로 마음을 비운 “우리”가 되어 살기 좋고 아름다운 “우리”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며 우리에게 모든 국민들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우리”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주하는 선의의 경쟁자가 되어 서로를 격려하여 주며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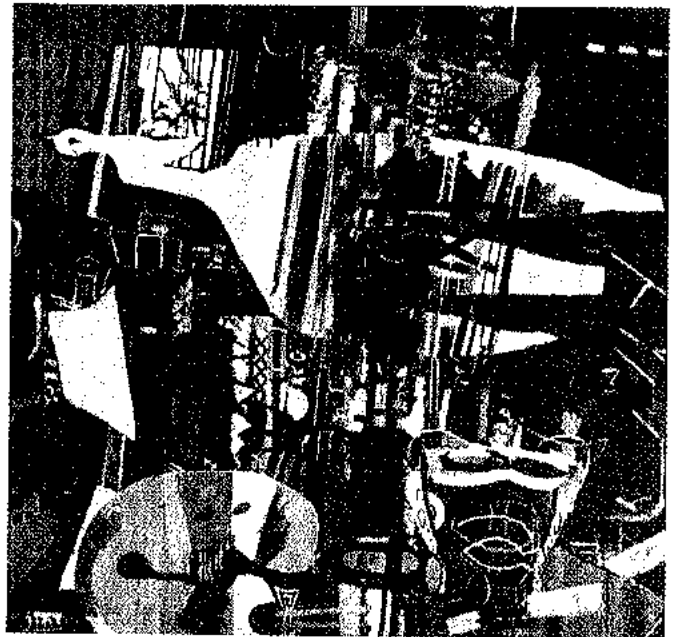
자, 출발이다. 오직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후회를 남기지 않는 최선의 생활로 금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겠다. 우리 모두 “우리”의 권익을 잘 신장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나”의 조그마한 희생을 주저 하지 말아야겠다.

넷물 속에 저 돌을 보아라

崔英集

종합건축사사무소 탐

새해라고 해서 갑자기 붉은 해가 노랗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지에서 새 싹이 돋아나듯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또 새 달력의 첫장을 뜯을때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 같이 가슴 한 구석에 경건함과 설렘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벌써 오래 전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등을 생각하며 철이 들던 때로부터 오늘까지 수없이 많은 날들을 보내며 거듭 새해를 맞이 하지만 지금도 똑같은 질문을 내게 던지고 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건축은 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나와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우리가 남긴 흔적들은 후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새해를 맞아 지난해를 돌아보면 어쩐지 부끄러워지는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으며 새해의 발걸음엔 사실 그 이면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사려 있게 마련이다. 두려움은 겉혀 속에 경건을 넣고 경건은 의지를 가다듬게 하며 의지는 희망을 잉태시키며 희망은 힘을 키우게 하고 힘은 바로 성취의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새해 새빛은 희망이 되어야 하고 힘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1988년 새해는 특히 우리에게 새로운 감흥을 일으킨다. 수년전부터 귀가 아프게 들어온 88타령이 코 앞에 다가온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에 기대감 같은 것으로 약간 흥분하게 되는 것이다. 과연 우리 건축계에는 그러한 기대감이 어떠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자못 궁금하다. 당장에 어떤 혁신이 이루어지리라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도한 민주화, 자율화 불결이 건축계에 부딪혔을 때 어떠한 파문을 일으키게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우선 우리는 우리나라대로의 제자리를 아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스스로 알고 지키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리를 남에게 도둑맞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정확히 알아야 남도 우리자리를 알아주지 않겠나.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우리의 본질을 파헤쳐 각성하고 새시대를 헤쳐나갈 슬기를 길러야 한다. 내면으로의 깊이와 밖으로의 의연함이 우리자리를 지키는 방패이자 공격의 창이 될 것이다. 사회적인 우리의 위치와 책임, 문화적인 우리의 역할과 의무, 모두 우리의 깊은 성찰과 활기있는 활동으로 한발 한발 올라가야 할 우리의 마당인 것이다. 누구나 우리의 마당을



존경속에 이해하며 우리는 즐겨 고통속의 임무를 감내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한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균등한 기회속에서 능력껏 자질을 키워가며 봉사하는 자세로 일할 수 있는 우리의 마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88년에 펼쳐지는 새날들은 우리나라가 전세계를 향해 대문을 활짝 열듯 우리 마음을 모두 열어 시원하고 푸른 하늘처럼 처림 당당함이 넘쳤으면 좋겠다. 어느 한 구석 학익이 없이 끝없이 넓고 또 넓은 하늘을 보자. 이기와 독선,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 모두가 맑은 마음을 갖자, 규제와 속박, 특혜와 강행등에 익숙하여 왜소해진 마음을 트이게 하자 시야를 넓혀 점점 어두워지는 시력을 회복하고 새나라 새시대 새힘으로 달려가자, 사실 각박한 생활 속에서 복잡다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어디 하늘 한번 제대로 쳐다 볼 시간이 있었으랴, 마음이 넓어야 그릇이 크게 되고 그릇이 커야 이상이 커진다. 큰 이상을 품고 우리도 여기저기 좀 돌아보면서 넓게 넓게 펼쳐 나가자, 그래야 직능인으로서가 아니라 문화인으로서의 우리 마당이 대접받게 되지 않겠나. 새해에도 역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것에 감사를 드리자. 우리나라에 88년을 있게 한 것도 감사할 일이고 88년의 변화도 감사할 일이고 희망으로 새날을 설계하는 우리도 감사할 일이다. 새해 아침 어느 신문 신춘문에 당선 시를 읽으며 올해의 마음을 가다듬는다.

“넷물 속에 저 돌을 보아라.
제살 제 뼈 모두 넷물에 주고
산에서 바다까지 집시가 되어
제 손 잡아 줄 물풀 하나
제 몸 안아 줄 바위하나 찾아서
밤이나 낮이나 말이 부르도록
견고 뛰는 것 보아라”

올림픽과 나, 그리고 異空

柳春秀

종합건축사사무소·異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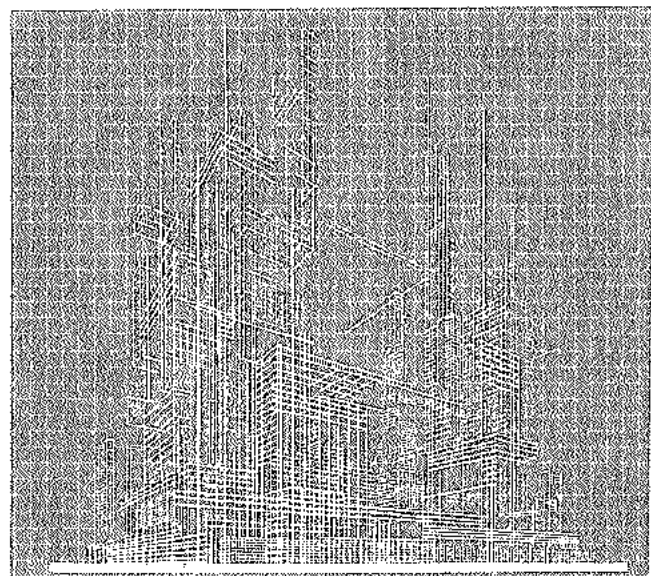
올해는 우리 한민족이 브리더 세계를 향하여 웅비의 나래를 펴는 해라고 한다. 단군 원년이 무진년 이었고, 금년은 일흔두번째로 돌아온 상서로운 무진년으로, 88년 올림픽이 열리는 것도 우연만은 아니라는 說도있으며, 단기 4321년, 그 숫자 또한 의미심장 하지 않은가?

올해를 위하여 지난해는 그렇게도 이른 봄 부터 최루탄에 목 매었으며, 한 여름의 뇌성처럼 폭발한 노사분규에 불안한 가슴을 누르고 있었는가? 사람들 마다 안도와 실망과 분노의 여러 표정을 짓도록 결말된 저 뜨거웠던 선거도 이제의 역사로 넘어갔다.

그 유명한 「바덴바덴」에서 서울 올림픽이 발표나기 數分前, 81년 9월 30일 밤, 나는 벽에 걸린 관음보살상 앞에 三拜를 올리며 올림픽 개최를 빌었다. 이윽고 서울 올림픽은 확정되었고 의외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올림픽 준비를 위한 전문가 들의 좌담회가 중계되었으며 나는 그 요점들을 메모하기 시작했다.

경기시설, 선수촌의 아파트 임대문제, 풍역과 교육, 컴퓨터 시스템과 중계로문제등이 역시 전문가들 담게 예측적으로 거론 되었었다. 다음날 空間의社內報인 「時間」에 이런 원고를 썼다.

「“아빠, 중동진출의 70년대에 무엇을 했나요?
그리고 아빠, 올림픽을 위해선 무엇을 하셨지요!”
면 훗날 지식들의 물음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게 될 것 것인가?」



우연인지, 노력한 탓인지 나는 남만큼 이상으로 올림픽 관련 시설물 설계에 참여하게 되었다.

올림픽 회관 일반공모에 이어 2 차 현상설계에 지명되었었고, 이 기회에 감히 건방지게 표현 한다면 최소한 현재의 저 치졸한 「기와집」 회관 보다는 더 나은 안이었다고 믿고있다. 그후 입선이나마 선수촌 국제 현상설계에 뽑히기도 했었다. 그리고, 올림픽 공원의 다섯개 경기장등 시설물의 기본설계를 담당했었고, 무엇보다도 세계최초의 「케이블 돔」 구조인 체조경기장의 설계와 감리를 수행한 경험은 평생의 보람이 될 것이다. 케이블돔의 창안설계자인 Geiger 박사의 소개로, 중공의 「大地建築」으로 부터 90년 북경 아시안 게임을 위한 제작년 가을 초청을 받았으나, 최종 순간에 비자 발급이 보류되었었다.

가슴아픈 일도 있었다. Geiger 박사 팀의 Andrew, 84년 이래 3년간, 수 없는 전화와 텔렉스, 그리고 미팅과 스캐치로 정이 들고, 현장에서 함께 고생한 그가, 지난 아시안 게임 이후 펜싱 경기장의 보수공사를 감리 하던 중에 불의의 사고로 이국땅에서 죽었다. 우리의 올림픽을 위해 희생된 최초의 외국인 일 것이다.

이 기회에 그의 명복을 빈다. 아름답던 그의 부인은 지금 쯤 재혼을 했을까?

체조경기장 애기가 나온 김에 보탠다면, 그 새로운 최초의 공법이 착공되면서 부터 공사가 완료 될때 까지 대 어섯번!, 그리고, 같은 구조의 펜싱경기장 사고 이후 그 원인 분석을 위해 몇 차례나 전문가들을 서울에 파견한 일본의 「다케나카 공무점」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내 기억으로는 국내의 어떤 건설회사에서나 구조학자들이 연구를 위해 찾아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준공도 되기전인 지난 85년 3월, 미국의 ENR (Engineering News Record) 에서는 특집으로 이구조를 소개 했었고, 6 월에는 일본의 Nikkei Architecture에서 또한 특집으로 다루었으나, 국내의 어떤 잡지에서도 아직 이 공법을 다룬것을 보지 못했다.

눈앞에 「세계적」인 것을 두고 구경기는 전문가조차 드문것 같다.

펜싱경기장 사고를 계기로 모든 경기장은 더욱 철저한 안전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믿는 바이나, 경기장은 물론 선수촌, 호텔, 지하철등, 모두가 건축사인 우리들의 손으로 설계된 모든 올림픽 관련시설에서 아무 사고없이 편리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올림픽이 치루어 질 것을 우선 적으로 새해에 기대한다.

우리 손으로 이룩한 이 도시환경과 건축이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또한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되길 간절히 비는 바이다. 이 성공적인 올림픽 이후 보류된 중공행 비자도 나온다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이러한 「가능한 꿈」속에서 아직 일년반도 안되는 「異空」도 세계를 향하여 얼굴을 내밀게 될 것을 또한 기대해 본다.

한국현대건축의 오늘

Criticism/Today's Korean Architecture

申在淳

by Shin, Jae-Soon

비록 터무니없는 강제적 규범으로 매도돼 버린 초언어는 실상 우리의 해방 이후의 건조한 작품들에 있어서는 극복되어야 할 명제로서 보다는 오히려 보호처로서의 역할을 해준 것이 사실이며 건축가들에게 이상적인 패러다임으로 통용되었다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초언어의 매도가 우리들 자신이 창출한 의사전달의 또 다른 언어형식의 공인과 함께 진행된 자의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힘든 이상 우리의 건축 역시 대중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언어의 결핍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게끔 했다.

1. 序

우리들을 담고 있는 전반적인 건축환경은 물론 개별의 건물을 말할 때면 으레 우리들 자신과 건물 및 환경에 관한 상관성이 갖고 있는 의외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로 지어져 우리에게 주어진 건물에 대해 이러저렇게 활자화된 평가가 갖는 의미와 관계는 어떻게 제자리를 찾는 것인가? 우리는 이미(아마도 근대·이후로)어떤 건축작품을 막론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할 때 이론이나 그 이론들이 담겨진 출판물을 근거로 삼는 것이 우리의 현재 문화가 갖는 특성의 하나로서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 건축분야에서 작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연구는 건축 또는 건축자체에 대한 체험에서 출발한 것이기 보다는 건축적인 개념들에 대한 확인과 설명 그리고 그에 대한 비평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자체를 대신해서 활자와 사진이 건축의미의 의사전달과 체험의 기본적인 형태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지 오래며 건축언어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체험의 양태를 자연스럽게 변화시킨 것 또한 부정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건축언어의 본질적인 차원이 공간적이기 보다는 다소 시각적인 감각으로 각색되어 사진이나 여타의 다른 기록수단으로 전달되고 있음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특정한 작품의 의미를 비평의 형식을 빌어 드러내 보이려는 시도에는 「사람이 어떻게 건축을 체험하게 되는가?」하는 문제·즉 행위자로서의 건축가와 사용자로서의 대중간의 이해관계를 보다 포섭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틀 속에서 증진시킬 수 있는 방도에 대한 모색의 고통이 두려움으로 덮쳐오기 십상이다. 이러한 고백을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언급의 대상이 되는 독립기념관 같은 작품들 역시 출판물이나 기타의 매체로서 전달된 실체상으로는 체험되지 못한 과거의 건축언어에 대한 해석에 수반되는 고통을 맛보고 있기 때문이다.

2. 상황의 인식

이제는 그 내용을 거론하기조차 쑥스럽게 느껴질만큼 익숙해진 모더니즘에 대한 공격적 비평들의 대부분은 「범세계적 초언어(Meta-language)」가 더이상 건축적 의미의 의사소통을 담당할 만한 언어가 아니라는 일치된 합의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며 그에 따라 모든 예술분야 심지어 과학분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언어를 창출하려는 열망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었으며 새로운 건축언어를 시각화해야 한다는 의무를 자인한 것이기도 했다. 모더니스트들의 이상주의적 관점으로 무장된 시각으로는 용인하기 힘들 만큼 여러갈래의 외침과 견해는 서양의 경우 역사적인 모델들의 충실한 재현이나 또는 원리적이고 근본적인 구조의 추상화 작업으로 등장해서 각각 벤츄리와 아이젠만에 의해 많은 실험이 이루어졌고 러시아에 의한 유형들의 이상화 작업 및 그레이브스에 의한 상이한 문맥적 상황인자들의 회화적 통합의 시도도 그 공과야 어쨌든 나뉠대로의 설득력과 지지기반을 구축해 온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견해를 해석하고 비평하는 목소리 또한 단조로운 가락만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역사적 또는 지역적인 모델들을 선택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모색되어야, 마땅한 마지의 일반해를 의식적으로 회피하고 상대적으로 통속적인 언어에 호소하거나 야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고 원리적이고 근본적이라고 전제된 구조조직의 추상행위는 다양한 의미의 교섭적

申在淳

홍익대학교 박사과정 목원대학 건축과 강사



▲ 독립기념관

바탕이 되어야 할 광범위하고 다양한 레벨의 존재형식을 무시한 채 해독하기 이를 데 없이 난해한 고급언어만을 과시한다는 점에서 앞서와 같이 혹독한 꾸밈음이 따르게 마련인 것이다. 그와같은 각각의 목소리가 갖는 높낮이가 어떻게 변모되어 가든 그러한 모든 상황은 결국 우리에게 초언어의 수입원이 되어왔던 구미제국에서조차 초언어의 공인성이 박탈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형태의 대외의존성에서 탈피한 우리의 건축언어가 있어야겠다는 자성적 계기를 제공해 준 것만은 틀림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건축문화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를 시각화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는 외침과 견해의 다양함이 우리만의 상황이라기보다는 동서에 공통된 현상인 것이다. 즉 개인과 지각된 환경의 해석과정과 건축물의 표현과정으로 제한될 수 있었던 초언어의 보호처에서 더이상 안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건축과 대중간의 대화를 가능케 하는 언어인가 아닌가하는 문제에 어쩔수 없이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함에 따라 그러한

대화과정에서 노출되는 갈등의 구조를 드러내서 의미와 형태를 다시 통합시키는데 건축행위와 비평행위가 같은 연장선 위에서 공동노력을 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사실계 작품전 수상작들을 수상작이라는 공식적 채널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논함은 그와같은 시대적 필요에 대응하는 오늘날의 건축적 대응자세를 다시 검색하고픈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계획의 세부적인 의도와 그것의 설명 보다 건축언어에 대한 기본인식에穿鑿하려는 이유도 바로 그러함에서 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록터무니 없는 강제적 규범으로 매도돼버린 초언어는 실상 우리의 해방 이후의 건조한 작품들에 있어서는 극복되어야 할 명제로서 보다는 오히려 보호처로서의 역할을 해 준 것이 사실이며 건축가들에게 이상적인 패러다임으로 통용되었다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초언어의 매도가 우리를 자신이 창출한 의사전달의 또다른 언어형식의 공인과 함께 진행된

자의적인 상황이라고 보기힘든 이상 우리의 건축 역시 대중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언어의 결핍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게끔 했다. 오랫동안 우리를 적시고 있었던 모더니즘의 창작기준들이 더이상 대중적 이해의 바탕이 될 수 없음에 따라 건축환경으로서 부여되는 개별의 빌딩 이미지리(Building Imagery)와 그것들에 대한 대중적 이해력 사이에는 어느때보다 드넓은 간극이 자리잡게 되었다. 건축의 공공성에 대한 고려로 동일한 인식만은 변하지 않았음인지 그와같은 공공적 건축언어에 대한 모색의 필요를 우리의 건축가들이 기꺼이 수긍하는 시점에 서있음을 수상작품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다행스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미로운 건축언어를 회복하거나 새로이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출발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한 의문점과 회의적인 여운을 남기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3. 독립기념관의 경우

한 작품을 놓고 그렇게 무수한 의견들이 오갈 수 있을까를 자문할 만큼 이미 다양한 해석과 비평이 이루어진 독립기념관을 다시 볼 때 제일 먼저 건축사적 측면에서의 보존과 소외라는 양면적 본질을 상당히 아프게 느끼게 된다. 19세기 초반에 뒤랑에 의해 마치 식물채집표본이나 나비채집표본처럼 일목요연하게 목록화된 서구건축물들의 연대기적 분류가 건축적인 의미를 동반하는 형태요소와 그것들이 생산된 배후의 토양을 분리시키고 제거해 버리는데 공헌했고 그 결과 그러한 형태의 미요소들의 전면부정에 못지 않게 이미 건축가의 인식의 전열장 속에 놓여져 버린 형태의미요소들이 보다 선택적이고 임의적으로 조합되거나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울러 제공했다는 사실은 서양건축사의 교과서에서 누누히 언급된 바 있다. 여기에서 전면부정의 방식이 모더니즘의 시작이었다면 토양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광범위한 상황과 분리된 채로의 선택적이고 임의적인 응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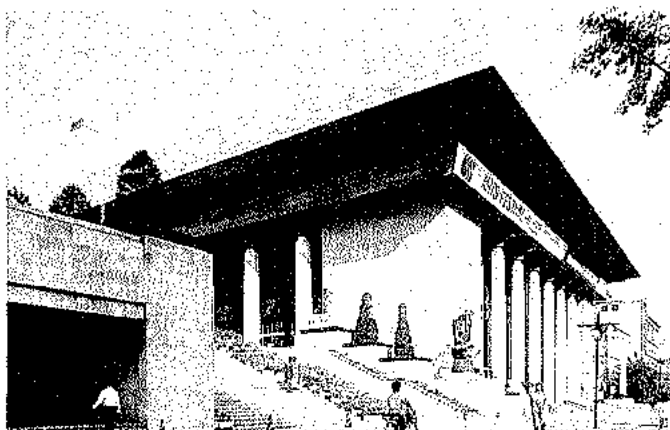
건축적 유산이 건축가의 인식에 자료로서 탈성격된 상태로 보존되고 회상될 때 형태의미 요소와 그 구성은 일견하기에는 합리적으로 확인되고 검색될 수 있었고 이때 설계란 어떤 식으로든 임의로 선택된 자료들의 변형되거나 확대된 구성으로 정의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와 같은 변형되고 확대된 포스트모던적 언어구성이 새로운 건축언어 (= 새로운 양식)에 대한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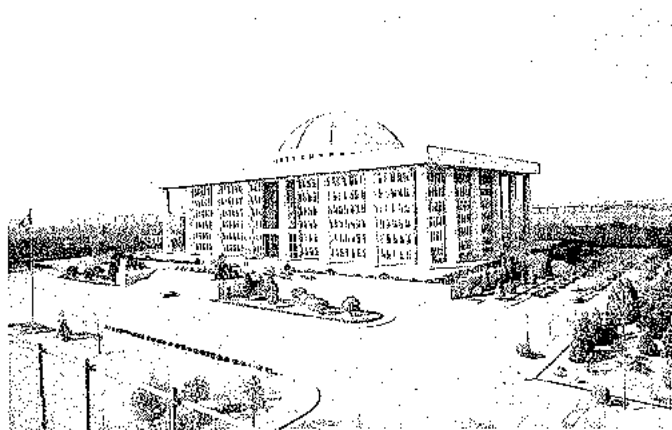
방향이 곧 포스트모던의 시발이라고 봄이 무방할 것이다. 예를들어 19세기 서양의 대중들에게 제공된 미술관과 박물관들은 역사의 흔적들을 실물로 보존해서 전시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러한 유산들을 잊지 않을 수 있음에 공헌하는 동시에 그 유산의 의미의 바탕이 되고 있는 토양을 본의 아니게 제거해버림으로써 그 유산 자체를 본질적으로 즉물화시키는 뜻하지 않은 역기능을 행한 것을 어렵지 않게 추적할 수 있다. 건축적 유산이 건축가의 인식에 자료로서 탈성격된 상태로 보존되고 회상될 때 형태의미요소와 그 구성은 일견하기에는 합리적으로 확인되고 검색될 수 있었고 이때 설계란 어떤 식으로든 임의로 선택된 자료들의 변형되거나 확대된 구성으로 정의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와같은 변형되고 확대된 포스트모던적 언어구성이 새로운 건축언어 (= 새로운 양식)에 대한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양식이란 근대이전까지만 해도 개인이나 문화전반의 작품에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일망정 작품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이미 존재해버린 선택안으로서 의식적으로 동용되는 성격의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인다. 건축에 관한 그와같은 근거박약한 역사주의자적 접근은 프로젝트에 임하는 건축가들에게 “어떤 양식으로, 어떤 언어로 건물을 설계해야 하는가?”라는 수사학적 명제에 부대끼도록 만든다. 이때 그러한 프로젝트가 대중들의 또는 시행주체의 광범위한 컨센서스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면 것일수록 대중적인 차원의 신임과 승인을 얻기에

보다 쉬운 개인적 결단들을 합리화시킬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그러한 사정에 참조되거나 직설적으로 인용된 진열장속의 자료들이 갖는 지역적(한국적)인 고유성(지붕과 같은 것들)이 구성상의 옹고그름을 면키 위한 최대의 빌미와 최상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음도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어떤 면에서는 선택적이고 임의적인 포스트모던식의 언어가 모더니즘이라는 초언어에 희생된 지역적 서정과 소외감이라는 상처들에 대한 치료의 수단으로서 보다 원초적인 서정성들을 내포하고 있는 형태들과 재회할 수 있게 해준데 대해서는 고마움의 표시를 잊거나 인식하게 치루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그러한 재회의 방법으로 구사된 상속받는 형태요소들의 복사와 확대라고 하는 천진난만하리만큼 경직된 사고방식에 개운치 않은 심정임도 굳이 감추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모더니즘이라는 초언어가 그러했듯 포스트모던이라는 다소 탄력적인 언어도 역시 그것이 역사 또는 기억할만한 서정성의 보관의지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역사로부터의 소외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로서 구사된 독립기념관이 퇴행이라고까지 지적될만큼 경직된 작품이 태버린 까닭은 무엇으로 설명되어야 하는가? 건축언어란 그 자체를 언어의 구조와 그 원천에 관련된 상황들에 관련시켜 분석하고 종합해서 어떤 일반화된 규칙을 마련하는 것에 다름아님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언어에 있어 규칙이나 상징의 문제를 연구하고 응용하는 기본은 결국 의미의 일반화된 어떤 상식적 공통요소를 포착하고 인정하는 것 역시 부연의 대상이 못된다. 이점에서 건축을 언어로서 취급할 때면 전통적인 어떤 公理를 정의하고자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그러한 공리의 모집단이 분명해지지만 한다면 기타의 여러가지 부수적 사실들은 아주 편안하게 포착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와같은 논거가 견실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반화된 상식적 공통요소이나 공리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최초의 원천적 정의의 신뢰성이 높은가 낮은가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건축가는 자신의 언어체계에서 일체의 애매함이 제거된, 의심의 여지가 없을만큼 질서정연한 언어의지를 획득하고 표현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그러한 공리적 여형을 출발점으로 삼지않을 수 없게 된다. 반면 그와는 다른 차세로서 질서정연한 정신성의 구현에 덜 연연해 하면서 우리의 관례적이고 전통적인 공리적 가능성들을 탐색하는데 보다 세심한 경우를 가정해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방식이 수반하는 애매함과 추상적 또는 안티포털함에 의존하기 보다는 질서정연한 언어의지를 재현하려는 앞서의 입장에서 독립기념관의 설계가 출발했다고 보인다(이러한 방식이 시행주체에 의해 강요된 것이든 설계자의 자의에 의해 선택된 것이든) 그러나 이같은 언어의지는 궁극적으로 활자로서 서술될 수 있는 방식을 구사했던 서양의 개념예술 운동의 주창자들에게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작품을 생산해 내는 총체적 정신성



▲ 세종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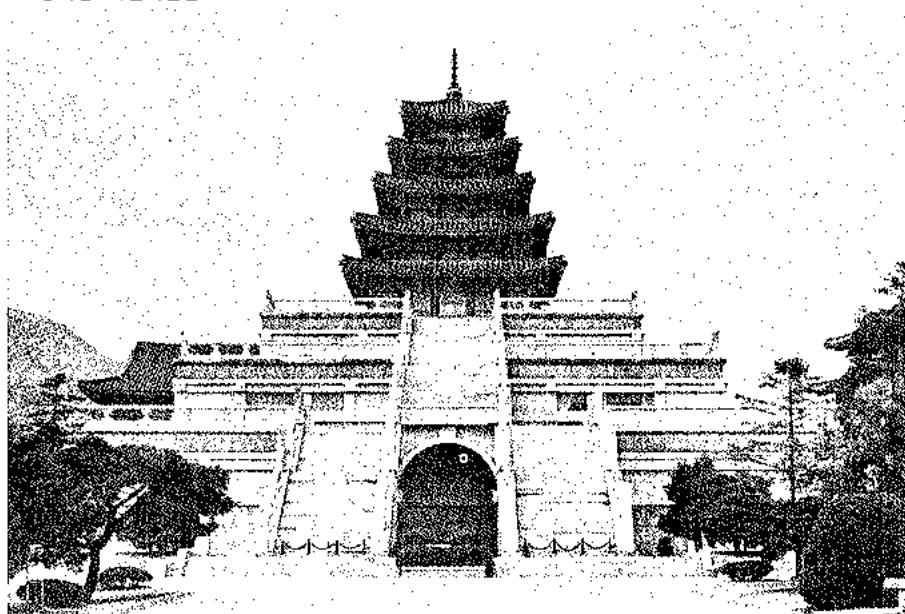
▲ 국회의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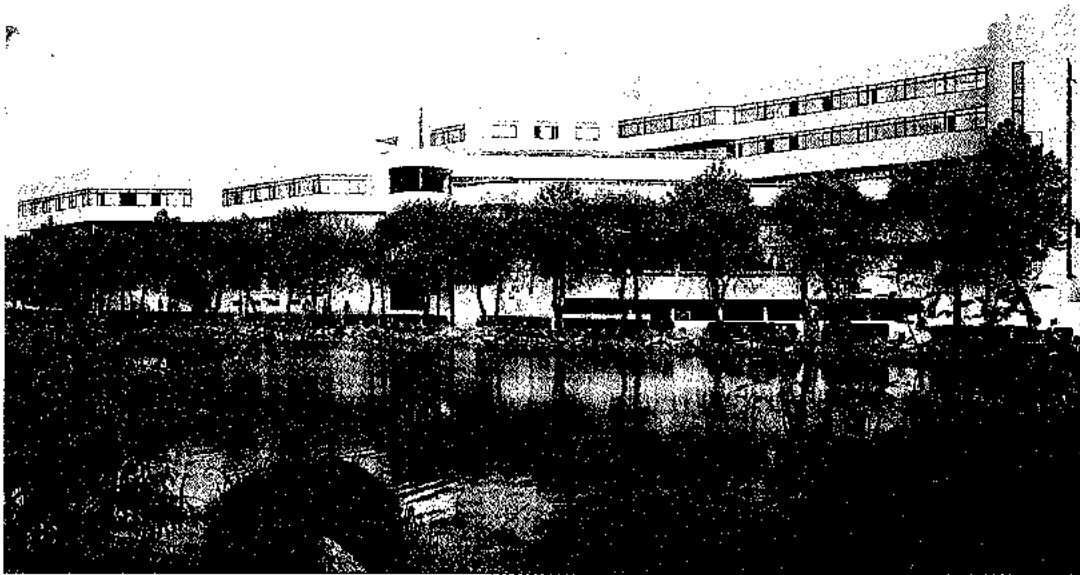
속에 혼재되어 있는 다양한 레벨의 직관력을 회생시키기 쉬운 것이므로 자칫 비생산적인 경우가 많음이 이미 그들에 의해서 증명되었으며 결국 증언부언의 상투적 궁지로 작가를 함몰시켜 버리는 위험마저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렇게 볼 때 그러한 건축을 체험하는 대중들에게 직접적인 연상을 가능하게 해 주는 내용을 명백하게 수반하는 형태요소나 서술적인 판독가능성을 갖고 있는 개념요소 없이는 진정으로 창조력이 풍부한 건축언어는 있을 수 없다는 앞서의 생각에 쉽게 타협한 흔적은 독립기념관의 거대한 지붕에도, 노출된 거대한 구조체에도, 거대한 외부공간의 구성원리에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동일 작가에 의해 수행된 다른 시청사 건물을 들춰낼 필요도 없이 그와같은 증언부언의 궁지에 몰려있음은 한국적 건축언어의 모색이 과제가 되었던 대규모 프로젝트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목격되었음은 단순히 우연한 경우도 차부해 버리는 것이 좋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모더니즘이라는 기능주의적 초언어속에서 우리식의 건축언어를 모색했던 경복궁 국립박물관의 입안이 이미 1966년의 일이고 그 후 지방 대도시의 박물관과 세종문화회관 및 국회의사당의 70년대를 거쳐 87년의 독립기념관에 이르는 과정은 그야말로 증언부언 속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그지없이 암울한 우리의 건축언어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때 그같은 20년이라는 세월은 70년대 초반 개념예술의 명멸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서양이 소모한 시간과 비교해서도 이만저만 손해가 아님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 실로 안타까운 까닭이다. 물론

건축적 환경의 하나로서 이루어진 독립기념관이기 때문에 공공영역의 대중들에게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다양한 이해력의 편차를 벌미로 자기변호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다른 어떤 형식의 예술보다도 훨씬 난해한 제작상의 제한요건과 완성된 건물이 갖는 어쩔 수 없는 物性과 형이하성들은 작도된 평면과 입면들에서 설계자 마음속의 이리저러한 의도의 무상한 질곡을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빼앗아 버리기 쉽다는 것 역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기에 비해 동일한 과제에 접근하는 다른 예술형식으로서의 우리문학은 건축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保持된 의미형식을 물려받은 채 오늘에 임하고 있고 우리의 일상적 생활을 표현하는 연극도 인간행위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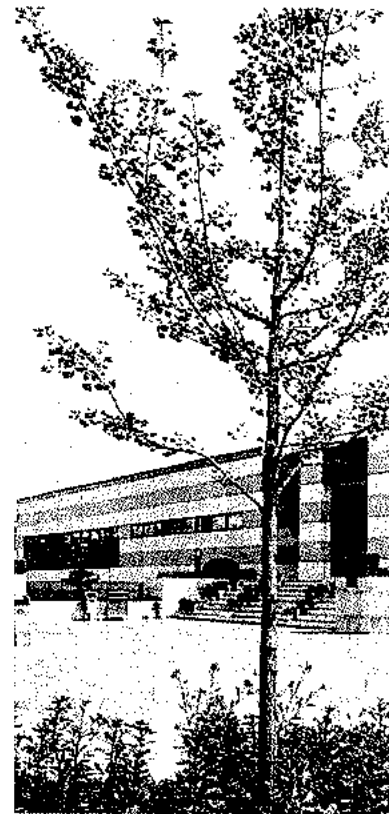
자체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훨씬 가변적이고 심리적인 적응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의 문학과 연극이 우리의 삶과 언어를 동질화시켰다거나 그 성취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의 상징적 항구성 자체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는 대중들과 훨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은 틀림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시행주체에 의해 강요된 것이든 또는 거부해 버릴 수 없었던 상황에 의해서이었든간에 우리의 고유한 건축언어를 찾으려는 광대한 임부와 씨름하게 된 오늘의 우리 건축가들은 적어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언어의 본질과 표현된 규칙을 동질화시키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전지에서 건축언어란 진열장 속에서 탈성격화되어 정지된 상태로 보존된 요소가 아니라 끊임없는

▼ 경복궁 국립박물관





▲ 인하대학교 학생회관 전경



문맥적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이상 引喩에
의해서나 서술적 관독성을 갖는 단순한
도상의 재현 또는 이미 완료형이 된
과거요소의 무의미한 수용에 의해서
달성될 수 없음의 인식이 급선무라는
점을 독립기념관에서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 우리 건축언어의 상징적
향구성이 곧잘 지붕이나 부유하는 듯한
곡선 및 회랑들과 원형적 형상들과
혼동된 나머지 引喩와 복사를 위한
목록화 작업이 파사이드에서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는 이미 6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후반까지 20년을
보냈고 이에 뒤따르는 허탈감은
독립기념관 좌우측면과 후면에서 어쩔
수 없이 행명그레하게 노출되었으며
정면의 목록화 작업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러한 허무를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를 놓고 이미 언어의 일관성
또는 논리성을 애써 잇는 듯 웅성과
같이 견고하고 안심할만큼 크게
비례지워진 매스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게 되면
60년대와 70년대의 모더니즘이라는
초언어 속에서 여러 문화시설을 통해
이루어진 건축언어의 각색에 이여한
실패로 끝나버려 전통성의 조형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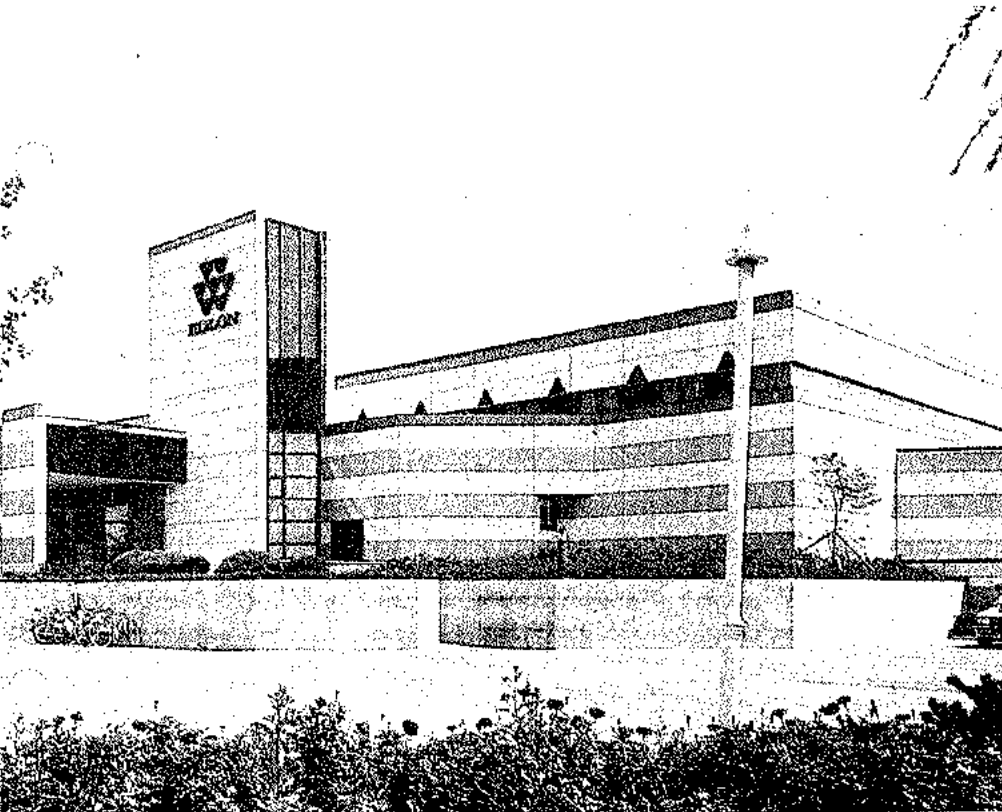
한국적 건축언어의 모색 자체를 기피할
수 밖에 없었던 경험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포스트모던의
언어속에서 동일한 논리로 또 한번의
각색을 이유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고 만다. 즉
기획단계나 구상단계에 있어서의
논리적 옳고 그름에 다시 환원되는
것이고 그 이상의 논의를 진행키
위해서는 작가의 또 다른 작품들
수 밖에 없게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4. 인하대학교 학생회관과 코오롱 우정관의 경우

이 글을 위해 지면을 할애해 준 협회가
기계의 심사위원들을 구성해 등위를
매긴 순서를 굳이 어겨가면서 두개의
작품을 뒤에 언급하게 된 까닭은 이미
모자라지 않게 상찬된 작품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필설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느긋할 수 있으리라는
안도감에도 물론 있는 것이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 이루어진 건축언어의
새로운 추구에서 독립기념관이
실패하고 있음에 따른 대안적 모색에
관해 이야기 하고자 함에 더 큰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건축은 그 선후를
어떻게 규정하든간에 기본적으로는

시성(Poesis)과 기술성(Techne)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좋은 건축이
흔치 않은 이유는 기술성이 적어서라기
보다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시성의
획득가능성이 본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기술성이란 기본적으로 과학적 지식의
축적에 바탕하기 때문이고 이때 건축의
구성요소들은 확인가능한 것이므로
그같은 요소들의 과학적인 목록화가
허용되는 반면에 시성이란 건축의
형태언어 속에서 의미로운 상징들
자체가 가시적인 상태로 도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더니즘의 기원이 불레와 르누의
휴머니즘적 재현으로 소급되는 것도
마지고 보면 과학적으로 요량될
가능성과 합리적인 목록화의 가능성을
제공한 계몽주의의 바탕에서 이루어진
건축이기 때문인 것이고 따라서 시성이
희석되어 버린 모더니즘의 형태를
일반화 하는 대명사로 기능적
순수형태가 주어지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이와같이 미리 전제되거나
가정된 순수형태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기술성에 입각한 모더니즘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모더니스트들이나
포멀리스트들에 의해 상당히 경직되게
규정될 수 밖에 없었고 그것은 추상적



▲ 코오롱우정관 전경

순수형태들 즉, 사각형·원·구체들로 이루어진 평면과 입면들의 오케스트레이션 작업과 다듬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하대 학생회관과 코오롱우정관을 보면 이 작품들을 설계한 건축가들이 기본적으로 모더니스트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여기에 수상한 작품들의 전후를 통해 전통적인 건축이해를 참조하거나 인용한 사례 또는 定態적인 모더니즘적 순수형태의 해체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자율성도 용납한 예가 없다는 사실을 통해 확실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작품에서는 전면적이고 새로운 언어의 모색이라는 미래지향적 책무에 고민하는 흔적을 발견하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두개의 작품에는 독립기념관에서 읽을 수 있었던 과중한 책무의 어려움과 씨름하여 희생되기 보다는 모더니즘의 견고한 형태적 추상성과 기술성에 시성의 회복에 소용달을 만하게 판단되는 여러가지 장식과 수식의 다양한 수사학을 덧붙여 과거라는 어정쩡함과 미래라는 불안도 동시에 극복해 보려는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그들은 우리의 고전언어를 바탕으로 한 형태구성의

의지가 자칫 인간에 기본을 두기 보다는 형태만의 조직에 주력할 수 밖에 없었음에 뒤따랐던 가혹한 희생의 케이스로서 독립기념관식의 선례를 엄격하게 견제하거나 혐오하고 있는 듯하다. 이와같이 위험에 대한 견제를 전제로 사용된 조용한 수사학적 요소들은 인하대 학생회관의 경우 타일패턴과 색상의 변화, 간주곡과 같은 실내 분위기를 유도하는 부분적인 톨라이트, 계단실이나 난간의 포스트모던적 색상, 바닥패턴의 의장요소화, 찰스무어가 크레스게 대학에서 도입한 것과 유사한 외벽구성등 대단히 다양하고 선련에 의한 공간의 분절도 아울러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오롱 우정관의 경우에는 인하대의 경우보다 더욱 모더니즘적인 규율속에서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더니즘적 순수추상형태의 하나인 박스가 평면과 입면상에서 적절히 가감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갈등을 동시에 피해보고자 하는 의도는 출입구 앞에 붉은색으로 출입의 기능을 시각적으로 지시하거나 유발하는 데에서도 나타나고 회사의 심볼마크가

분해된 듯한 붉은색의 요소들을 일렬로 배치함으로써도 보완된다. 그러나 인하대 학생회관과 코오롱우정관에서 보이는 자세를 당면하고 있는 건축언어의 구체화라는 문제와 견주어 볼 때면 모더니즘에 입각한 점진적인 속도의 적용이라는 그들의 입장은 지나치게 소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당면한 문제에 대한 모색과 논의가 활발할 수 있게 만들어준 회생에 너무 냉정한 거리를 두거나 오히려 뒷걸음으로 피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즉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건축미학의 하부구조에 이 두개의 작품들이 견고한 자세로 감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모색을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다.

5. 結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건축언어의 새로운 모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연상조합적인 형태들이 비록 관람자와 대중의 주목을 끌기에는 유용한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건축가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최초의 솜씨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일련의 색다른 문제와 해결의 방법과 철학이 제기되어야 함을 독립기념관의 경우에 비추어 확연하게 알 수 있었다. 인하대 학생회관과 코오롱우정관에서는 표현의지와 편의주의간에 이루어지는 희석과 절충작업이 건축을 예술의 장르로 구분하는 결정적 요인이되는 시성을 단지 기능의 보조적 수단이나 기능에 부가된 미학적 덧붙임으로 치환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소간의 한계점이 노출된다는 것은 현재의 다원적인 사회문화상황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기도 함과 동시에 모더니즘의 초언어에 더이상 잔류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천명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모색의 도점으로서 회귀할 일이라기 보다는 계속적인 실험작을 기대해야 마땅한 시기에 우리가 있음을 인식케 해주는 것이다.

내가 먼저 앞장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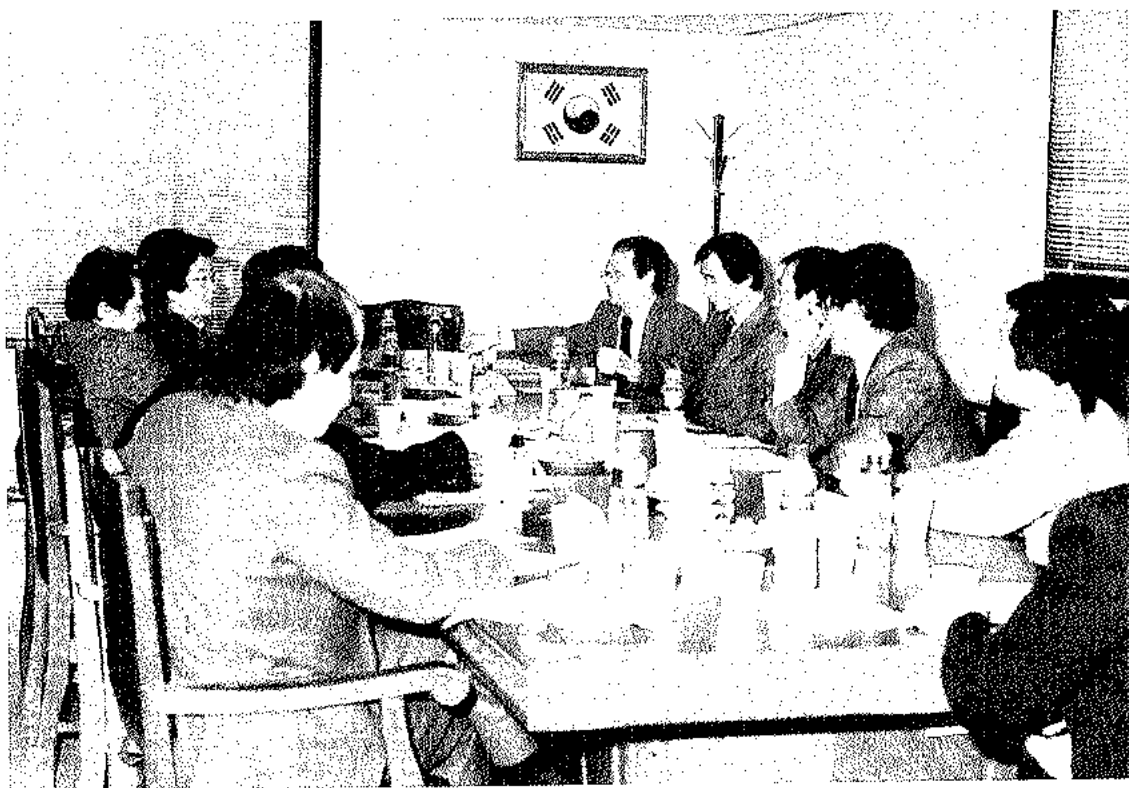
이덕시

한미문화재단 사무국장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빈약한 자원 그리고 국토에 비해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선진국을 바짝 다가서서 세계 12번째의 무역대국으로서 위치를 굳히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된 교육이 낳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의 결과를 생각해 볼때 국가발전은 경제발전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경제발전은 물적자원 못지않는 인적자원 즉 Man Power라고 부르는 인력의 개발여하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도 하나의 상식이 아닐까. 그러므로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은 한나라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무역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같은 국민교육의 결과로 “제분수”를 아는 국민이 되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50년, 60년대의 어려웠던 생활을 체험하여 어떻게 하면 근면하고,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하여 후일 풍요속에 맑고 활기찬 가정을 이끌기 위해 오늘을 헌신 희생해 가면서 살아왔다. 그결과 86년도에는 일인당 GNP가 2,296불 수출액이 347억불 자동차 보유대수도 131만대에 이르고 금년도에는 수출액이 400억불이 넘을전망 이라는 이야기 들이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나날만 연속 되었으면 한다. 금번 비때문에 피해가 있었지만 남녀노소 없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살 극복해냈다. 우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情을 많이 가진 민족이다.

지난 아시안게임때에는 참여국 모두가 우수한 문화국민의 고귀한 우정을 맛보지 않았는가? 또 올해에는 상상하기도 어렵던 올림픽이 서울에서 훌륭히 개최된다는 사실, 정말이지 하늘에서 복받은 국민임에 틀림없다. 지구촌의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첫인상부터 좋게하기위해 우선 우리주변을 깨끗히 하고 매월 1일, 15일 하고있는 시민청소의 날부터 앞장서서 집안밖을 청소하고 보기좋은 광고물도 서로서로 의논해서 바르게 달도록하고, 또한 집안에 있는 예쁜화분을 길가에 진열해놓고 예명, 생일, 기념일 붙주는 날짜를 정해놓고 돌보아야겠다. 흐트러진 비스정류장을 색단장하고 또 우리동네 밖에 있는 “오가는 인사로 가까워지는 이웃”이란 표어대로 이제부터라도 청초한 웃음으로 인사하는 습관을 길러나가야겠다. 먼저 동네분들중 민자보는 분이 인사하도록 집안가족에게 교육시켜야겠다. 옛날엔 김포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데 택시기사의 바가지요금으로 인상이 나쁠 때가 있었는데 요사이엔 기초적인 영어회화는 물론 친절한 안내를 하는것을 보고 문화국민다운 자긍심을 갖는다. 이제 서울올림픽의 남은기간동안이라도 각자자신을 돌아보아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어려운 일에는 먼저나서서 선도하는 입장에 서도록하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투영해가면서 내실 있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자, 국가도약의 분수령인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변방에서 세계인의 중심 Korea가 되도록 내가먼저 앞장서자.

건축에 있어서 협업의 실재와 전망



□ 日 時 : 1987. 11. 20 (금) 15:00시

□ 場 所 : 본협회 회의실

□ 토론회 주제

1. 협업의 실례
2. 실내디자인과 건축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사례를 중심으로)
3. 외국의 실례(건축사와 인테리어 디자이너와의 관계)
4. 건축사와 인테리어 디자이너와의 분쟁조정의 해결방안

□ 參席者

실내디자인분과위원장 : 조구현 (신세대종합건축사사무소)

편찬위원장 : 안장원 (건축사사무소 신아건축)

실내디자인분과위원 : 유규성 (범양건축사사무소)

" : 지 순 ((주) 간심종합건축사사무소)

" : 유원재 (종합건축사사무소 (주) 범건축)

" : 유영배 (세종대학교 산업미술과 교수)

본 협회 회원 : 김정식 ((주)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

" : 윤승중 ((주) 종합건축사 원도시건축)

" : 김기석 (종합건축사사무소 아람광장)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 조성렬 ((주) 큐빅디자인 연구소)



사회 : 조구현

“

첫번째로 협업의 실례, 그러니까 건축사, 아니면 건축가와 실내디자이너간에 어떤 형태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 사회(조구현) : 85년도 7월 건축사와 실내디자이너와의 협업에 관한 제 1회 좌담회에 이어서 제 2회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본협회 안기태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안기태회장 : 이렇게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히 실내디자인과의 관계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협의를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건축인과 디자이너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실내디자인과 건축사와의 월권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권, 이것은 이런 식으로 도전적으로 누가 도전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뜻으로 모신 것은 결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더 부드럽고 좋은 의견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좌우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회(조구현) : 저희가 1985년도 7월 18일 1차로, 학계에서 원정수교수님과 한국인테리어 디자인협회 조성철, 손석진 역대회장님과 본 협회 회원으로 나와주신 윤승중회원과 김정식회원, 본협 이사회에서 현재 서울지부장이신 유경철 당시이사, 그리고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김원석, 유규성 세분이 참석을 해서 건축설계에 있어서의 실내디자인분야라는 주제하에 실내디자인의 정의와 개념, 디자이너의 역할, 디자이너의 교육에 대하여, 이런 세가지 부제를 가지고 85년도에 1차 좌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회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가지의 부제를 가지고 오늘 좌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마는 이 좌담회가 어떤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결론이 여기서 나온다고 해서 크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좌담회내용중의 한가지는 협업의 실례와 건축사와 실내디자이너와의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는-아까 월권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읍니다마는 좌우간-그런 사항, 또 하나는 양자간에 분쟁이 발생했다고 할 경우 이것이 창작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쟁이라는 것을 법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어떻게 작품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세가지를 놓고 좌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축사」誌에 실리게 되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이 세가지 부제를 놓고 네가지 측면에서 좌담회를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측면은 건축사쪽의 측면, 두번째는 실내디자이너쪽에서 본 측면 세번째는 외국의 실례, 네번째는 학계에서 본 바에 의한 의견은 어떠한가하는 이 네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첫번째로 협업의 실례, 그러니까 건축사, 아니면 건축가와 실내디자이너간에 어떤 형태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조성철 : 협업의 경우를 보면 대체로 두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일반적인 실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상적인 실태입니다. 일반적인 실태를 대표로 하는 것은 건축이 선행되고 있는 경우의 것으로서

신건축물의 내부 또는 기존건축의 내부를 별도계획에 의해 하는 실내 디자인입니다.

이상적인 실태로는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부터 건축가와 협력설계를 하는 경우로서 프로그래밍과 기본계획에서 부터 본설계, 샵 드로잉에 이르기까지 상호협력, 보완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독립기념관의 설계는 이상적인 협업의 대표적인 예 입니다. 기본계획을 여러 분야를 통해서 약 2 년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건축가와 연계되어 각부분을 수시로 협력을 해서 해온 케이스로서 이상적인 경우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조구현) : 실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중에 어느 케이스가 많습니까 ?

● 조성렬 : 대부분이 일반적인 실태에 속하는 것이 많습니다.

● 사회(조구현) : 다음에 건축사측면에서 실제로 설계를 수행하시면서 어떻게 일을 했는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윤승중 : 두가지 입장에서 볼 수 있는데 한가지는 건축가가 실내디자이너에게, 말하자면 어떤 전문성을 인정해서 처음부터 실내디자인 분야를 선택해서 협력해나가는 경우와 두번째로 상당한 부분이 진행된 후에 사용자의 제안이라든지 이런 필요에 의해서 실내디자이너가 개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경우는 실제로 두가지케이스를 다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비교적 잘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조구현) : 실제적인 문제로 최근에 와서 준공된지 1 년도 안되는데 임대자가 들어와서 자기나름대로 실내디자이너를 선정을 해서 리노베이션을 해나가는데 적게는 간판을 첨가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건축하는 입장에서 보면 첨가물이 부착되지 않아야 할 부분에 첨가된다든가 해서 건물 이미지가 손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한지 불과 얼마 안된 상태에서 리노베이션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
전체적인 의미에서 볼다마는 그래서 리노베이션의 경우가 신축보다는 심각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기석회원께서는 리노베이션에 대해서 글을 쓰신 적도 있지요 ?

● 김기석 : 제가 손땀던 리노베이션은 건축가의 설계에 의하여 지어지지 않은 건축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충돌은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협업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건축의 영업공간에 대해서는 인테리어가 어차피 디자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밖에 제가 관심있는 것은 주거공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와서는 협조의 필요성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끝까지 제가 한번 다루어보려고 커텐도 고르려 다니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야의 전문성이 증가되고 발달해가니까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신 건축가도 있겠지만 제

“

제가 관심있는 것은 주거공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와서는 협조의 필요성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끝까지 제가 한번 다루어보려고 커텐도 고르려 다니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야의 전문성이 전문성이 증가되고 발달해 가니까 말입니다.

”

김기석





안기태 본협회장

“

자꾸 소득이 올라가고, 전문성을 요구하고 10년, 20년전에는 큰 건물 설계를 해도 실내디자인을 요구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

경우는 가끔 아마추어수준 밖에 안된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더 전문적인 협력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코디네이션을 합니다.

문제점은 가구에서 커튼까지의 인테리어나 데크레이션의 작업에 대한 보수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외형이 너무 작거든요. 대개는 턴키베이스로 일을 주는데 수준높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성실한 협조를 못 받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가가 여러가지 일을 하다보면 끝까지 신경 못쓰는 경우도 많아서 결국 건물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물려서게 되는데 그러고 보면 그 다음의 과정은 건축주한테 방치되어서 나중에 가보면 엉뚱하게 어질러져 있는 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협조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최근에는 전문적인 디스플레이어를 만나가지고 실험적으로 잔여 임무를 위임해 보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모르겠어요.

● 사회(조구현) : 저희가 좌담회를 하는 목적중의 하나가 인테리어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킨다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개선방향쪽으로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기태(본협회장) : 옛날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는데 어떤 분 말씀이 환쟁이, 건축쟁이 어려셨는데 이것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소득이 3,000불로 올라가는데 앞으로는 집한채만 따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건축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전문성이 요구될 때는 도저히 못따라가거든요. 자꾸 소득이 올라가고, 전문성을 요구하고 10년, 20년전에는 큰 건물 설계를 해도 실내디자인을 요구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노베이션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대충 지어놓고 보니까 건축주측에서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전문가한테 맡기겠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건축주가 맡긴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구, 무슨 비싼 돈들여서 맡기겠느냐, 자기네가 필요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엄연히 건축에서 자기 일 따로 있고 인테리어에서 자기 일 따로 있다고 봤을 때 역시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느냐, 필요성을 요구하지 않느냐 이래서 선이 그어지고 업무의 한계가 그어지지 않겠느냐, 국민소득이 앞으로 반불 되어가면 이렇게 대충 짐작해 보는데 선은 점점 더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겠느냐?

한가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무나 실내디자인입니다. 간판도 그렇고…… 개념을 세워주셔야 되고 적어도 학문적으로 그래야 되겠고 오늘 좌담회하신데에 대해서는 하도 여러가지 법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굳이 법을 논한다고 하기보다는 어떤 중서적으로 볼 때 엄연히 그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제 자체가 딱딱하고 싫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꼭 이것이 이 시점에서 이것을 논해야 되겠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생각인데 앞을 내다보는 2000년대의 빌로 고치지요.

● 사회(조구현) : 지 순소장님께서 말씀하시지요.

● 지 순 : 저희들이 협업을 했는데 아까 안화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같이 협업하신 분이 우리가 추천했던 분이였으나 건축주가 바뀌면서 나중에 건축주가 선택한 분하고 협업한 경우의 복잡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참 여러가지 있었읍니다라는 그래도 다행히 두분다 좋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무난히 넘어간 사례입니다마는 저는 실내장식이라는 일의 한계는 두고 일하더라도 항상 대화는 자주 해서 공간개념은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흐름, 전체적인 개념속에서 어떤 실내를 꾸며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내장식가가 그냥 건축주와 단독으로 모든 것을 협의하면은 결국 양복입고 갓쓴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건축주는 자기 돈 들여서 집짓는데 자기 기호에 맞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물론 요즘에는 세계일주도 많이 하고 해서 안목도 넓어졌지만 우리가 전문적인 차원에 입각해서 볼 때는 그렇게 전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만 보고 고집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축주와 건축가와 실내장식가는 항상 삼각관계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간혹 제가 보면은 장식하는 분들이 공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건축주와 직접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서 보면은 저희하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실내장식가가 건축주에게 어떠한 요구를 받았더라도 일단은 건축가와 협의한 다음에 모든 것을 진행했으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장식에 대해 어떤 법적 규제를 갖고 우리가 거기에 저작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의 손에 일단 건물이 넘어가면 싫으면 뜯어고치는 것이야 법으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이지요.

실내장식하는 분과 건축가들은 그 건물에 대한 공간개념의 일체라는 것은 항상 생각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서로 그 개념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김기석소장님이 주택에서의 전문화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자여서 그런지 주택을 실내장식가한테 따로 맡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림의 생활문화라든가 기능, 경제수준등 모든 것을 처음에 다 체크를 해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지게된 과정이 주택에서는 거의 완성된 결과로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주택이라는 것은 자기 생활 속의 전부이고 애착을 가졌기 때문에 아예 실내장식가한테 다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한계는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커다란 빌딩의 경우는 로비라든가 건축의 흐름이 같아야 하는 데는 실내장식가만이 다루어질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내장식가가 단독으로 뛰어서 그것만 건축주와 협의해서 디자인한다는 개념은 조금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건물의 일부라고, 건축디자인의 일부로서 디자인개념이 같아야 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특수목적의 홀이나 실이 들어간단다가 이런 것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정식으로 처음부터 건축가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디자인을 의뢰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건축가는 유리창하고 현판 찍데가만 하고 그 현판

“

실내장식가가 건축주에게 어떠한 요구를 받았더라도 일단은 건축가와 협의한 다음에 모든 것을 진행했으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장식에 대해 어떤 법적 규제를 갖고 우리가 거기에 저작권을 저작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
실내장식하는 분과 건축가들은 그 건물에 대한 공간개념의 일체라는 것은 항상 생각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서로 그 개념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

지 순





안장원

“

파트너를 선택해서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건축주에 의해서 선택되어 가지고 서로 알게 되는데, 전문성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도 현재 우리 건축계를 보면 건축행위가 외곽건축, 인테리어, 설비, 심지어 감리까지 전부 독립해가는 경향이 보입니다.

”

바닥에서부터 인테리어 디자인이 건축주의 기호에 맞추어서 처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 (조구현) : 제 경우에는 최근에 조그만 호텔을 한두개 설계했습니다. 요즘 호텔은 상당히 특수한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김기석씨가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실내디자인하는 사람한테 맡겨야됩니다” 하고 설득하는데 잘 안됩니다. 저희가 설득력이 없어서 그런지 도저히 설득이 안됩니다. 저희가 하자니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래서 얼마 안되는 설계비에서 잘라서 외주를 준 일이 있습니다. 주방의 경우가 심합니다. 주방기구같은 것은 도저히 자체 처리가 힘듭니다.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저희보고 다하라고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건축 같은 것을 많이 하신 안장원이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 안장원 : 학교건축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합시다. 제 생각에는 아까도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떠한 프로젝트는 건축가가 시작을 한 작업은 건축가 자신과 호흡이 맞는 파트너를 선택해서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건축주에 의해서 선택되어 가지고 서로 알게 되는데, 전문성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도 현재 우리 건축계를 보면 건축행위가 외곽건축, 인테리어, 설비, 심지어 감리까지 전부 독립해가는 경향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하려고 했는데 빗나가서 상당히 건축가가 의도하는 것과는 달라진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바람직스럽게 되려면 흘러들어 오게하는 문화보다 자생하는 과정에서 건축가는 분명히 자기 생각과 호흡이 맞는 파트너들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전통한식집을 짓겠다 했는데 잘못된 시스템에선 실제로 나중에 보면 안과 밖이 전혀다른 내부는, 서구식 외부는 동양식 기와집이 되고마는 수가 있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 김정식 : 지금 협회가 생겼으니까 중재할 생각은 없는지 알아보았습니까? 어떤 법적인 제한보다는 도외적으로 협회라는 것이 있으니까 협회가 중간에 들어가서 조정해 줄 용의도 있지 않습니까?

● 지 순 : 그것이 참 불가능하더군요. 상당히 지난 얘기이니까 그런 것이 없는지, 그럴 때 어떻게 건축사는 움직였으면 좋겠는지…….

● 조성렬 : 지순씨도 코시드 멤버인데 그런 경우는 협회가 다루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협회는 어떤 일정 수준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고보기 때문입니다. 회원 개개인의 활동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문제, 인간성의 문제, 도덕성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회원들의 도덕적인 문제까지 협회가 규제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 순 :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건축실체는 건축주와 건축사하고 설계 전체를 계약했고 그 속에서 건축사하고 실내장식가는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건축주측에서 인정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군요. 실내장식가를 바꿔달라고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디자이너를 바꾸는데 있어서 기호에 따라서 바꾸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사회(조구현) : 조성렬씨께서 토탈디자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실제로 그 당시에는 미적 개념이라는 측면에서의 토탈디자인인데
바하여, 요즘에는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세분화 되고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가 단독으로 진부를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실내디자인에 관한 사항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예로 호텔 설계시 외국의 어디어디에 훌륭한 사우나가 있다고 해서 무려 8개국 인가를 보고 오니까 설계비가 다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상호의견 교환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오늘의 이 좌담회가 이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 김정식 : 제가 경험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양식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두가지로 봅니다. 한가지는 상당히 인테리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일단 계약하고 일을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시간문제입니다.

언제부터 일을 하느냐, 처음에 말씀드렸더니 인테리어 해야지 하고 그 다음에는 처음부터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같이 해야지 되는데 그것 썩 하면 되지 않느냐,우리가 보기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서 잘 된 적이 있었고, 한번은 호텔이었는데 처음부터 물론 건축주하고 잘 알았습니까라는 얘기를 하니깐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얘기를 자주 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면 아까 말씀대로 인테리어를 주면 초기단계에서 공사가 결정되기 힘들니다.

그래서 인테리어하는 분과 협의를 기본계획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체는 공사를 할 당시에 하는데 그런 가운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기본계획만 계약하고 실시설계는 공사에 따라서 전체를 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할 수도 있다 그런식으로 해가니까 큰 어려움없이 오히려 인테리어하는 분도 우리 얘기를 존중하고 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하는 분도 아까 어느정도 수준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설계는 물론 요새 다 이는데 어떤 기본을 만들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자주 만드는 것이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유원재 : 건축사나 인테리어디자이너나 다 같은 클라이언트를 위해 설계용역을 하는 사람으로, 건축주의 목적을 맞추는 일관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작업 분화가 되기 전에는 지금 건축가가 생기고 건축가 안에서도 여러가지 분야로 분업화되면서 건축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질 높은 분화로 해서 어떻게 보면 건축주의 의도가 불분명한 건물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질 높은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건축사는 법적인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작업의 경직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사들은 디자인의 새로운 시도와 정보등을 인테리어디자이너에게서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

기본계획만 계약하고 실시설계는 공사에 따라서 전체를 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할 수도 있다. 그런식으로 해가니까 큰 어려움없이 오히려 인테리어하는 분도 우리 얘기를 존중하고 잘된 적이 있었습니다.

”

김정식





유원재

“

어느정도 공중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인테리어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책임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규모이상의 경우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외국의 새로운 작품들을 바로 응용하는 실험정신이 많이 있는데 건축에서는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산품이 그만큼 개발이 되어야 지을 수가 있어 인테리어의
유연한 작업태도와, 건축사의 책임의식에 다른 여러가지 분야를 맞추어야
하는 종합작업의 태도는 견해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협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많은 서로의 디자인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건축사는 건축주를 대할 때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는
소리만 하는데 인테리어디자이너는 비즈니스 성향으로 클라이언트한테
순응한다고 할까 그래서 건축사가 나중에 그 프로젝트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잘나쁜 예를 들면, 어떤 건물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원인이
인테리어디자인에 원인이 있더라도 책임은 건축사한테만 돌아가는 사례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봐서 외국의 실례처럼 인테리어 설계, 시공도 건축사의
통제를 받는 제도가 우리한테 바로 실현되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회적인
책임문제입니다. 물론 인테리어 분야를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에서 일어나기에 외부에선 안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정도 공중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인테리어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책임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인테리어디자이너도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인테리어의 아주 자유스러운 디자인 활동이
좀더 사회적인 수준이 높아짐으로서 그것은 이미 집포의 주인들이 할
것이고, 인테리어디자이너나 건축사는 좀더 전문성을 통한 분석으로 각자
영역을 충분히 확보해주었으면 하는 평소의 생각입니다.

● 사회(조구현) : 유규성 회원께서는 평소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지요

● 유규성 :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공감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과 같은 의견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좌담회를 개최한
목적도 초청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자고 한 것이니까 그쪽으로
넘겼으면 합니다.

● 사회(조구현) : 그러면 유영배교수께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
협업에 관한 것을 어떻게 교육과정에 반영되었었는가 하는 것과 실제
미국에서 백화점같은 것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유영배 : 우선 나름대로 인테리어디자이너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나서 두가지에 대한 점을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의
발생으로 볼때 건축은 큰 형님이며 인테리어는 동생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보살피 주는 상태로 될때 협업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공간을 다루는 디자이너로서
건축가와 인테리어디자이너가 같이 발전을 위한 협업을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공동으로 논의 되어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야만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인내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협업을 해치는 여러문제 중에서도 무엇보다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이 종속개념으로 이해가 되었을 때, 각기 역할에 대한 것을 서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인 추이로 보아 프로젝트 내용이 복잡해지며 다양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축가들은 인테리어디자이너들을 하나의 전문적인 프로페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위치에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같은데만 보더라도 건축회사의 팔 구십%가 레노베이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려면 인테리어의 협조없이 작업처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건축회사들은 자체 조직에 인테리어디자이너들을 파트너로 하여 자연스러운 협업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성격상 이런 자연스러운 협업이 이루어지고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컨설턴트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건축가가 인테리어디자이너를 고용 하기도 하지만 인테리어디자이너가 건축사를 활용합니다. 특히 건축사들의 역할이 없는 인테리어디자이너가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도면을 시청에 접수시키지 못해 공사를 하도록 허가를 못지 못합니다. 누가 누구를 억지로 구속한다기 보다는 작업상 자연스럽게 일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되어있어 이런 자연스러운 협업이 일어나게 되나 봅니다. 건축가로서 작업영역이 뭐고 인테리어디자이너로서 작업영역이 뭐냐 하는 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인테리어스페이스의 구조시스템만 다루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테리어디자이너가 작업을 할때 커다란 무리없이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상태에서 서로 이해가 된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해소 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려 건축가의 역할은 인테리어 작업을 할때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자가 들어오든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들어오든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코디네이션을 해줄 사람은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만 충실하게 된다면 인테리어디자이너들을 이해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국내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파트너쉽을 가지려면 여리가져 문제 해결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아직 자격면에서 충분한 교육이라든가 경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에 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건축부분의 문제로 큰데 특히 건축이 대학의 공과대학에 속해있어 많은 문제가 있기에 건축가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공과대학에서 탈피 건축대학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내디자인과가 같이 설치되어서 같이 공부하게 되면 협업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 개인생각은 앞으로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건축가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 충실한 대화와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실제적인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을 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질문하신 두가지 얘기중 첫번째 교과 과정에 대한 것인데 재가 다녔던 학교를 위주로 해서 교육과정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수진의 선정에서부터 말씀드리면 3분자2 이상이 건축가들입니다. 교육과정에 구조학, 세미나, 디자인 경영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건축가의 역할은 인테리어 작업을 할 때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자가 들어오든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들어오든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코디네이션을 해 줄 사람은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만 충실하게 된다면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을 이해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유영배



“

건축회사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반대로 인테리어 디자이너 회사도 건축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같이 도면을 그릴때 건축과 출신과 인테리어 출신이 같이 작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항상 팀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함께 협의하고 처리하고 합니다. 색채라든가 재료, 가구문제 등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밀도있게 협의를 하고 구조, 법조항 등에 대해서는 건축가의 의견을 듣기에 우리가 없이 실제적인 작업에 있어서 부드럽게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

자연히 인테리어디자이너로서의 작업 한계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 교육과정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으니까 즉, 협업의 바탕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지 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개념으로서 공간개념이 이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디자이너라면 건축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통언어의 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언어의 사용을 위한 제반 사항이 학습과정에서 다루어 집니다.

실질적으로 건축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학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개념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서 학생이 사회활동을 시작하면 적응의 문제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건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건축과의 교과과정이 상호 교환되고 있습니다. 색채학이라든가 재료학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서로 교환해서 같이 교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대략 그렇고 두번째 실질적인 작업에 있어서 어떻게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건축회사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반대로 인테리어디자이너 회사도 건축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같이 도면을 그릴 때 건축과 출신과 인테리어 출신이 같이 작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항상 팀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함께 협의하고 처리하고 합니다. 색채라든가 재료 가구문제 등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밀도있게 협의를 하고 구조, 법조항 등에 대해서는 건축가의 의견을 듣기에 우리가 없이 실제적인 작업에 있어서 부드럽게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례를 들어서 일일이 말씀 못드리지만 협조가 잘되고 있는 배경이 실제로 발생하는 프로젝트가 인테리어에 관한 사항이 많아서 건축가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과 또 적극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 하는 사람들도 현재 일을 처리하고 있지만 일의 종류가 복잡해져서 다른 컨설턴트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엇보다도 긴밀한 서로의 어떤 협조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사회 (조구현) : 지금 말씀하신 또 다른 컨설턴트라는 것은 뭘까 ?

● 유명배 : 그러니까 음향컨설턴트라든가 조명컨설턴트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에 들어왔을 때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코디네이트가 됩니다.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역할이 분담이 되고 있습니다.

● 안장원 : 미국에 대한 것이지요 ? 최종적으로 건축가가 책임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

● 유명배 :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도면에 도장찍는 것이 건축가이니까 그 사람들이 최종적인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인식만 가지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원재 :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지요 ?

● 유영배 : 그렇지요. 예를 들어 파티션을 옮기게 될 때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시공 도면을 그리지만 건축가가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시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 지 순 : 그 대신에 인테리어디자인의 설계비가 굉장히 높은데 비해 우리 나라에서는 설계비의 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그것이 커다란 문제입니다.

● 사회 (조구현) : 그러면 첫번째 토론 사항은 이 정도에서 끝냅니다. 두번째 토론 사항은 지금까지 말씀과 중복되어서 시간이 많이 안걸릴 것으로 봅니다. 월권이라는 말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해서 말을 바꾸었습니다.

동일 프로젝트에 있어서 건축사와 실내디자이너 상호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창작활동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건물의 엑스테리어는 건축가가 다루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인테리어디자이너들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외관과 내부가 전혀 상반된 디자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떤 외미에서는 상호가 서로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유영배교수께서 미국의 실례를 들어주셨습니까라는 그런 경우라면 문제가 안되겠지요. 그러나 한국은 실제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윤승중 : 오피스내부라든가 이런 것은 예외라고 봅니까 ?

● 사회 (조구현) : 제 개인의견입니다마는 하나씩 불럭이 떨어져나가는 것은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 윤승중 : 아까 제가 건물내부에서 미리 기능이 예정되어있는, 즉 퍼브릭 스페이스는 건축가가 디자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디자인해야 한다는 뜻보다도 디자인할 책임이 주어졌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다른 전문가들, 즉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초빙해서 협력하는 것은 더 이상적이겠지요.

● 사회 (조구현) : 커머셜빌딩에서의 한 예입니다마는 저희가 끝내고 나왔는데 인테리어디자이너가 와서 전면 커튼월을 내부에서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 내부 뒷면의 가설재들이 전부 보이는 것입니다. 그별 경우 저희 건축가들이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 윤승중 : 건축주가 차라리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높고 또 건축가와 인테리어 디자이너간의 도의적인 문제까지 이해를 하면 별문제인데 그렇지만 한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인테리어디자이너를 건축가하고 상의해서 선택하든지 또는 건축가에 의해서 정해지면 우선 1차적으로 협력 문제는 해결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는 서로 전문성을 인정해서 건축가도 자기가 선택했지만 인테리어 디자이너한테 상당히 재량권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만

“

건축주가 차라리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높고 또 건축가와 인테리어 디자이너간의 도의적인 문제까지 이해를 하면 별문제인데, 그렇지만 한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건축가 하고 상의해서 선택하든지 또는 건축가에 의해서 정해지면 1차적으로 협력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윤승중

“

레코레이터는 표면적인 것을 다루고 주어진 내용물을 대상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인테리어 데코레이션에서 인테리어디자인까지 발전에 대해서는 건축가들이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코레이션의 범주를 벗어나게 된 시작은 공공건물 상공간등이 생기면서인데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건축가의 도움없이 그것들을 적절히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

하고 어떤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서로 상당히 존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대편에서 인테리어디자이너가 어떤 과정에서 선정됐든간에 퍼블릭스페이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오피스라도 밖에서 어떻게 조명기구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외부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일단은 인테리어디자이너쪽에서도 건축가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존중해주는 자세가 중요한데 아까 조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모두가 수준이상이 되면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어떤 법적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문화수준이 올라갔을 때 그럴 필요가 생겼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 사회(조구현) : 실제적으로 건축물이 상당수준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은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인테리어디자이너에게서 덕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요. 수준이 향상되는 쪽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 지 순 : 그것은 외국에서도 건축과를 나와서 실내장식을 전문으로 일하는 분들은 대개 인테리어 아키텍트로 본인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 유영배 : 데코레이터는 표면적인 것을 다루고 주어진 내용물을 대상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인테리어데코레이션에서 인테리어디자인까지 발전에 대해서는 건축가들이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코레이션의 범주를 벗어나게 된 시작은 공공건물상공간등이 생기면서 인테리어디자이너들은 건축가의 도움 없이는 그것들을 적절히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배운 것이지요. 지금은 인테리어 분야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상당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틈도 인테리어디자인으로 부르고 디자이너는 실내디자이너, 실내건축가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 유규성 : 리더는 누가 됩니까?

● 유영배 : 전체 프로젝트, 특히 신규 프로젝트에서는 아키텍트가 됩니다.

● 지 순 : 제가 아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키텍트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설계를 같이 하는데 이번에 주가 되는 디자인기본은 이렇게 간다 하는 디자인방향이 결정되면 심지어 카페트디자인을 별도로 해서 주문해올때도 그사람에게도 어떠한 패턴이 이 건물에서는 주라는 것이 내려간답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싸인 안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디자인을 해봐도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 안장원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왜 그것을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이군요.

● 윤승중 : 외국에서 레노베이션의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

건축작품의 경우에 저작권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문학이나 예술작품에 대한 저작권이라면 5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 그런데 건축에서 저작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말하자면 레노베이션같은 경우에 가령 건축가에 의해서 지어진후 30년쯤 지난 다음에 그때까지도 건축가에서 도의적인 것 이외에 과연 어떤 법적인 권리가 있겠습니까 ?

● 유명배 : 법적인 권한은 없는데 사회적인 규제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커미티가 있어요. 커미티의 허락을 받은 것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보존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가, 환경디자이너가 포함되어 거기서 심사되고 결정 하게되는 것 같습니다.

● 지 순 : 미국에 AISD라고 하는 면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뽕끼장이까지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해서 문제라고 하는데 라이선스가 있습니까 ?

● 유명배 : 거기에도 없습니다. ASID가 있는데 자발적인 회원들 모임으로 신입회원에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틀동안 여기서 건축사들 시험을 보는 식으로 봅니다. 점수제가 있어서 학교와 사회경력을 갖추면 시험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라이선스는 아닙니다. 우리 코시드(한국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원증을 주게 됩니다. 크라이언트가 디자이너를 하나쓰게 될 때는 각종 잡지에 작품이 소개되니까 그것을 보고 선정해서 하고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시 협회에 추천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서로의 규제는 있지만 법적인 규제는 아직 없습니다.

● 지 순 : 상당히 힘이 강하다고 그러려군요.

● 유명배 : 협회 조직이 현업을 하는 사람들과 유기적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에 들어야 됩니다. 냉함 짝을 때도 뭐에다 쪽 ○○○ ASID 이렇게 넣어서 사람들에게 마케팅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받습니다.

● 유규성 : 코시드(한국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에서 이와같은 문제들 이야기된 적이 있을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고 했다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 조성렬 : 오늘 나온 문제는 한국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 안에서는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공식기구를 가지고 얘기한 적도 없고 또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도 거론된 일이 없습니다. 인테리어디자이너 개인 개인에 따라 업무의 질, 인간됨의 차가 있는 것이지만 디자인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 이라면 단열문제, 또 내화문제 정도는 능히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규제받고 있을뿐 아니라 아무거나 써가지고는 준공이 안나옵니다. 또 건축의 내용과 건축설계의 기본을 이해하고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건축작품의 경우에 저작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문학이나 예술작품에 대한 저작권이라면 5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

”



조성렬

“

건축가들이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자기 작품을 정말 아낀다고 하면 사인 시스템까지도 디자인 항목에 넣어야 됩니다. 수주하기에 바빠서 타분야까지 거론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한번은 페이퍼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

● 사회 (조구현) : 오늘의 좌담회 내용과는 그제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경관이라든가 간판이 임대자의 손에 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상승시켜 주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악화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건축가나 인테리어디자이너의 어느분야에서도 거의 빠져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도 크고 좋은 건축작품에 구멍가게같은 간판집에서 디자인 해놓은 것으로 보이는, 전혀 문외한 인 것같은 사람이 아크릴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 회식집의 경우 생선회를 접시에도 담은 유치한 그림을 아크릴로 만들어서 붙여놓아 그집을 디자인한 건축가가 봤을 때 자기가 설계한 건물이 그런 경우를 당하면 불쾌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각지대가 인젠가는 다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조성렬 : 좋은 말씀 하셨는데, 건축가들이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자기 작품을 정말 아낀다고 하면 사인시스템까지도 디자인 항목에 넣어야 됩니다. 수주하기에 바빠서 타분야까지 거론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한번은 페이퍼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풍림빌딩은 상당히 큰건물인데 건물에 간판을 딱딱따닥 붙여서 건축을 버려놓고 있습니다. 그것과 대조되는 예로 동일방직 본사 사옥은 건축주에게 제안을 하여 시인 시스템 디자인을 전문화 작업으로 하여 건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건축가들이 관련 디자인에 대해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조구현) : 저희가 건물을 설계하고 준공을 하고 나면 준공서를 손에 잡기가 무섭게 제일 먼저 해야될 것이 있습니다. 사진부터 먼저 찍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간판이 붙은 다음에는 오리지날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정식 : 대구 가니까 건축심의를 하는데 거기는 건축사가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간판을 더 보거든요.

● 사회 (조구현) : 불제변의 토론은 이정도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건축사와 실내디자이너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해결과 분쟁해결 기구 문제에 관하여 토론하고 싶습니다. 분쟁이라는 말이 유감스럽다고 안희장님도 언급 했습니다마는 내용은 이런 것이겠지요. 실내디자이너가 건축디자인과 상반되게 이루어질 때 어떻게 협조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겠지요. “건축사와 인테리어디자이너 상호간의 디자인 조정방안”이라고하면 되겠네요. 실제로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안되지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그런 씨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좁전에도 분명한 실례가 나왔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호간의 대화가 된다면 어느정도는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대화가 안되고 있는 상태이지요.

● 조성렬 : 누가 힘이 세냐 힘센 사람이.....

● 안장원 : 미국사회는 어떻습니까 ?

● **유영배** : 일이 완성되기 전에 문제가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왜 그렇게 되느냐면 인테리어디자이너와 건축가의 작업영역이 분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지만 여기서는 나사이너가 공사를 직접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 디자이너와 건축가로 얘기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조성렬** : 조금전에도 계속 나온 얘기인데 인테리어디자이너가 시공을 같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설계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설계 따로 공사 따로 분리해서 하지않는 경향이며 턴키베이스로 요구하는 건축주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15년 20년 인테리어디자인을 한 분들은 그런경우에도 반드시 설계과정을 거쳐서 설계에 합의를 보고 공사를 시킵니다. 실제로 공사비가 수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치밀한 설계도서 없이 공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인테리어디자이너들은 설계와 공사를 분리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내역서에 설계비 항목을 따로하여 기본설계, 본설계 등등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장원** : 지금 일반적으로 잘못된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 **지 순** : 그동안에 실적이 많으신 분들은 잘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은 건축주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주가 인테리어디자이너의 디자인을 갖다가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않고 자가 기호에 맞추라는 강요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유규성** : 이런 기구를 만들수는 없습니까? 코시드(한국인테리어 디자이너협회)분쟁이 야기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자기 소속 건축사는와 건축사가 이런 건축사협회라든지 또 저쪽은 저쪽대로 협의기구를 두어가지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쟁점의 해결 내지는 유대를 갖는 것이 어떨까요?

● **조성렬** : 조정기구를 상설로 두자는 것이지요?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것을 만들어 건축이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 **윤승중** :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내디자인에 관한 문제라면 현실적으로 건축주쪽에서 선택을 했을 때 그런 기구가 있어서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건축주를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건축가와 잘 협의해서 하도록 권고해 보는 수 밖에 없겠지요.

● **안장원** : 분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 **조성렬** : 당사자들이 조정하면 끝나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을 때 어떤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한것 같은데 맞습니까?

● **유규성** : 맞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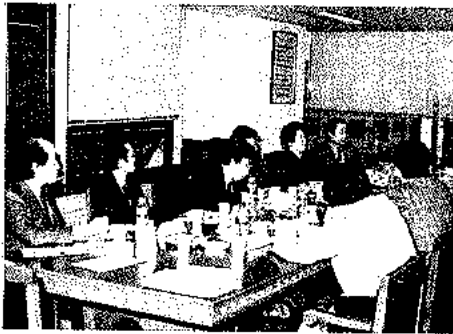
“

코시드(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협회) 분쟁이 야기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자기 소속 건축사와는 건축사가 이런 건축사협회라든지 또 저쪽은 저쪽대로 협의기구를 두어 가지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쟁점의 해결 내지는 유대를 갖는 것이 어떨까요?

”



유규성



● 지 순 : 그것이 기구에서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건축주는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겠다고 하는데…….

● 윤승중 :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가지 업무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가 되는 것인데 당사자가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만들어 놓아야지 제3자가 조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가와 인테리어디자이너와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인테리어디자이너 쪽에서 사실은 건축가 한테 더 존중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이것이 분쟁이 생기면 어떤 구속력을 가진 조정제도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요.

● 안장원 : 콘트를 못하겠지만 한국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쪽에서 콘트를 할 수 있습니까?

● 조성렬 : KOSID(한국인테리어 디자인 협회)에는 아직 기구가 없어서 협회로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정식 : 지금 회원중에 건축과를 전공한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 조성렬 : 약 60% 정도 될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지난달 인테리어디자이너 잡지에 코시드 저회 회원분석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 유원재 : 조희장님 인테리어디자이너로서 건물설계에 대해 안타까움도 있을 텐데 “건축사”지에 게재되는 좌담회에 참석 하셨으니까 건축사들의 책임으로 인한 경직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조성렬 : 우리의 건축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며 프로젝트 소화능력도 향상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설계 과정도 호의적이고 상호보완관계에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로비 라운지 같은 부분에 마감을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을 같이 협의해서 하며, 인테리어에서 바닥 부분의 문양이라든지 천정의 구성이라든지 또는 벽의 디자인 같은 것을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위촉하는 경향입니다. 지금 양자가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으니 별로 코멘트 할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 사회(조구현) : 유능한 분들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문제가 되지요.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88정부勞賃단가기준 確定

— 最低임금제 감안 平均12%인상 —

(공사부문)

(단위: 원)

직종 번호	직	종	명	단 가
1	갱	목	부	9,850
2	도	목	수	14,580
3	건	축	목	12,690
4	형	틀	목	13,060
5	창	호	목	13,020
6	철	골	공	13,040
7	철		공	12,430
8	철	근	공	12,840
9	철	관	공	11,930
10	철	터	공	12,650
11	철	시	공	12,470
12	철	단	공	10,800
13	철	석	공	13,720
14	특수비계공 (15m 이상)			14,420
15	비	계	공	12,880
16	농	발	공 (터 널)	11,800
17	조	적	공	12,250
18	벽	돌 (블럭)	제작공	11,480
19	연	돌	공	10,910
20	미	장	공	12,830
21	방	수	공	12,090
22	타	일	공	12,720
23	출	눈	공	11,270
24	연	마	공	11,420
25	콘	크	리 트 공	11,810
26	바	이 브	레 타 공	10,850
27	보	일	러 공	13,520
28	매	관	공	10,960
29	온	돌	공	10,910
30	위	생	공	10,300
31	보	온	공	10,820
32	도	장	공	12,570
33	내	장	공	12,390
34	도	배	공	11,920
35	아	스	타 일 공	12,750
36	기	와	공	13,070
37	슬	레	이 트 공	10,590
38	화	약	취 급 공	13,300
39	작	압	공	12,030
40	보	안	공	8,350
41	포	장	공	12,120
42	포	설	공	11,290
43	케	도	공	8,950
44	용	접	공 (철 도)	13,370
45	잠	수	부 (4인 조)	58,390
46	잠	합	공	16,000
47	보	링	공 (자질조사)	11,100
48	우	물	공	10,510
49	영	람	기 사	13,990
50	조	원	공	10,760

직종 번호	직	종	명	단 가
51	빌	목	부	9,960
52	조	림	인 부	10,540
53	플	랜 트 기	계 설 치 공	14,550
54	플	랜 트	용 섭 공	13,340
55	플	랜 트	배 관 공	13,170
56	플	랜 트	제 관 공	12,430
57	시	공	측 량 사	13,200
58	시	공	측 량 사 조	8,830
59	측		부	6,850
60	검	조	부	6,040
61	송	전	전 공	21,720
62	배	전	전 공	17,880
63	플	랜 트	전 공	15,760
64	내	선	전 공	13,900
65	특	고 압	케 이 블 전 공	20,440
66	고	압	케 이 블 전 공	16,860
67	저	압	케 이 블 전 공	14,410
68	철	도	신 호 공	12,900
69	계	장	공	12,220
70	전	기	공 사 기 사 1 급	17,340
71	전	기	공 사 기 사 2 급	13,960
72	통	신	외 선 공	13,970
73	통	신	설 비 공	14,660
74	통	신	내 선 공	14,350
75	통	신	케 이 블 공	15,910
76	무	선	안 테 나 공	16,820
77	통	신	기 사 1 급	19,280
78	통	신	기 사 2 급	14,980
79	통	신	기 능 사	14,360
80	수	작	업 반 장	13,700
81	작	업	반 장	11,660
82	목		도	11,730
83	조	력	공	8,520
84	특	별	인 부	10,200
85	보	통	인 부 (남)	7,270
86	보	통	인 부 (여)	7,270
87	중	기	운 전 기 사	13,100
88	운	전	사 (운 반 차)	11,330
89	운	전	사 (기 계)	11,270
90	중	기	운 전 조 수	7,430
91	고	급	선 원	15,530
92	보	통	선 원	11,810
93	선		부	9,230
94	준	설	선 선 장	17,120
95	준	설	선 기 관 장	15,560
96	준	설	선 기 관 사	12,310
97	준	설	선 운 전 사	12,320
98	준	설	선 전 기 사	12,200
99	가	계	설 치 공	12,120
100	기	계	공	10,070

직종 번호	직	종	명	단 가
101	신	반	공	12,250
102	정	비	공	10,390
103	벨트콘베어	작업공 (남)		9,120
104	벨트콘베어	작업공 (여)		9,120
105	현	도	사	14,550
106	계	도	사	11,340
107	시	험	사 1 급	14,550
108	시	험	사 2 급	12,120
109	시	험	사 3 급	11,700
110	시	험	사 4 급	9,580
111	시	험	보 조 수	8,020
112	안	전	관 리 기 사 1 급	14,450
113	안	전	관 리 기 사 2 급	11,780
114	유		리 공	12,060
115	함	석	공	12,100
116	용	접	공 (일 반)	12,440
117	리	켓	공	12,580
118	루	트	공	9,800
119	닥	트	공	11,340
120	대	장	공	9,110
121	할	석	공	13,530
122	제	철	축 로 공	20,060
123	양	생	공	9,040
124	계	령	공	8,950
125	사	공	(배 포 함)	14,180
126	마	부	(우마차포함)	21,190
127	제	재	공	12,100
128	철	도	캐 도 공	11,280
129	지	적	기 사 1 급	17,890
130	지	적	기 사 2 급	15,570
131	지	적	기 능 사 1 급	10,910
132	지	적	기 능 사 2 급	8,810

(도시지역)

직종 번호	직	종	명	단 가
1	건	축	목	14,800
2	형	틀	목	14,280
3	철		근	12,840
4	조	적	공	13,010
5	미	장	공	14,220
6	방	수	공	14,130
7	타	일	공	14,420
8	연	마	공 (기 계)	13,740
9	콘	크	리 트 공	11,810
10	화	약	취 급 공	17,770
11	착	암	공	13,940
12	포	장	공	13,640
13	잠	수	부 (4인 조)	73,540
14	특	별	인 부	10,580
15	보	통	인 부 (남)	7,760
16	보	통	인 부 (여)	7,760
17	중	기	운 전 기 사	14,190
18	운	전	수 (운 반 차)	11,800
19	중	기	운 전 조 수	10,200
20	고	급	선 원	15,530
21	보	통	선 원	11,810



내가 사랑하는 집

황금찬

나는
초가집을
사랑했다

어머니도
초가집에서 나셨고
아버지는 초가에서 크셨다.

나의 추억이
싸이던 그 집도
초가였다.

창을 열면
북악과 도봉이
내 창앞에 와
웃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내집 주변으로
빗살처럼 들어선 고층 건물들이
산과 구름을 덮고 말았다.

도배도 하지않은 방
벽에서 풍기는
흙내음
그것은 고향 사람들의
우정의 향기였다.

잡초를 밟으며
잃어버린
산과 구름을 찾으려
고향의 초가로 돌아가고 싶다.

□ 略歷

1953년에 등단

1965년 시집 「현장」 발간외 16권

1967년 산문집 「고독이 남긴 그림자」외 9권

월탄문학상, 대한민국 문학상, 한국기독교 문학상 수상



피터 아이젠만

Peter Eisenman

成仁洙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Serial/Overseas Contemporary Architect
by Seang, In-Soo

글을 잘 쓰고 정확히 묘사하는 것은 어렵다. 쉽게 쓴다는 것도 어렵다. 또한 쉬지 않고, 계속 쓴다는 것이 어렵다. 글을 잘 쓰는 법이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보는 것이라면 건축을 잘 하는 방법은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열심히 설계해 보는 것이라고 믿게 된다. 그렇다면 건축에, 건축가에 관한 글을 잘 쓰는 법은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열심히 설계를 해본 후에,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열심히 써보는 길이라고 믿게 된다. 그것도 여러나라의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도무지 힘든일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의 격려로 버틴다 해도, 지금의 이글과 사진은 필자의 능력과 제작여건에 따라 완전치 못할 것이다. 게다가 생존해 있고, 생각도 변화해 가는 건축가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나도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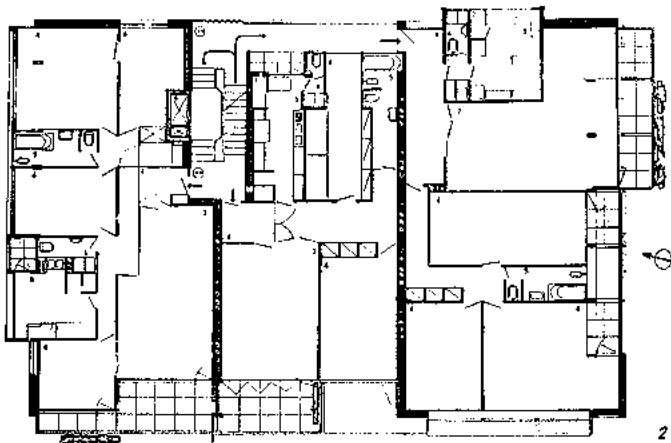
특히 사진은, 연재되는 이글에 동원된 참고문헌을 갖고 계신 경우, 원본으로 비교하여 보여주실 것이 요망됩니다. 후에 책으로 묶게 된다면, 좋은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필자주>

로시의 시학은 라틴문화를 바라보지만,
아이젠만은 어느 곳을 바라보아야 할까?
미국과 모더니즘만이 그에게 주어진 조건.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이론을 포기하고 작업을 시작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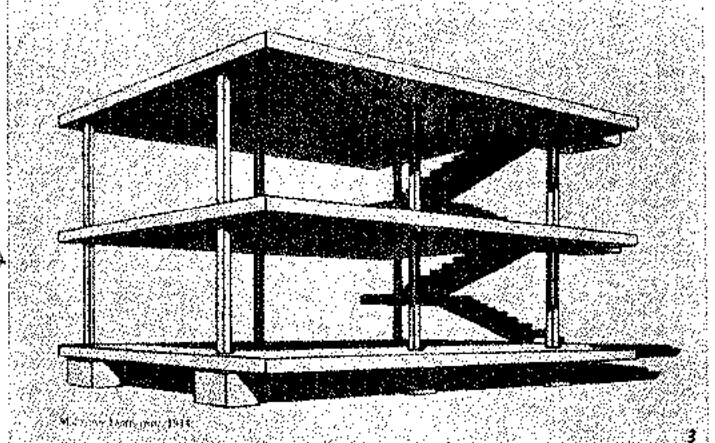
1. 대표작

아이젠만의 건축적사고를 종합적으로 대표할만한 대표작은 무엇일까? 만약 그의 주택시리즈 중에서 하나를 고르거나 1978년 이후의 작품중에서 고른다면 어떤것이 될까? (불완전한 자료들이기는 하지만, 이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필자는 대표작 고르기에 주저하게 된다. 그렇다고 그의 생각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논의중에서, 피터 아이젠만의 작업은 주목을 받고있다. 그의 작업은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가? 근대건축 거장들의 작업이 상업화되어 몰락함으로서, 그정신을 다시 이어가고자 연구에 몰두하였던가? 더 멀리 근원적으로 서구의 휴머니즘 전통에 반대하는 것일까? 그가 근대건축의 원리 즉, 효율성, 편리성, 표현성을 배제한다면, 콘크리트나 철골프레임, 또는 유리등의 물체에서 무엇을 상징하고, 무슨 가치를 찾을 것인가? 건축의 모더니즘을 그가 마무리 할 것인가?" 스미스는 피터 아이젠만의 태도를 "시각적 통사론" (Visual Syntax) 으로, 마이클 그레이스의 태도를 "시각적 의미론" (Visual Semantics) 으로 파악했다.²⁾ 콜린 로우는 책 "5 명의 건축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5 인의 건축가들의 작품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아이젠만은 코포에 숨겨져 있는 새로운 사실들을 전수했음직 하고, 헤이덕은 빠리의 종합적 입체주의자와 모스크바의



▲ 테라니의 주리아니 프리제리오 평면



▲ 도미노 구조

구성주의자 양자와 제휴하기를 원하는 듯 하고, 그래임스와 파쓰미, 마이어는.....”³⁾

이 말은 코모에 있는 건물에 드러난 원칙-건물진입의 일상적 출입을 바꾸어 버린 작품(이탈리아, 코모에 있는 테라니의 주리아니-프리제리오) (사진 2)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지적이다.

“정면성 대 좌표회전”(Frontality vs. Rotation) 이말은 케네스 프랭린이 “5명의 건축가”에서 뉴욕 화ай브의 태도를 간략하게 설명하며 한 말이다.

“라이트의 작품사례로 부터 저절로 알게되는 문화적 내용에서 벗어나면, 헤이덕의 작품에서 우리는 돌파구로서의 축의 회전으로 야기된 전체 덩어리의 정면성을 또 다시 깨닫게 된다. 이렇게 태어난 “정면성 대 좌표회전”이라는 주제가 이 곳에 태어난다. 헤이덕의 주택에서, 도로측 차고에서 진입하면 평면의 연속이 전개된다. 집으로 진입함에 따라 전면에 나타나는 벽이 확고히 인식 됨에 따라, 중략.....

아이젠만의 주택 I 에서는-프린스턴의 바렌홀츠 주거-또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 정면성과 회전이 전혀 용해 되지 않고 대립되어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정면성과 비대칭적인 회전이 공존하고 있다. 그 어느것도 상대방에 대해 우위에 서지 못하고, 더우기 역설적으로, 헤이덕의 주택과 비교하여 건물의 정면성도 효과적이지 못하다.

미술관의 진입은, 코모에 있는 테라니의 주리아니-프리제리오의 진입을 회고시키는 방식으로 되어 그것을 전수하여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곳에는 깊이가 부족하여 정면성은 허락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모호해진 미술관은 두 방향으로 진행되는 격자그리드의 층으로 이루어진, 하부구조에 기초를 두고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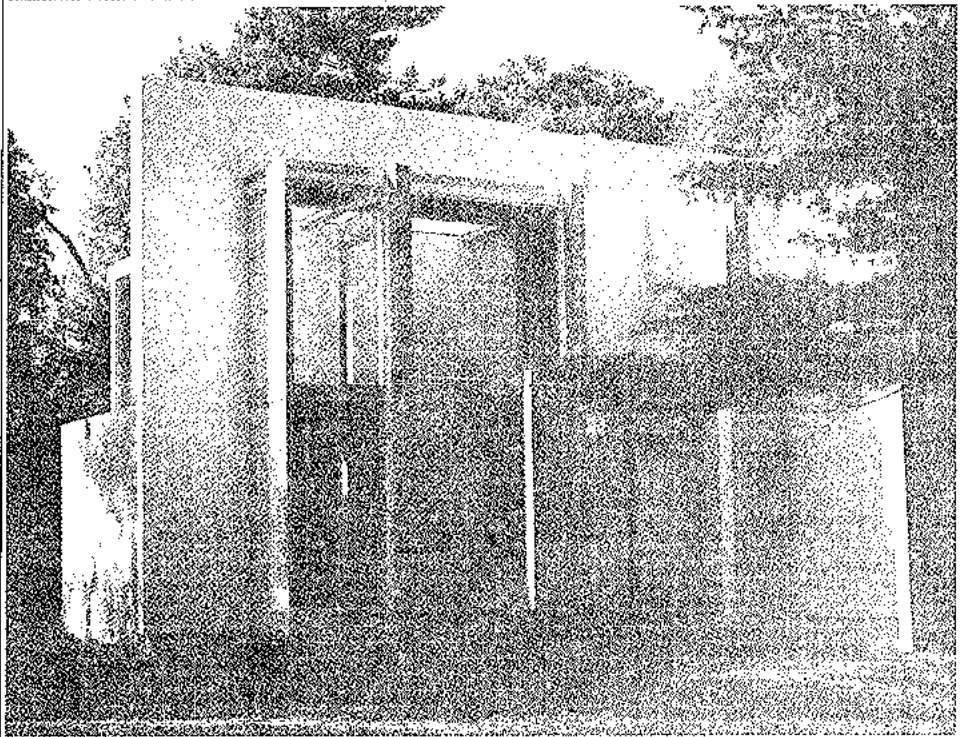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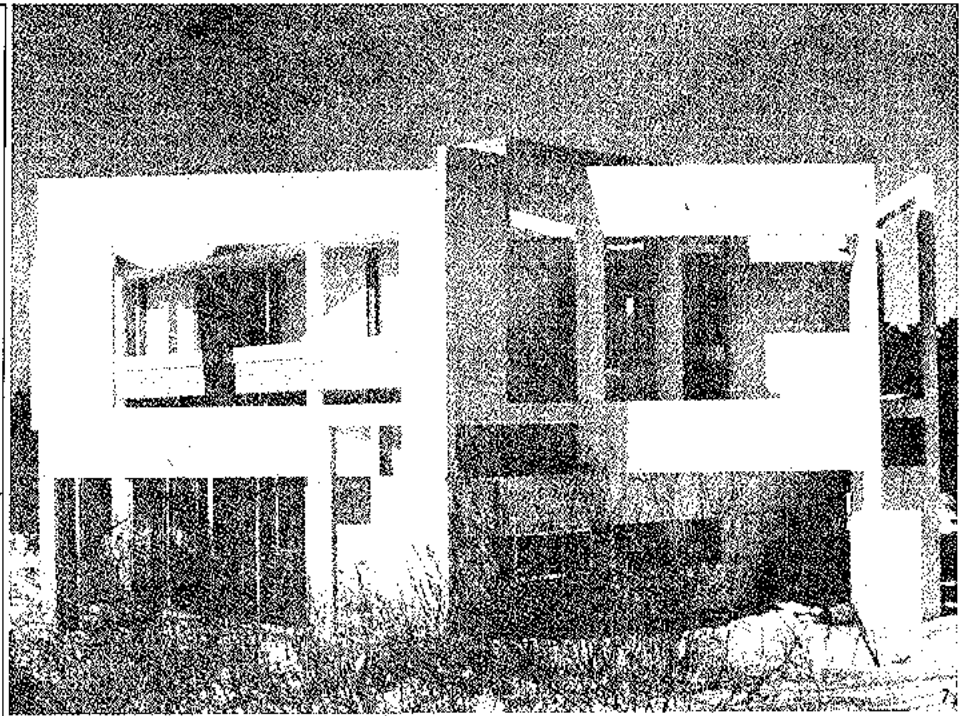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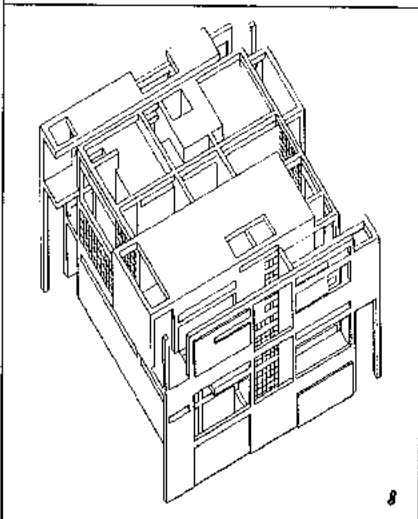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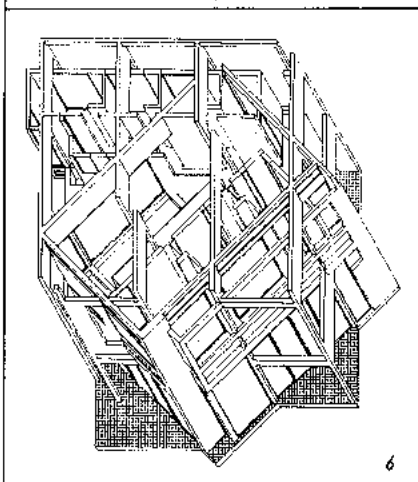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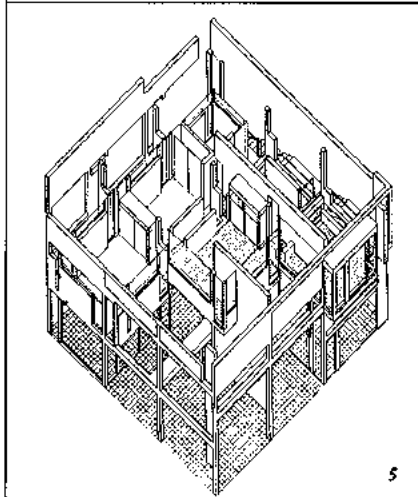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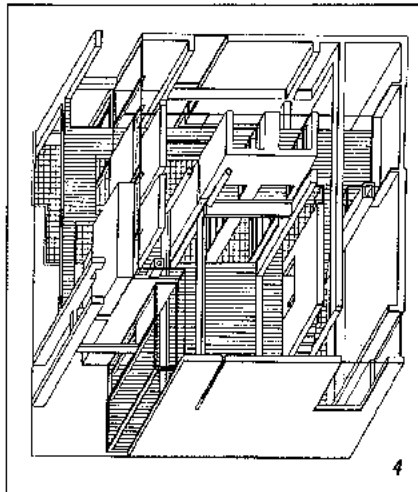
아이젠만은 여러가지 특징적인 작업을 해왔었다.

- (1) 공용주거단지에서의 전형적인 주거형태의 모색,
- (2) 도시설계를 통한 이론적 시도,
- (3) 개인 주택의 혁신적인 설계의 연속작업,
- (4) 국제적인 활동을 통한 이론의 확산-베니스, 베를린의 국제 현상설계 참가등을 통한 활동등.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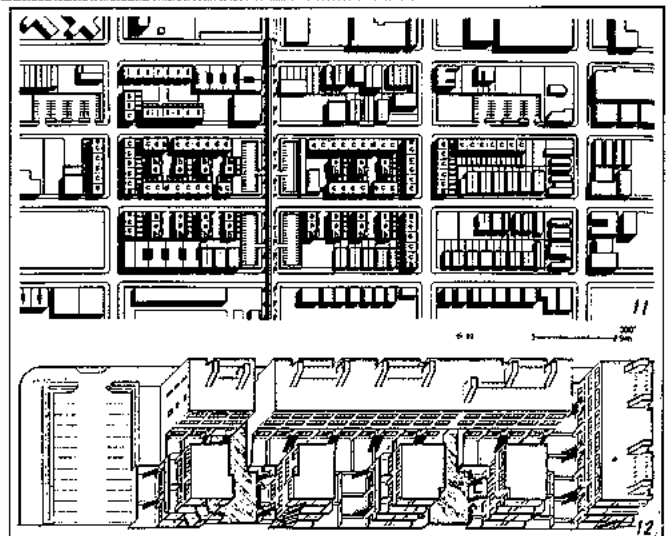
이중에서도 개인주택에 대한 혁신적 설계작업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 작업은 1967년의 주택 1호에서 부터 1978년의 주택 11-a호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아이젠만은 르코르뷔제가 1920년대에 했던 작업처럼, 즉, 철근콘크리트조에서 도미노구조(사진 3)로 일반적인 기본적인 형태를 뽑아낸 것처럼, 지금 다시 새로운 기본형태를 찾고있다. 르 코르뷔제의 뒤를 이어 다음세대에 통용될 건축언어의 새로운 통사론을 찾고있다.

이러한 점은 그의 작업에 동원된 주택명칭에서도 드러난다. “000의 주택”이 아니라, “주택 0호”라고 부른다. 즉, 개별건축주의 일상적 요구는 건축가에 의해 각색되거나 일부 무시된다. 결과로서 완성된 주택의 수도 적다. 필자는 건축가를 크게 두부류의 건축가로 나누어 보고싶다. 대다수의 건축가들은 일상적 건축주를 상대하는 반면, 소수의 건축가들은 다른 건축가에게 더 많은 발언을 한다. 건축가를 상대로 말을 한다는 것은 건축계에 널리 퍼진 생각을, 다른 각도에서 비평하고 새로운 체제를, 새로운 이념을 제안하거나 확대시키고자 지적 유희를 하거나 다양한 형태시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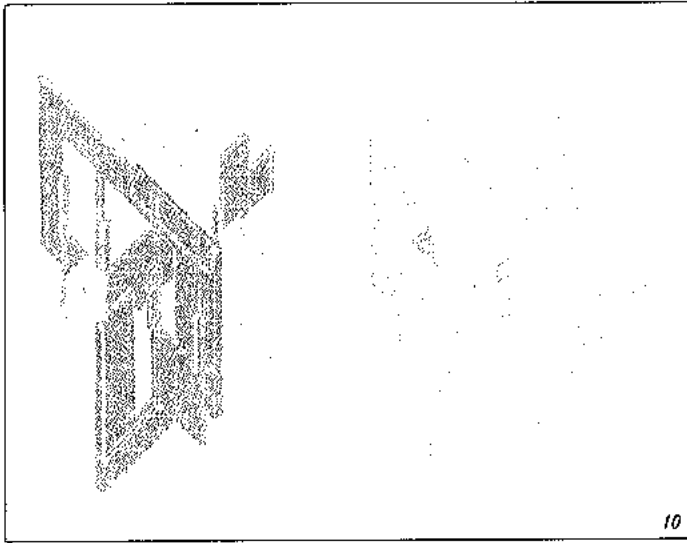
흔히 “페이퍼 아키텍트”라고 불리는 건축가는 그러한 작업을 염두에 둔 건축가들일 것이다. 이러한 건축가들은 건축주의 요구를 무시한다기 보다 요구된 조건을 그 근본에서부터 건축주 스스로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마력(?)을 지닌경우, 그 이론과 형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건축가의 생각은 널리 퍼진다. 아이젠만이 이러한 건축가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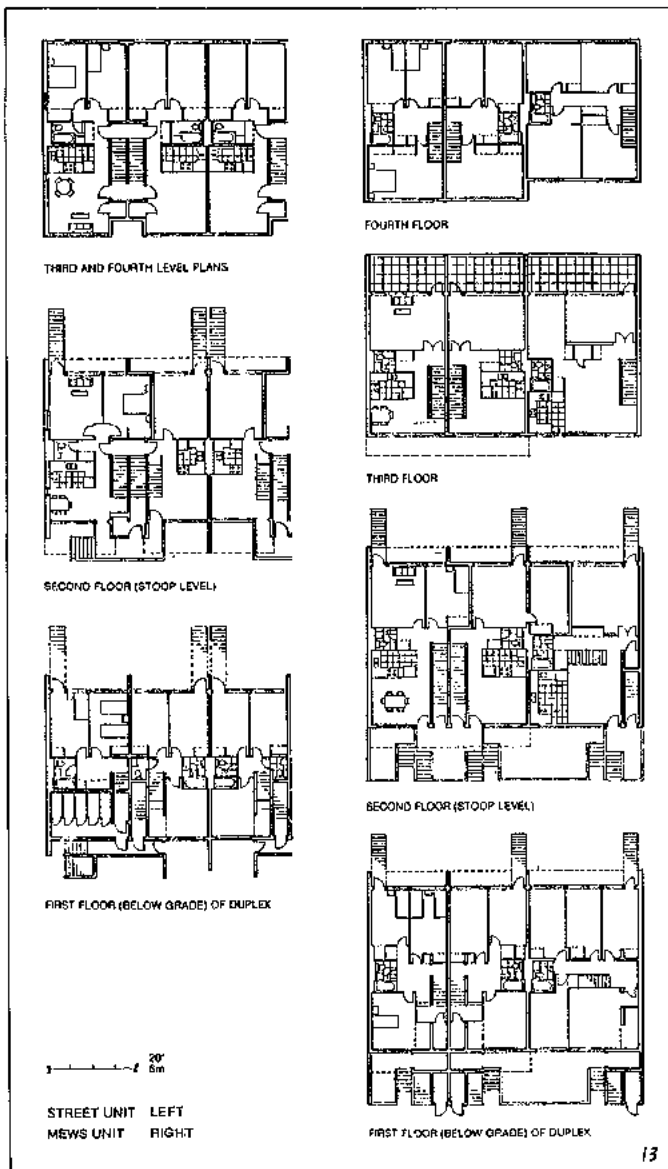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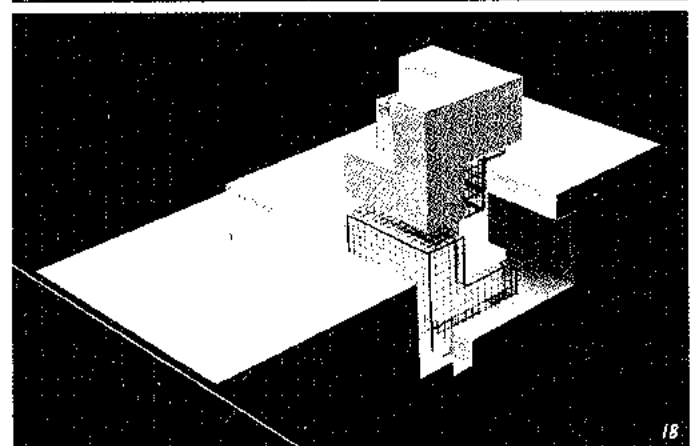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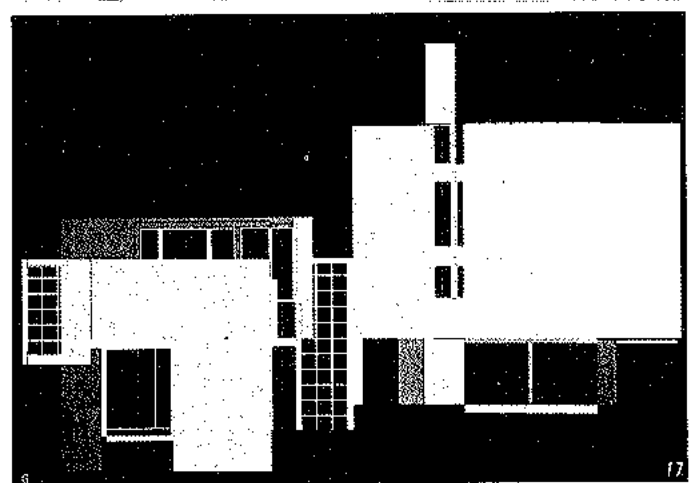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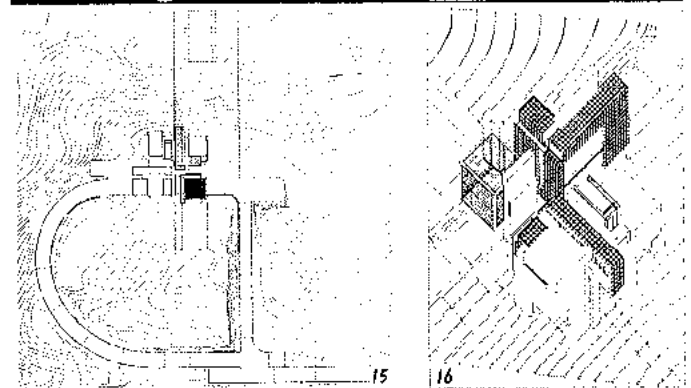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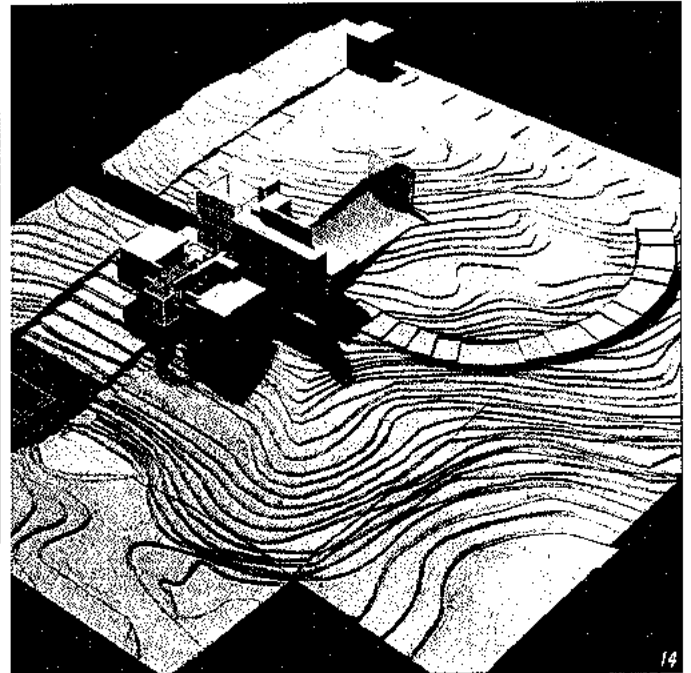
- 4. 주택 1호
- 5. 주택 2호
- 6. 주택 3호
- 7. 주택 3호 전경
- 8. 주택 4호
- 9. 주택 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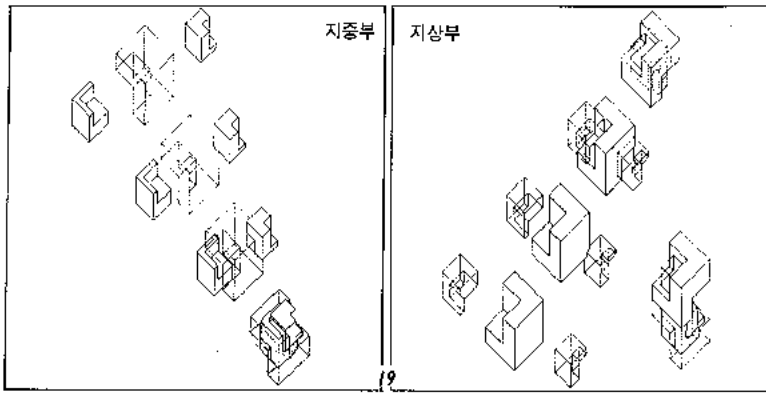


- 11. 주거단지 배치도
- 12. 엑소노메트릭
- 13. 각층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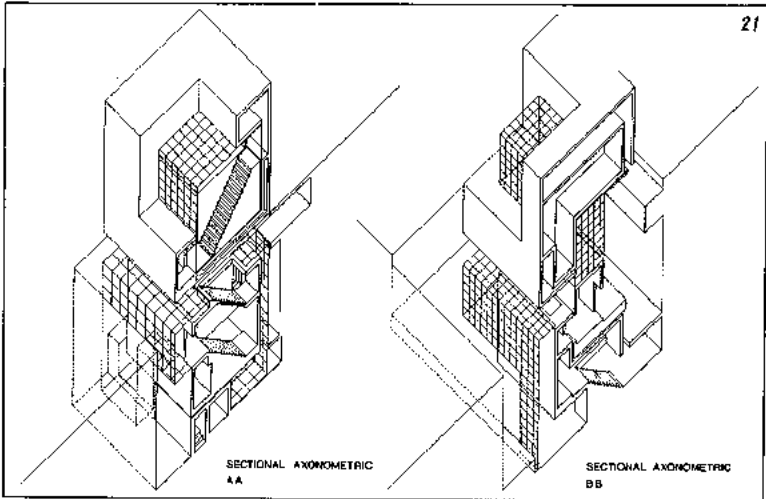


10. 기하학적 대칭성을 보여주는 주택 6호 도면
 14. 주택10호 계획안 모형
 15. 주택10호 계획안 배치도
 16. 주택10호 계획안 투시도
 17. 주택10호 계획안 입면
 18. 주택11-a호 계획안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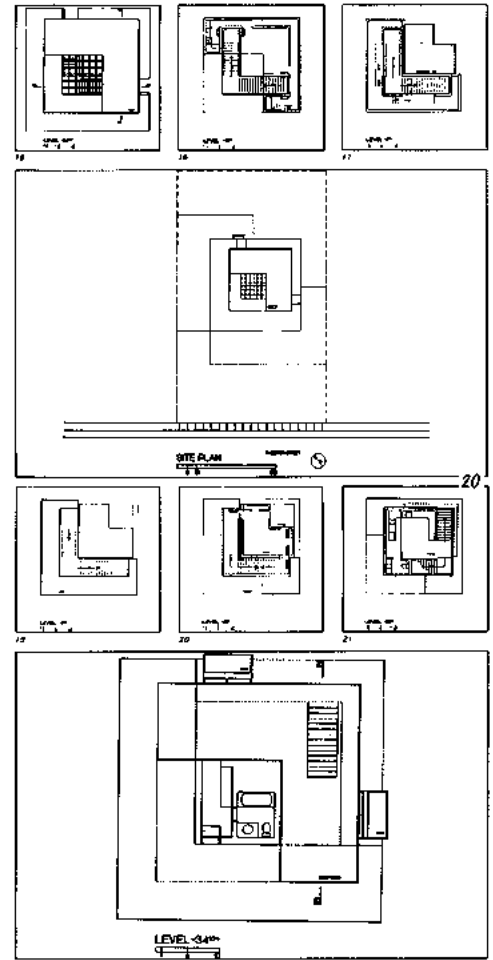




기하학적주택 구성



주택11-a호 단면 투시도



주택11-a호 각 높이별 평면과 배치도

아이젠만의 경우, (1) 진입동선의 일상적 태도에서의 탈피,
(2) 직교좌표의 변환을 통한 시도,
(3) 기둥과 벽의 혼재된 형태를 분해하여, 다시 세밀한, 입체적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4) 1978년 이후, 더 적극적인 변환을 도입하고 실제 설계에서는 완만한 곡선도 도입한다.
(5) 그러한 작업을 이론화와 함께 아직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우리가 일상적이거나, 건축의 근본원리라고 생각하기 쉬운것들을 해체하여, 새로운 형태로서 제안하고 이론적인 설명을 한다. 여기서 이론적이란 말은 아이젠만이 구조주의적인 감각으로 건축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에 그가 설계한 형태들은 그의 이론과 들어맞지 않았으나, 점점 이론과 맞아가고 있다고 평가 받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대표작은 78년 이후의 작업중에서 고를 수 있지 않을까?

2. 작품과 활동

1932년 8월 12일생, 미국, 뉴저지의 뉴아크 출생.
1955년 코넬대학 건축학과 졸업(B. Arch.)
군복무 시절 한국전선에 공병으로 참가.
일본에 잠시 체류.
1959년 T.A.C. 근무⁶⁾
1960년 * 콜럼비아 대학 대학원에서 도시계획 석사취득 (M. Arch.)
* 보스턴 시청사 현상설계(안토니 어들리와 합작)

* 리버플 성당 현상설계 참가.

1961년 * 보스턴 건축회관 현상설계 (마이클 그레임스와 합작)
196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 건축학 석사취득 (M. A.)
1963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 건축학 박사(Ph. D.) 취득

제 1 시기 : 구조주의 건축의 모색기 (1964~78년)

1964년 미국건축가협회 본부 현상설계 (마이클 그레임스와 합작)
1964년~66년 저지 코리더 계획안, 뉴욕과 필라델피아간의 선형도시계획의 사례연구. 마이클 그레임스, 안토니 어들리와 합작.

1965년 캘리포니아대학 예술회관 현상설계 참가. (마이클 그레임스와 합작)

1966년 마이클 그레임스와 함께 맨해튼 해변계획안을 설계.
1967년 책 발간, "새로운도시 : 건축과 도시 재개발", 뉴욕근대미술관 발행. 마이클 그레임스와 함께 맨해튼 해변계획안을 발표한 내용임.⁷⁾

1967~68년 * 주택 1호 (HOUSE I) 프린스턴의 바렌홀츠 주거. (사진 4)

1968년 책 발간, "근대건축 1919~1939 : 논증", 프린스턴대학에서 출판.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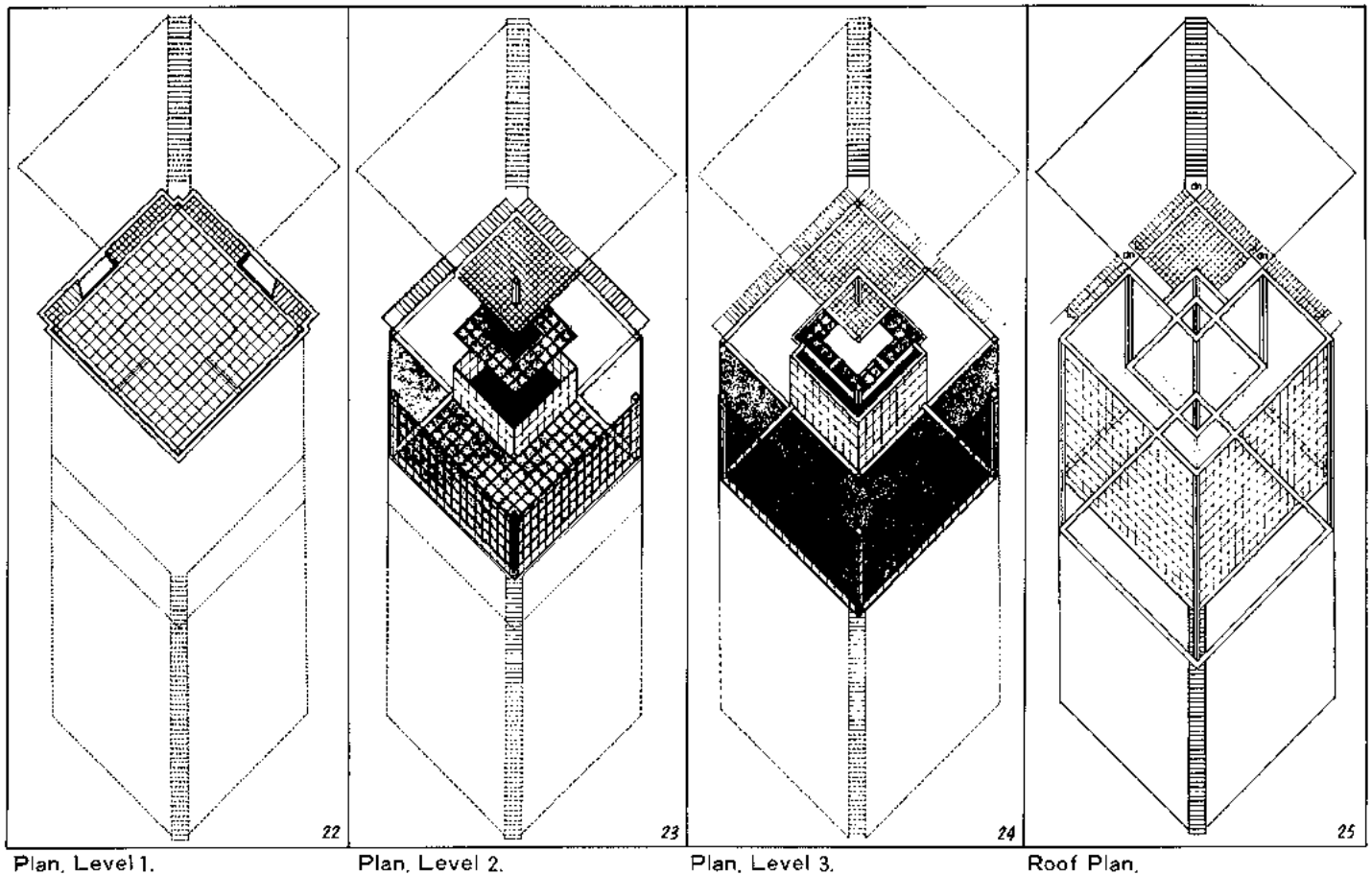
* 프린스턴 연립주택단지 계획설계.

1969~70년 * 주택 2호 (HOUSE II) 설계 및 시공(사진 5)

* 주택 3호 (HOUSE III) 설계 및 시공(사진 6, 7)

1971년 * "신도시 정착 : 분석적 단계", 건축, 도시연구소 발행.⁹⁾

* 주택 4호 (HOUSE IV) 계획, 코네티컷주, 폴스 빌리지. (사진 8)



Plan, Level 1.

Plan, Level 2.

Plan, Level 3.

Roof Plan.

1972년 “5 명의 건축가들” 책이 발행됨. 뉴욕에서 활동중인 5 명의 건축가들을 소개한 책이며, 내용중에 설계한 주택을 설명하는 글을 실음.¹⁰⁾

* 주택 6 호(HOUSE VI) 1972년 설계, 1975년 완성.¹¹⁾ (사진9, 10) 프랭크 주택. 주택 6 호에서는 입면이나 평면에 새로운 사고 방법으로 전환한 것이 나타남.

1973년 “저층 공동주택의 새로운 대안”을 발행.¹²⁾(사진11~13) 건축. 도시연구소(I. A. U. S.)의 케네스 프램튼이 참여 했고, 뉴욕 도시개발국(U. D. C.)과 협동하여 마커스 가르비 파크 지역에 1973년에 저층 고밀도 단지로 개발되어 요란하게 선전했었다. 전형적인 주거형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층주거보다 경제적으로나 안전면에서 나온 주거단지를 개발했다. 79년에 조사해본 결과 의도한대로 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도로에 따라 나열된 긴 양쪽블럭이 마주하고, 그가운데 직각으로 뻗은 작은 블럭으로 여러 작은 단위의 정원들을 두었는데, 공공 공간을 개인적 마당으로 하려던 계획은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약속했던 대로의 이상적인 형태는 아니었다고 발표되었다.

1975년 “다섯명의 건축가들”(Five Architects) 책이 발간됨.

* 주택 10호(HOUSE X) 계획. (사진 14~17)

* 루즈벨트 아일랜드 집합주거 현상설계 참가.

이 당시 그는 구조주의등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하게된다.

“공리적 기능주의나 기술적 건축주의의 이상은 근대운동의

지도적 건축가들의 형식주의 목적과 구체하기 어렵게도 타협하고 말았으며, 이 운동은 상업행위로 변형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¹³⁾

1978년 책 “카드로 된 주택” 발행.¹⁴⁾

* 주택 11-a호(HOUSE XI-a) 계획. (사진 18~21) 캘리포니아주, 팔로 알토 소재. 쿨트 포스터부부를 위한 주택. 토지구획정리된 지역의 땅으로 지진이 있는 땅이어서 재료는 철골프레임, 합판, 외벽에 회반죽, 철제 창틀과 유리커튼월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이 살만한 주택이 아니라는 평도 있고, 흥미로운 생각과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다. 또 건축주가 이 안에 동의했다는 것을 신기하게 보고있다. 이 건물은 같은 매스를 세번 사용하고 있다. 첫 매스는 지하로 파내려간 빈부분에 의한 매스이며, 두, 세째 매스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나는 위에 나머지는 그 지하에 점대칭으로 똑같이 구성되어 있으나, 사용된 재료는 서로 반대의 형태로 되어 있다.

제 2 시기 : 아이젠만의 시학(詩學)의 시기. (1978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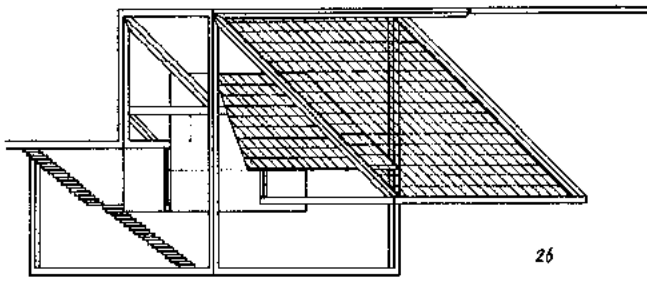
1979년 주택 11-a호로 26회 P/A상 수상.

건축주 쿨트 포스터 부부를 위한 주택.

“상식적인 기능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인간생활에 대한 다른차원의 질문에 반응한 결과로서의 주택”이라는 평을 받음.

1980년에 발행된 “팔집”(House for Sale)에는

아이젠만의 새로운 변형이 나타난다. (사진 22~26)



Elevation

26

주택의 명칭은 “일면은 기묘한” 주택(House El Even Odd)이다. 여기서는 수평면과 수직면 모두에 45°로 기울어진 건물을 계획했다. 빗면의 지붕에는 태양열 집열판을 도입했다.

1982년 알도 로시의 “도시의 건축”을 발간. 이 중에 서문을 씀. 번역은 다이란 기라르도와 조안 오크만 공동번역. 서문 첫머리에서 아이젠만은 헤체비평의 실천자로 알려진 자크 데리다의 “저작과 변별성”(Writing and Difference)을 인용했다.

1984년 세계건축가협회, 카이로 국제전시회 출품.¹⁵⁾ 아이젠만 / 로벳슨 실제 부르클린 소재 소방서. 이 작품은 독자적인 형태로서 새로운 도시형태를 위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즉 대지 인근에 현저하게 나타난 도로축과 빗겨가는 철도축등 2축이 한 건물에 대립적으로 공존하고있다. (사진27~29)

1985년 32회 P/A상 수상. 오하이오 주립대학 시각예술회관 지명현상설계 1 등작. 아이젠만, 로벳슨 / 트로트, 빈 설계사무소.¹⁶⁾ “대지에서 출발한 좌표의 회전개념을 통해, 고갈된 근대건축언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려는 시도를 지닌 작품. (사진30~33)

1987년 34회 P/A상 수상. “대학교 미술관(University Art Museum)” 아이젠만 / 로벳슨 건축설계사무소안. 작품은 지역과 대학사회를 위한 미술관을 설계. (사진3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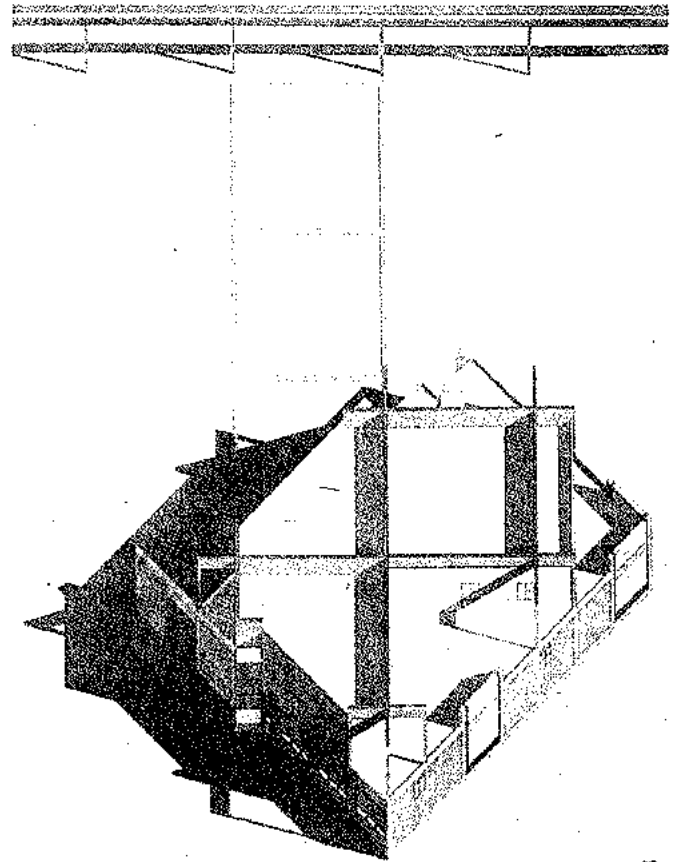
* IBA 87 독일 건축전시회에서 피터 아이젠만은 남 프리드리히 슈타트 지구에 상가시설 및 주거시설을 지닌 건물을 도로모퉁이에 세움. (사진40~42)

구겐하임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고, 캠브리지대학, 프린스턴대학, 쿠퍼유니온대학에서 강의 경력이 있고, 현재 샤롯데이븐포트의 예일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으며 잡지 오퍼지션 편집장. 뉴욕의 건축. 도시연구소¹⁷⁾ 설립자이며 연구이사. A. I. A.의 건축가. 아이젠만 / 로벳슨 설계사무소의 파트너. “주택 10호”(House X) Rizzoli 출판사에서 출판예정.

3. 아이젠만의 생각

변형과 분해(Transformation and Decompositions)는 그의 구조주의적 사고를 대표하는 용어이다.

“현재 대부분의 건물들은, 문화적 의미로서의 “미술관”이나



▲ 소방서 등축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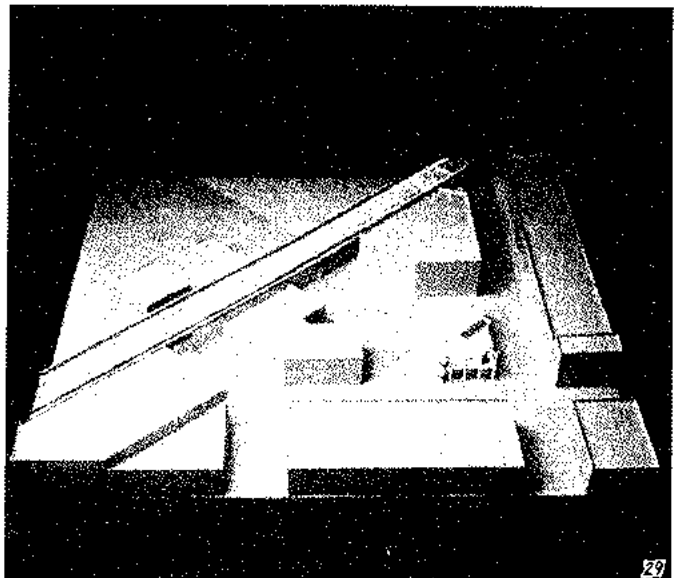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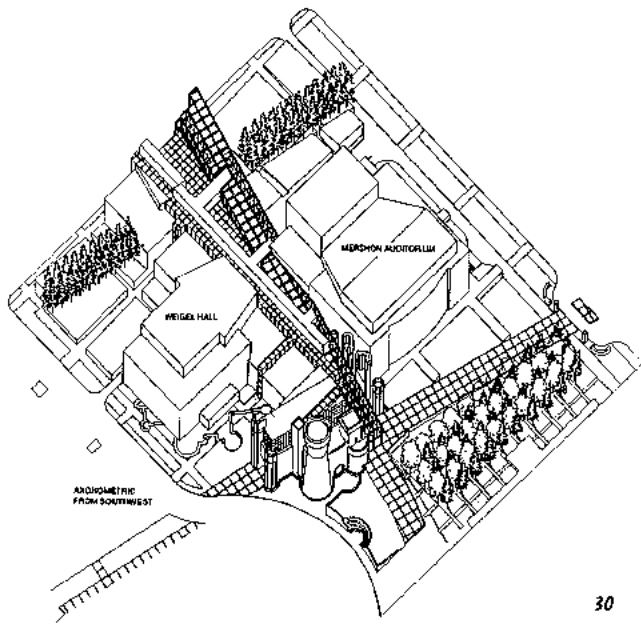
▲ 소방서 투시도

28

소방서 모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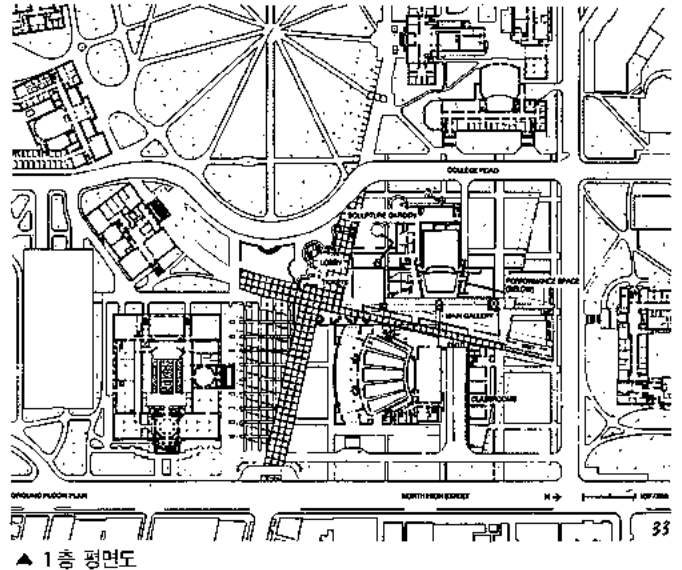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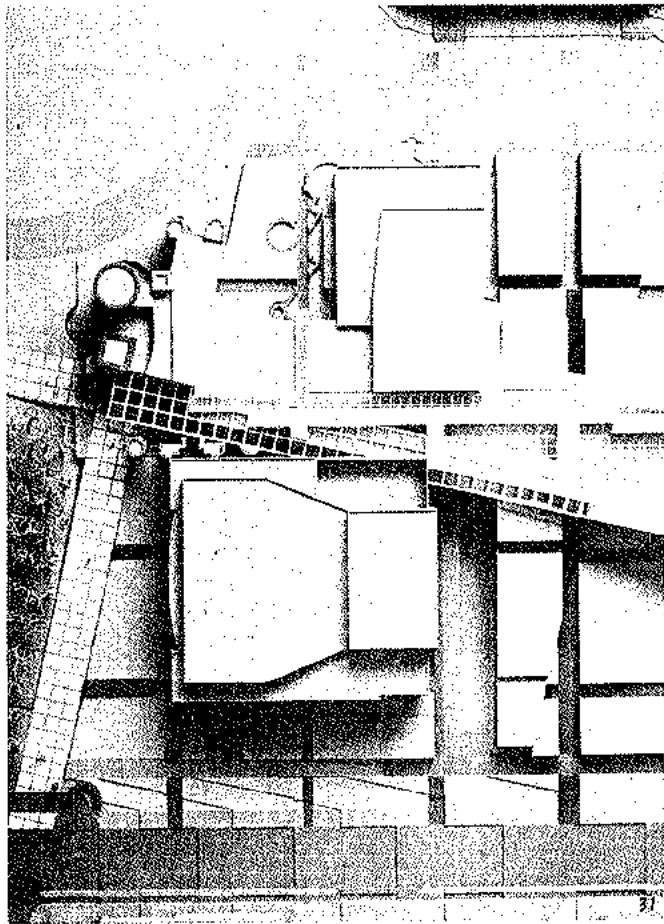


30

남서측에서 본 엑소노메트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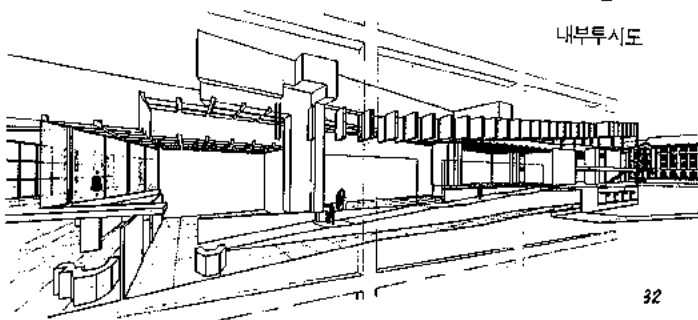


▲ 1층 평면도



모델사진 ▲

내부투시도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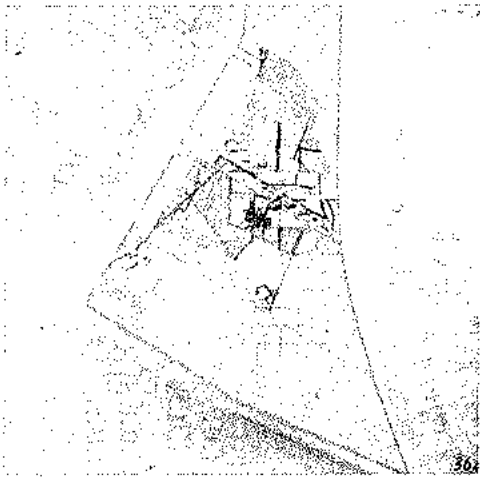
“시골집”으로 묘사되어, 등등한 의미로 반복되어 여기서는 중립적으로 의미되지만, 실제와 다르게 보이고 있다. 흔히 건축토론에서(건축의) 가치를 낮추는 용어 Cardboard (판지, 마분지)는 (바로크나 고딕이 처음 쓰였을 때처럼) 여기서는 나의 토론을 위해 반어적이거나, 내게 급하게 상징으로 채용되어 신중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마분지”는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는 질문으로 쓰이며, 그러므로 실재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개념은 건물의 형태를 묘사하는 은유(Metaphor)로서가 아니라, 건물의 은유를 묘사하는 은유이다. 예를 들어 건물모형은 흔히 마분지 등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디자인과정에서 형태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용어이다. 모형은 건물인가? 모형인가?

이러한 맥락에서 주택 1호와 주택 2호는 실제 건축적환경으로 가능한 설계방법으로 이 개념을 번역해보려는 시도를 지닌 실험들이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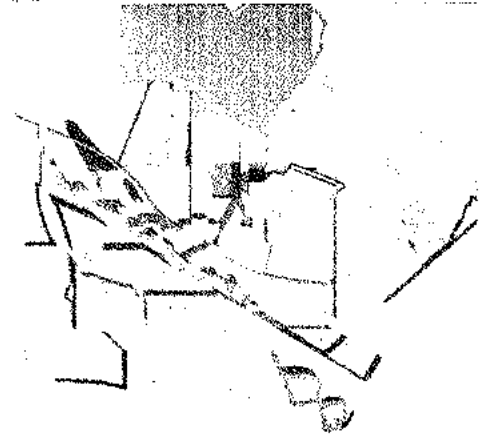
필립 존슨이 한 다음 이야기는 뉴욕화이트의 두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아이젠만이 이론적 성향은 강하지만, 작품으로는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아이젠만의 연구가 가장 독창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박학 다식과 지적태도 때문에 피터 아이젠만은 상대적으로 그 진가가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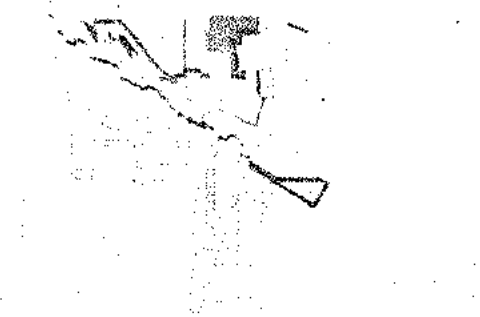
필립 존슨은, 예를 들어, “주택 II” (사진43, 44)를 보고, 박학하다는 것과 이것을 풀어내는 지적태도가 서로 풍부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복잡하지만 확고한 건축이론은 모든 건축인이 바라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아이젠만은 큰 건물에서도 잘 풀어 낼수 있을까? 존. 헤이틱은, 그의 경력으로 보아, 이론가에 속하는 디자이너다. 말로 건축을 하지않고-실제로 조용한 사람이다-의미있는 계획안을 내어 놓는다. 그의 “벽”주택 (“Wall” House)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티볼리의 아드리아나(하드리안)나 미스의 1923년의 벽돌집(Brick House)의 섬뜩한 분위기를 지닌것으로 보인다. 마음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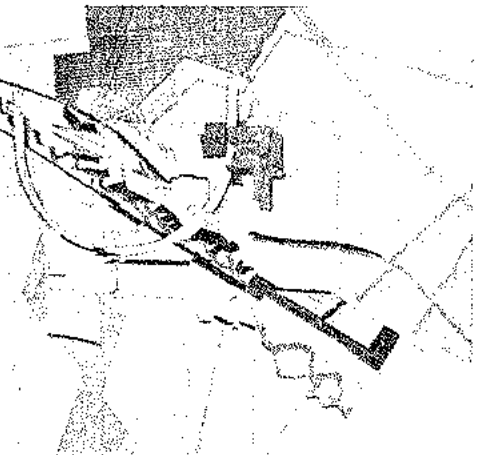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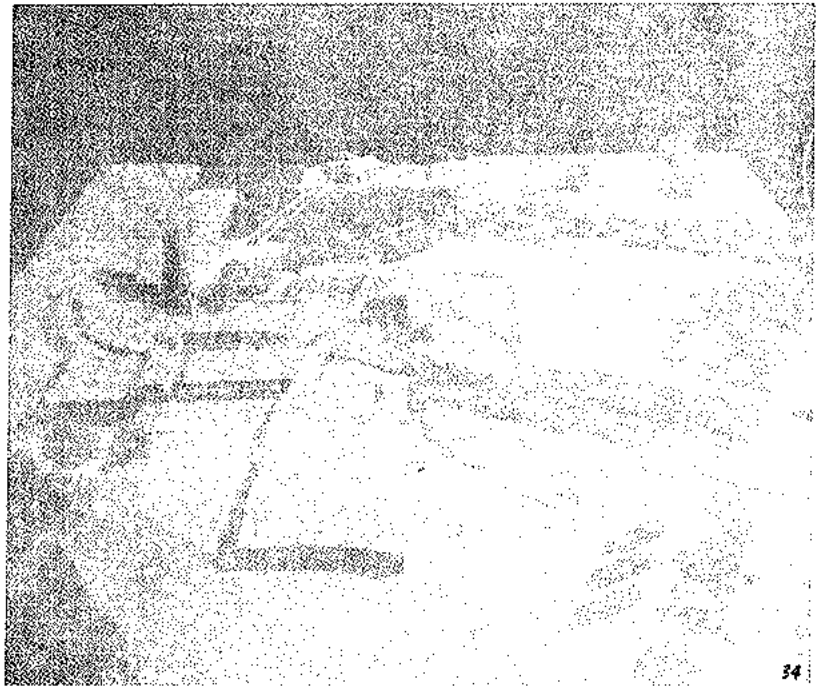
고층부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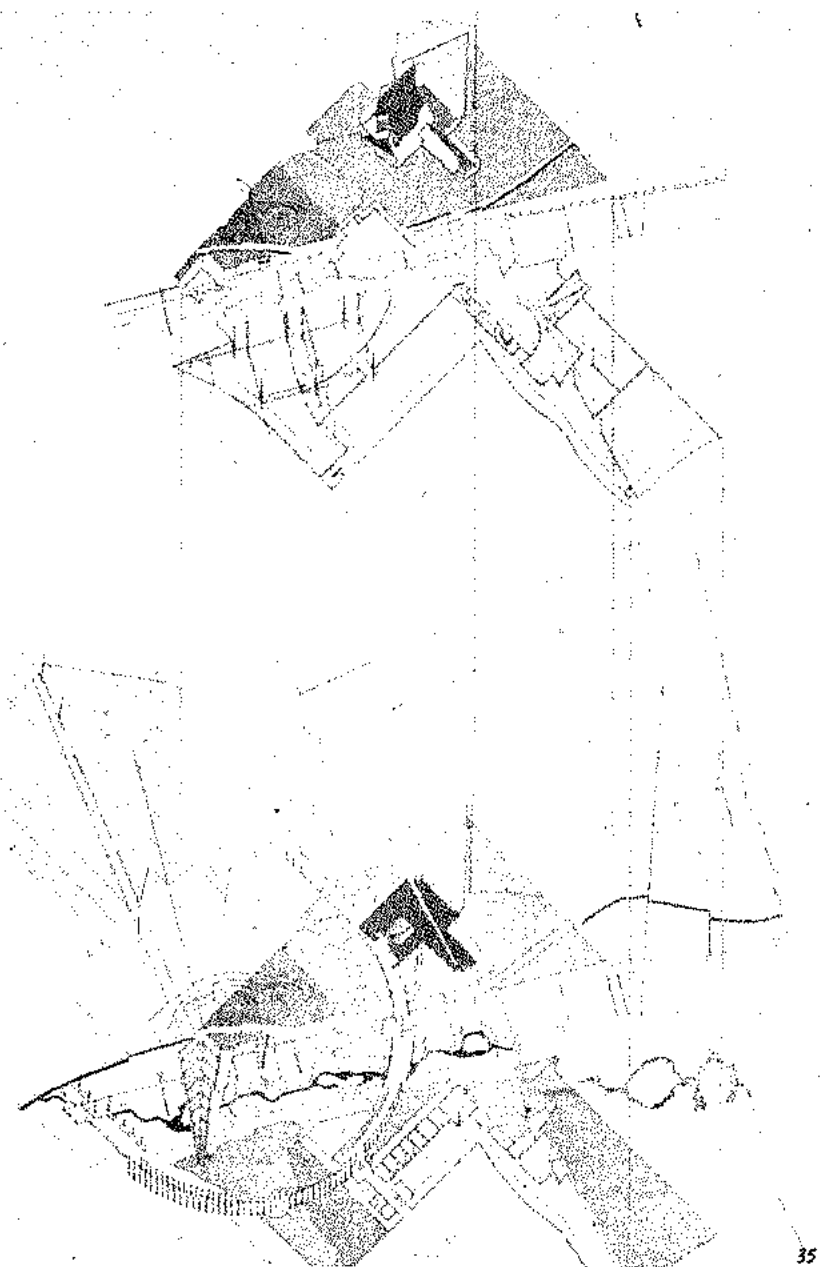
저층부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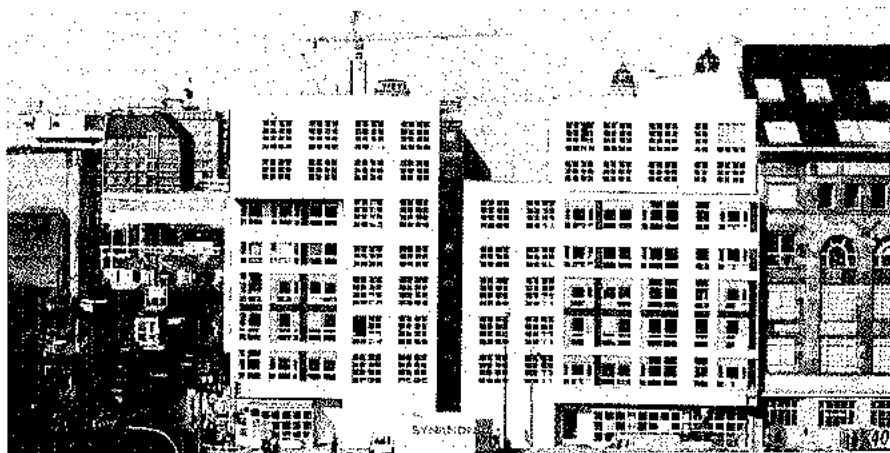


엑스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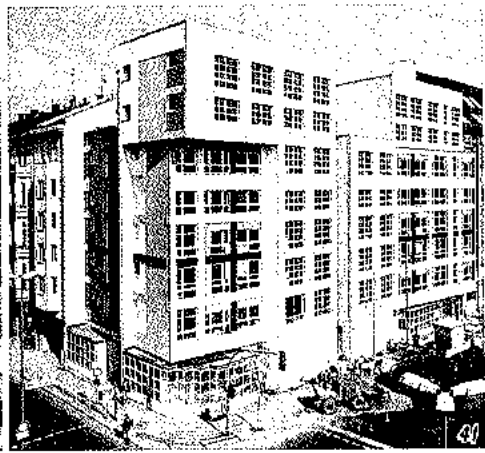


▲ 대학교 미술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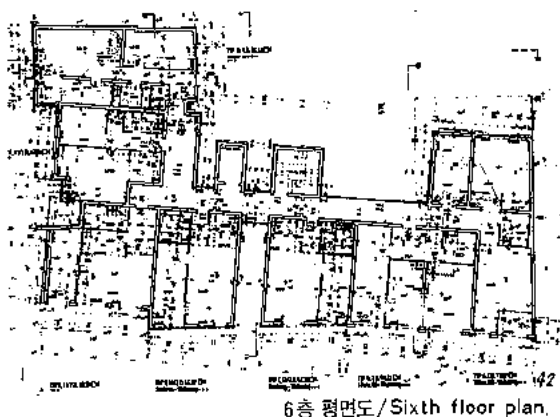




코초도로쪽의 파사드 ▲



▲ 도로 교차점에서 본 전경



6층 평면도/Sixth floor plan.

배치한 듯하고, 기하학적으로 반복되지만, 분리되고, 명확하고, 단순한 끝없는 벽들: 실제 크기로 그것들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¹⁹⁾ 실제로 아이젠만은 78년 이후의 작품에서는 초기의 기하학적인 태도를 유보했다. 이점은 실제 프로젝트의 대지조건이나 요구사항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지지만, 그이전의 태도도 계속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잡지 ‘A+U’ 1980년 1월호는 피터 아이젠만의 특집을 실고있다. 그 앞부분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젠만: 케네스 프램튼은 1969년에 쓰여진 주택 I 에 관한 논문에서 주택의 주제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로마 하드리안 빌라의 단편적이고 역사적인 기억으로부터 18세기의 피라네지의 환상에 이르기까지 은유적 건축의 실패를 그림과 같이 엮었다. 그 이후로부터, 시각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의 ‘실패’란 눈에 드러나고 있다. - 근대건축자체의 실패.포스트-모더니즘의 실패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주택 10호의 기본배경은 광범위한 논쟁을 부른다.....

〈질문 1〉 이것은 엄밀하게 당신의 주택 10호와 기타 다른 주택들을 구분하는 광범위한 문화적 조건과 관련이 있는데, 그러므로서 그 조건으로 이론적 반박을 뚜렷히 하고 있다. 당신이 이야기 한대로 이전의 주택들은 확실히 개념적 대상이 아닌 실제적 대상으로, 주택의 프로그램이나 그 형태로부터 모든 이념적 고려를 줄이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보여준다. 당신의 관심은 전반적으로 건축의 내면적 본질 조건(외면적이고 피상적인 것에 반대 되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쨌든, 재미있게도 당신에게서 이야기되는 이러한 ‘자르느’(cutting) 개념은 문화에 대한 상대자로서 중립적인 존재의 상태로 향하는 반면, 다른사람, 예를 들어 만프레드 타프리등은 벌써 당신(아이젠만)의 이론의 화려함은 아이젠만이 선천적으로 이념적이기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즉 현건축상황에 반(反)-이념적 태도로서, 중립을 지키기 위해 미온적이라기 보다 적극적인 부정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어떤 경우든, 우리가 당신이 스스로 만든 연금술²⁰⁾인 건축의 성질을 규명하고, 주택 10호에서 그 규명이 연속적 방법으로 없어서는 안될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본다면, 당신이 이념적이거나 문화적관심으로 논쟁에 돌입하는 것은 (건축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만든 형태를 어느정도 외부의 피상적 세계를 허용하는 것이된다.

아이젠만: 이러한 모습에서 주택 10호는 아마도 모순적이 아닌 출발점으로서 보일 것이다. 주택을 확실한 표현으로 설계의 전략이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합리주의나 형식주의를 벗어나 있다. 그래서 모순들은 그 실체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주택은 대상과 문화에 대한 ‘또 다른’ 관계를 암시하게 하는 건축에서의 다른 모델의 성질을 찾고자하는 새로운 모델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로서 주택 10호에 나타난 태도에는 3 가지 기본적인 모습이 있다.

첫째는 건축대상에 관계된 설계과정의 대상에 관심을 둔 것이고, 둘째는 일반적으로 인간과 건축가에 관련된 대상의 성질에 관심이 있고,

세째는 신호로서 또는 대상으로서 모든대상의 ‘성질’에 관심이 있다.

첫째사항을 이야기하자면 주택 10호의 과정은 초기주택에서 처럼 선과 면의 요소로 시각적 변화를 교묘하게 연출한 것이 아니고, 이미 변형의 연속으로 재구성 할 수 있는 일련의 진행과정이 아니라 ‘분해’(디컴퍼지션)라고 부를 수 있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이 용어는 문학비평에서의 용어 ‘해체비평’(디컨스트럭션)을 즉, 분석적 행동을 암시하는데, 이것을 어떤 구조의 범주 안에서, 텍스트를 분류하여 개념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디컨스트럭션’은 기본적으로 분석의 도구이다:

실제로 설계하는 과정이나 조형화하는—실제 문학적—으로나, 이런 경우 건축의 핵심으로서—특별한 태도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서 또 ‘컨스트럭션’ 용어를 피하기 위해 시공과정에 대한 건축과 비교하여 여기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설계과정이나 구성과 용어 ‘디컴퍼지션’은 현재의 맥락에서 ‘디컨스트럭션’과 관련이 있다.

〈질문 2〉 문학적인 감각에서, 해체(비평)

(Deconstruction)는 종합적인 활동에 상반되는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것이다. 실체속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다. 당신(아이젠만)이 이야기 것으로부터 명확한 것은 없다. 무엇이 이러한 ‘작업’(Work)이고 그 작업은 어떻게 분해되었는지를 부터.

아이젠만: 작업은 ‘미리 존재’해 있는, 선언적인 우주속에 이미 존재해 있다.

—‘미리 존재했다’는 것은 역사적이거나 일상적 감각의 용어가 아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해체의 과정이 대상을 결정하는데 일상적 효과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과정은 대상이나 그 대상의 과정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한 원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상으로서의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나 미리 존재한다는 상태는 과정에 앞서 독립된 상태를 뜻한다.

〈질문 3〉 초기의 아이젠만의 주택에는 주관심사가 있었는데, 아이젠만에 의한 방식대로 어떤 ‘합리적’인 설명이었다.

—그때 거의 아이젠만의 활동이나 그결과를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보였다. 물론 누구든지 기능, 프로그램, 의미, 기술 또는 건축주의 중요성—형태를 만들게 도와주는 방법으로 또는 전통적 기법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구속력인—과정의 합리성이나 형태가 지닌 논리는 거의 정당한 유용성이나 최종적인 안전한 논리가 되었다. 그래서 ‘분해’라는 용어의 용도는 과정을 합리화 하거나 재빨리 정당화시키기 위한 집의로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젠만: 그 용어는 구성에 대한 전통적 생각을 뒤바꾸도록 요청하는데, 모든 경우 나타나듯, 숨겨진 것—즉 일반적으로 간단한 것에 비해 복잡한 것으로 만드는 어떤 단계로 변형해 가는 생각을 포함한다.

전통적으로 건축가는 요구되는 프로그램에 맞춰, 형태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게 된다. 설계과정 속에서 이미지는 수정되고, 간혹 대지, 재료, 기능과 의미등의 요구사항들은 대립되며 여러 조건들에 따라 까다로워지거나 세련되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그 생각은 건축가가 머릿속에 그린 이미지와 계속 연관을 맺는다. 최후의 이미지는 초기의 것과 최종의 건물과 일치시켜보는 능력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질문 4〉주택 4호나 주택 6호의 형태구조를 어려움 끝에 가능케 한 변형들은, 각 단계에서 제한된 여러가지 대안들을 밝혀보는 일련의 연속된 과정의 결과이다. 다른 말로, 각 단계에서 변형하는 과정중에 가능성이 있는 대안은 이미점토하고

지나친 대안중에 있음을 보게된다. 설계과정에 의해 제한되고 한정된다 해도 이러한 대안들은 과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이다.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결정된 선택으로서, 그때, 전통적 설계과정에 상반되게 진행한다 해도 이미 소유한 생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내부의 이미지라기 보다, 전 단계에서 논리적으로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대안이 남아 있다.

4. 상황과 배경

a. 건축과 언어

건축에서 “언어”라는 용어의 본격적 등장은 존 섬머슨의 ‘건축의 고전적언어’²¹⁾로부터이다. 언어학과 건축의 관계는 무엇으로부터 가능한가. 섬머슨의 책에서 거론된 용어들은, 각장의 제목에 나타난 “문법, 언어학, 수사학”등이고, 이 책중에 용어 해설 편에는 언어학과는 관련이 없으며, 1장의 “고전주의의 본질”편에서 다음과 같은 전제로서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건축을 언어로서 이야기할 것이며, 이때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고자 하는것은 다만 여러분이 고전적 건물을 볼때, 건축의 라틴어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의 라틴어’ 이것은 또다른 전제를 필요로 한다. 고전적 건축은 그 근원을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에 두고 있다. 단지 그 본질과 사용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사용이란 로마로부터 계승되어 와서, 르네상스와 우리자신의 시대 사이 500년간의 모든 문명세계의 공통된 건축언어로서의 사용이다.”²²⁾

위와 같이 섬머슨은 라틴어를 세계공용어로 보았듯이, 라틴건축의 세계적 사용과 그 본질에서 고전적인 것을 추출하고자 했다. 그러면 고전적이란 것은 무엇인가 서양의 클래식이란 말은 본래 기원 2세기경의 로마에서 작가들을 플라시쿠스 작가와 프로메타리우스 작가로 구별한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즉 귀족사회소수 엘리트를 상대로 한 작가와 평민대중을 상대로 한 작가의 구별이다.

이 구별의 원 뜻, 클라시쿠스가 학교의 반(Class)으로 “학교에서 공부할 만한 훌륭한 모범적 서술”로 이해되었다. 그후 르네상스에는 그리스나 로마의 모범적 작품을 잘 모방한 작품도 ‘클라식하나’라는 형용사를 붙이기 시작 했고, 그후 그리이스와 로마의 문화적 정신, 형식, 주제 또는 소재가 잘 다루어진 작품을 클라식하다고 하기 시작했다. 또한 여러분야에도 확산되었다.²³⁾

즉 고전이란 문학에서는 우수한 질적가치와 영향력면에서, 문학사 측면에서 모범적 위치가 인정된 작품이란 뜻이다.

건축에서 언어의 측면이 등장한것은 언어의 틀이 곧 인간이 생각하는 틀을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언어의 체계를 빌어 인간의 사유(思惟)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건축에 관한 인간의 생각도 결과물로서는 건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그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가 지닌 생각으로부터 퍼져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밝히기 위해 언어라는

용어를 내세우게 된다.

통상적으로 인간은 언어를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한다. 즉 말과 그말이 가르키는 모든대상이나 의미를 포함한 하나의 개념으로서 지니게 된다.

섬머슨이 이 책을 쓴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고전적 건축의 언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낀 탓이리라. 그뒤 브르노 제비의 “건축의 근대적 언어”는 섬머슨의 뒤를 이어 이탈리아에서 발간된 책이다.²⁴⁾ 그는 “수세기를 거치는 동안에 오직 하나의 건축언어만이 성문화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고전주의의 건축언어”라고 했다. 그러나 브르노 제비의 눈에는 근대건축의 태도는 고전적 건축언어와는 다른 것으로 비쳤다.

“오늘날 그 누구도 고전적 규범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회와 문법 또는 우리시대의 언어의 문장구조도 모르는채, 디자인을 하는 건축가와 건축학도들이 수 없이 많다……. 가장 중요하고 도전적인 건물에 의거하여 건축에, 근대언어에 일련의 ‘불변수’를 설정하기 위해” 그책을 썼다.²⁵⁾

그런가 하면 콜린 로우는 이때 고전적 건축과 근대건축이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 있었다. 콜린 로우는 고전적 건축과 20세기 거장들의 작품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음을 환기시켰고, 고전과 근대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였다.²⁶⁾

건축비평가 찰스 젠크스트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장 잘 정의한 사람중의 하나다. 그는 ‘포스트 모던 건축의 언어’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용어는 역사적 유산, 지역적 맥락, 은유, 공간의 모호성, 그리고 건축언어학에 관한 지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하여 설계된 혼합적이며 ‘복합적’인 건축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미국이나 유럽에서 과거의 전통이나 형식이 그대로 혼합되어 드러나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건축에는 언어와 공유되는 여러가지 유사성이 있으며, 우리가 만일 그말을 임의대로 쓴다면 건축적인 ‘어휘’(Words), ‘구문’(Phrase), ‘통사론’(Syntax) 그리고 ‘의미론’(Semantics)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²⁷⁾ 건축적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으로 은유(Metaphor), 어휘(Words), 의미론(Semantics)을 설명한다. 젠크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어휘(Words)에 대해서는, “언어적인 유추를 완벽하게 하려면 우리들은

유니트(Unit, 단위)를 건축적인 어휘라 불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어휘들: 즉 문, 창문, 기둥, 격벽, 캔틸레바등등-의미를 정의하는 건축사전이 있다.”²⁸⁾

통사론(구문론, Syntax)에 대해, “소위 건축의 통사론- 즉 문, 창, 벽 그리고 그밖의 요소들의 여러가지 어휘(Word)를 한데 조합시키는 법칙-을 창조해 낸다.”²⁹⁾ 의미론(Semantics)에서는 정의는 없고, “서로 다른 건축 양식들이 복고되던 19세기에는 각건물 유형에 사용된 양식들에 대해 설명하는 의미론의 정당하게 일관된 교리가 있었다.”³⁰⁾

아이젠만의 언어에 대한 접근은 놔 촌스키의 ‘변형생성이론’에서 시작되어 ‘변형’의 개념으로 초기작품의 이론적 근거를 잡았다. 이 ‘변형’은 또한 해체비평의 용어 ‘디컨스트럭션’과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한다.

건축에서 동원되는 문학과 문학비평의 개념은 어느선까지 가능한가? 건축에서 텍스트는 무엇인가? 오래전에 간델조나스는 ‘건축과 기호론의 한계’를 썼었다. 우리에게 텍스트는 무엇인가? 아이젠만이 해체해버린 대상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용어에 대한 동의없이 행해지는 비평이란 무책임한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

언어에 대한 우리의 사용태도는 3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 한다.

첫째는 건축에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글에서 사용하는 비유의 기법들-직유, 은유 혹은 기타 비유방법을 직접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이 건물은 유리로 된 상자 같다”고 말할 때는 직유(Simile)를 사용한 것이다. 직유란 두개의 뚜렷하게 다른 사물들 사이의 비교가 “-처럼”이나 “-같이”라는 낱말로 드러난다.

“이 두꺼운 종이로 만든 상자가 그 건축적 의미로서……” 등으로 이야기 했다면 은유(Metaphor)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은유란 비교가 아닌 동일한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또 “나는 라이트를 읽어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환유(Metonymy)를 사용한 것이다. 라이트라는 말은 건축가 라이트의 작품과 책에 나타난 라이트의 생각과 태도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즉 그의 책과 작품을 읽고, 보아서 건축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만약 우리가 뉴욕에서 활동하는 5명의 건축가를 가르켜 “뉴욕 화이브”(New York Five)라고 할때, 우리는 제유(Synecdoche)라는 기법으로 마이어, 아이젠만, 파쓰미, 그레이프스, 헤이덕등의 건축가를 통칭해 부르는 것이 된다.³¹⁾

둘째의 언어사용에 대한 태도는 철학적 전제로서 언어연구에서 파생된 구조주의 방법론을 이용해, 즉 “구조”라는 틀로 (건축공학의 의미로서 구조에서 확장되어 쓰이고 있는 용어로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것에서 확장된 것으로서) 실제 건축형태가 갖는 의미나 그 건축형태에 담긴 건축가의 또는 사회의 이념(이데올로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될 경우다. 이때는 구조주의라는 철학적 방법론으로서, 또 기호론의 체계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세째의 언어이용의 방법은 건축(또는 공간이)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말이나 글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비교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즉, 이것은 그 다음의 논의를 어떻게 전개하기 위하여 어떤정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쓰인다.

어휘론(Vocabulary : 건축이나 공간의 소재와 이의 활용에 대한 이론)

통사론(Syntax : 건축이나 공간의 구성 기법이나 문법, 구문론은 이전 용어)

형태론(Morphology : 어떤 어휘나 통사론으로 이루어져 완성된 건축이나 공간의 완성된 형태에 관한 이론)

의미론(Semantics : 건축이나 공간의 의미-실용적, 상징적 의미에 관한 체계)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파생된 용어로는

유형론(Typology : 기존 형태들의 원형과 그 변형, 기원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할 경우의 이론)

등을 들 수 있다.

아이젠만의 건축형태에 관한 태도로는 세가지 방법중에서 두번째의 태도로 구조주의에서 진행된 비평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근대건축운동(모더니즘)의 대표적 형태로서 코르뷔제의 도미노 구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구조가 담고있는 시대정신을 해체해서 바라 보고자 할 때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

아이젠만은 코르뷔제의 형태속에서 벽을 해체했고, 즉 작은 기둥과 그에 첨가 되는 판벽으로 나누었다. 서구의 건축에서, 르 코르뷔제의 가르슈주택(1927년) (사진45, 46) 이나, 팔라디오의 발콘테타주택(1558년) (사진47, 48) 이나, 체사레 차타네오의 체르노비오주택(1939년) 에서(사진49) 어떤 공통된 구조를 보았다면(표층구조) 이로부터 계속적인 작업을 통해 더 깊은 틀(심층구조)을 보려(분해) 했다. 분해와 변형작업이 시각적으로는 축 또는 좌표전환이나 벽과 기둥이 혼재된 형태의 해체를 통해 기하학적으로 나타났다. 이 작업을 통해 아이젠만은 20세기의 대표적 건축가중의 한 사람으로 남고자 한다. 그리고 다른 파트너와 함께 다양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의 대표작을 기다릴려면 '변형자체' 보다 '멈춰선 변형'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

건축가가 타분야에 관심을 늘리게 된 것을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960년대 미국의 AIA에서 내건 "광범위한 건축 서비스"라는 슬로건이 젊은 건축가에게 전통적인 건축의 작업반경을 넘어 확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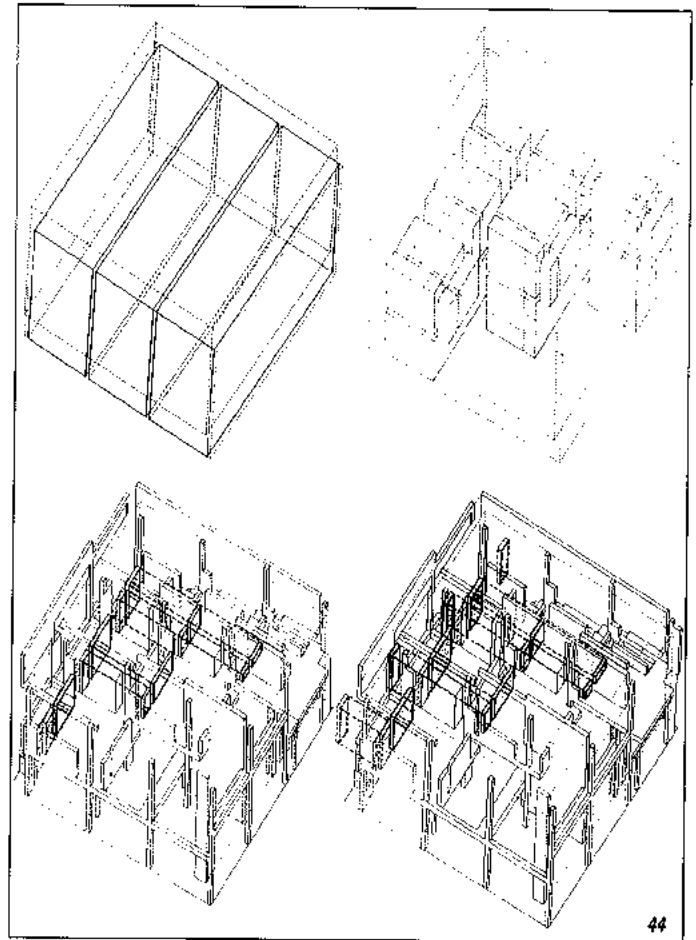
그때의 AIA의 요구사항은 단적으로 "우리의 실무진은 건축가, 사회학자와 심리학, 통계학, 컴퓨터 모의실험, 프로그래밍, 사회조사, 도시설계, 법학등의 전문가들" 이라고 나타났다.³²⁾

이러한 여파로서 언어학과 구조주의의 관심이 확산되었다. 초기에 건축에 기호론을 도입할 당시, 많은 논쟁이 있었다. 소쉬르의 기호론은 건축에 도입하기에 필수적이고, 그의 다양한 개념은 건축을 포함한 신호의 체계들로 언어로서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소쉬르는 2분법으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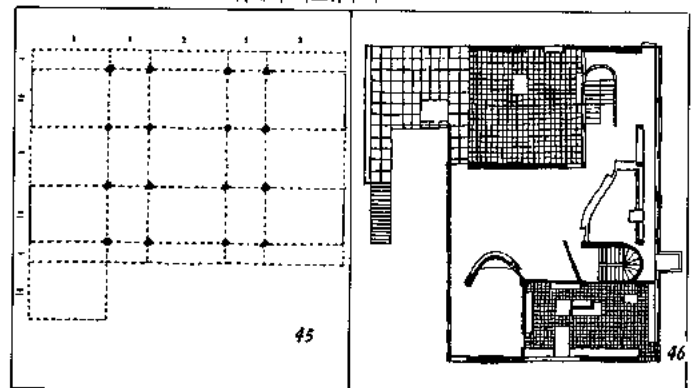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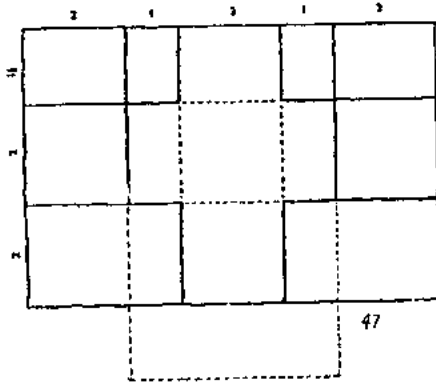
주택 2호 전경 ▲

▼ 주택 2호 변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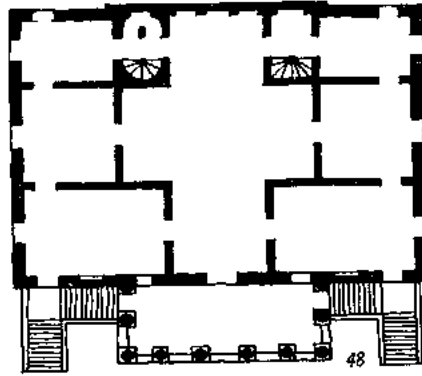


▼ 르 코르뷔제의 가르슈주택





▲ 팔라디오의 말콘테르주택



▲ 체사레 차타네오의 체르노비오 주택

하기 좋아했다. 그는 모든 것을 대립되는 두개의 개념으로 파악했다.³²⁻¹⁾

소쉬르가 언어의 공식적 구조에서 고려하는 기법은 모든 여러 분야로—시작은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으로부터—확대되었다.³³⁾

b. 언어학과 기호론

19세기 말에 미국의 철학자 피어스는³⁴⁾ ‘세미오틱’ (Semiotik) 이라고 부르는 연구체계를 수립했다. 소쉬르³⁵⁾도 그의 책 ‘일반언어학강의’ (1915년) 에서 스스로 ‘세미올로지’ (Semiology) 라고 이름 붙인 하나의 과학분야를 제안했다.

그 이후로 기호론(세미오틱스나 세미올로지)은 인간의 모든 분야에서 작용하는 기호에 관한 일반 학문으로 알려져 왔다. 즉, 언어, 모尔斯 부호, 교통표지나 신호등은 의사소통의 기호 (Signs) 로 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세와 몸동작, 우리들이 행하는 사회의식, 입고 있는 옷, 대접하는 식사, 살고 있는 건물들—이 모든 것이 어느 특수한 문화의 집단들에게는 공통된 ‘의미’ 를 전달하며,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의미체계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피어스는 ‘표시하는 것’ 과 ‘표시되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 세가지로 나누었다. 즉, 아이콘 (Icon) 과 인덱스 (Index) 와 상징 (Symbol) 등이다.³⁶⁾

이 ‘표시하는 것’ 과 ‘표시되는 것’ 의 관계로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아이콘 (Icon) : 초상화와 실재인물, 지도와 실제 그 지형과의 관계처럼 유사하거나 비슷한 특징으로 맺어진 신호체계를 가르킴.
- (2) 인덱스 (Index) : 우연히 맺어진 기호의 관계. 예로 연기는 불을 가르키는 표시이고, 바람개비의 방향은 곧 바람의 방향인 것과 같은 관계.
- (3) 상징 (Symbol) : 자연적인 것이 아닌, 순전히 사회적인 관습에서 비롯된 신호와 그 신호의 의미와의 관계. 악수를 하면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환영한다는 관습적 기호 같은 것.³⁷⁾

c. 언어학과 구조주의

시대에 따라 발전하던 언어학은 품사, 발음, 어휘, 언어변화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비로서 언어학이 탄생된다. 즉 보조학문이 아닌 언어학으로 자립하게 된다. 언어에 대한 획기적 선언은 소쉬르에 의해 “체계”로서 파악한데서 비롯된다. 이 체계가 프라그 언어학과에 의해 “구조”로 대체되면서 구조언어학의 체계가 발전된다.³⁸⁾

구조란 무엇인가? 구조의 어원은 라틴어 (Structura, 건조하다) 에서 파생되어 건조물, 건축물을 의미하였다. 이 뜻은 여러 분야에서 넓혀졌고, 후에 철학적 추상용어로 쓰인 구조는 용법이 다양하게 쓰였다.³⁹⁾

“서로가 서로에 의존하고 서로의 상호관계에 의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연대적 현상으로 이루어진 총체 또는 전체”로 파악되었다.

구조주의에서의 구조의 연관개념으로 모델 (Model) 이 있고, 피아제의 전체성, 변환, 자동제어 등의 개념이 있는데 아이젠만은 변환 (Transformation) 의 개념을 그의 작품설명에 등장시킨다. 그 발단은 미국의 농 촌스키의 “변형생성이론”에서의 ‘변환’ 에서 비롯되었다.

“구조는 실재를 살아있는 것으로 하므로 죽은 것이 아니다…… 변환은 구조화의 과정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구조는 단순히 구조화되는 수동적 수준에 있지 않고, 변환의 절차를 밟아 오히려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것의 관계로서 전체성, 자동제어, ……”⁴⁰⁾

구조주의는 종래의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이라는 분류를 넘어서, 통틀어 인간문화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과학에서, 그러한 내부구조를 파악하므로써 사상 (事象) 을 일관성있게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의 하나의 조작개념이다. 프랑스에서 1960년대 폭발적 유행사조로 시작된 구조주의는 인간에 관한 여러 과학에 있어서, 인간의 전체성에 대한 전망 없이는 새로운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아래 인문과학의 역할축소와 관리, 기업가, 기술자 등의 실무적 지식인층의 등장으로, 인간을 위한 지식이 아닌 지식을 위한 인간의 측면으로 전락하게 된 국면을 맞는다.⁴¹⁾ 이때에 “인간의 회복”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며, 인간상실에

대한 절망과 인간해방에 대한 낙관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친 서구인들은 이제 자기들의 척도만으로 세계의 모든지역의 문제가 가능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의 집중된 표현이 스펜글러의 “서양의 몰락”,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다니엘 벨의 “이데올로기의 종언” 등이다.

다시말해서, 종래에는 서구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미개민족은 일정한 단계를 거쳐 조만간 구라과처럼 발전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역사가관이 이제야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게된 것이다.

이러한 반성에 선구를 이룬것이 소쉬르의 “일반언어학 강의”(1916년)를 기점으로 한 구조주의의 대두였다. 이러한 새로운 태도는 프랑스에서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체코의 프리그 언어학과, 덴마크 코펜하겐학파로 이어졌다. 그후, 레비스트로스에 의해 구조언어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민족학적, 문화인류학적 대상에 원용되어 친족관계, 근친론 및 토착현상등의 원초적 인간문화현상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했다. 레비스트로스는 1940년부터 남미의 원시부족에 대한 현지조사에서부터 구조주의적 연구를 진행했다.⁴²⁾

d. 해체비평과 건축비평

비평은(Criticism)은 문학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종류가 있다.

- (1)이론비평(Theoretical-) : 일반적 원리에 기초하여 작품의 고찰과 해석에 적용되는 비평.
- (2)실제비평(Practical-) : 적용비평(Applied-)이라고도 하며 특정작가와 작품에 대한 논의.
- (3)인상비평(Impressive-) : 부분이나 전체 작품에서 느낀 바를 제시하여, 비평가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킨 반응들을 표현하는 것.
- (4)입법적비평(Judicial-) : 주제, 조직, 기법, 문체등으로 작품의 효과를 어느정도 전달되는지 분석하여 설명하는 것.
 - (a) 모방비평(Mimetic) : 작품은 세계와 인간생활을 모방하여 반영하고 재현하는 것으로 보고, 그 재현의 진실성에 기본을 두어 비평함.
 - (b) 효용비평(Pragmatic) : 독자에게 효과를 주기위해 작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그 성취도를 판단하는 비평.
 - (c) 표현비평(Expressive) : 작품을 작가와의 관계에서 취급하여 작가의 의도가 얼마나 잘 표현되었는가를 파악한다.
 - (d) 객관적 비평(Objective) : 작품과 독자등 주위세계로부터 떨어진 존재로 접근하여 그 작품의 내재적 기준에 의해 비평하는 것.⁴³⁾

1920년이후 많은 비평가들의 접근방법인 객관적 비평은 작품을 시인, 독자, 주위세계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떨어져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보고 그에 접근한다. 이것은 문학작품을 자기 완결적인 대상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라고 기술하고, 따라서 작품은 복잡성, 일관성, 균형, 총체성 및 구성요소들의 상호관계등과 같은 ‘내재적’ 기준에 의해 분석되고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축비평의 종류로서 ‘건축학 개론’⁴⁴⁾에는

- (1)규범적 비평(Normative-) : 원칙, 체계, 형식 또는 측정에 의한 비평.
- (2)해석적 비평(Interpretive-) : 개인적 해석에 기초를 둔 비평.
- (3)서술적 비평(Descriptive-) : 판단과 해석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또는 관련된 것끼리의 상호작용에 또는 건설과정에 대한 묘사.
- (4)전기적 비평(Biographical-) : 건축가의 생애와 건축에 끼친 그들의 영향 등으로 나누었다.

문학에서의 ‘객관적 비평’은 20년대 이후 중요한 비평가의 접근방법이었다. 신비평, 시카고학파, 유럽 형식주의의 지지자들, 프랑스 구조주의자들이 이러한 노선에 따른다. 신비평은 미국비평계의 주된 경향으로 작가의 생애와 심리나 문학사의 관심보다는 작품을 작품자체로서 비평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 태도는 (1)작품을 작품자체로서 분석하고, (2)특정적 절차는 정확히 읽는 것으로서 한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복합적 상호관계와 애매모호성을 상세하고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구조주의 비평은 위의 모방비평, 표현비평, 신비평 등을 반대한다.⁴⁵⁾

미국의 신비평과 프랑스 구조주의 비평가들은 그 대상을 다르게 본다.

신비평에서는 문학작품을 텍스트(Text)로 보고, 프랑스 구조주의 비평가들은 저작(Writing, Ecriture)라고 보고 있다. 텍스트란 능력있고 감수성 있는 독자면 누구나 페이지를 읽으면서 접근할 수 있는, 공적인 의미를 부여받은 자율적 언어대상이라고 생각했다.

저작(Ecriture)은 사회관습의 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저작이 된다는 것은 특별히 문화적 관습과 약호들의 집합체라는 사실에 있다.⁴⁶⁾

구조주의 비평은 현대언어학적 이론의 모델에 입각하여 작품을 분석하는 비평가들의 작업을 가르킨다. 구조주의는 어떤 문화적 현상, 활동 또는 문학을 포함한 결과물들을 내적 상호작용의 독자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적제도 또는 ‘의미체계’로 본다.

구조주의 비평은 문학에서 2부류로 나누는데 (1)통사론의 모델로 분석하는 경우와 (2)작가와 독자의 무의식적 관습들과 결합된 조직체계로 보고 ‘무언의 문법’을 찾는다.

문학은 저자와 독자간의 의사교환의 방식이라는 어떤 견해도 반대한다.⁴⁷⁾

텍스트가 그 자신의 구조, 통일성, 한정된 의미를 확립해 주는 적절한 토대들을 그것이 전개하는 언어 체계속에 갖고 있다는 절대적인 주장을 뒤엎고 나온 비평으로서 등장한 것이 해체비평(Deconstruction)이다.

즉, 소쉬르에 바탕을 둔 구조주의 기호학에 바탕을 두면서, 그 목적은 소쉬르의 체계와 구조주의 자체 모두의 토대들을 무너뜨리는데 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문학비평의 이론과 실체가 풍부하게 산출되었다.

20세기 중반에 문학에서 비평적 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비평가 블룸(Bloom)의 “영향의 불안”에서 비롯된다. 비평가들은 어느 작가가 후대의 어느 작가에게 미친 영향을 다루어 왔다.

이 영향은 “앞선 작가들에게서 발견되는 소재나 특질들을 후대의 작가들이 직접적으로 ‘발견’하거나 흡수하는데” 있다는 표준이론”을 과감하게 수정한 이론이다. 후대작가들은 불가피하게 선배작품에 대해 엄청난 왜곡을 포함 한다는 것이 “영향”이라는 개념이다. 따라서 후대작가의 선대작가에 대한 감정은 선대작가가 상상적 여유를 이미 모두 사용해 버리고 난 빈부분을 후대에게 던져주므로서, 선대작가에 대해 중요, 시기, 공포들도 같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모든 해석은 “필연적 범죄행위”이고 “독서는 그러므로 범죄행위 혹은 오독이다.”⁴⁸⁾

독서는 자유를 억압하는 온갖 제약에서 벗어나 창조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텔 켈 그룹(Tel Quel 평론지)의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를 위시해서 실천자인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등에 의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자크 데리다의 가장 설득력 있는 몇몇 에세이들은 ‘구조’라는 개념의 해체를 그 임무로 삼고 있다. ‘구조’는 텍스트의 의미의 놀이(Play of meaning)를 고정되고 다루기 쉬운 나침반으로 환원해 버리기 때문이다.⁴⁹⁾

5. 아이젠만에 대한 견해

건축과 언어와의 관계를 필요이상으로 길게 설명했다. 건축에 관한 문제에 언어의 측면을 도입해서 그것이 건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된 일이다. 건축은 언어라는 가정이 성립되어야만, 기호론을 도입해 건축의 과정이나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그 과정이 성립할 때 문학비평의 건축에의 도입이 또한 성립될 것이다. 최근에 건축비평분야에서도 데리다의 해체비평(또는 탈구조)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건축에서의 텍스트가 성립이 되고 난 뒤의 일일 것이다.

아이젠만의 언어에 대한 접근은 노 촌스키의 ‘변형생성이론’에서 시작되어 ‘변형’의 개념으로 초기작품의 이론적 근거를 잡았다. 이 ‘변형’은 또한 해체비평의 용어 ‘디컨스트럭션’과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한다.

건축에서 동원되는 문학과 문학비평의 개념은 어느선까지 가능한가? 건축에서 텍스트는 무엇인가? 오래전에 간델조나스는 ‘건축과 기호론의 한계’를 썼었다. 우리에게 텍스트는 무엇인가? 아이젠만이 해체해버린 대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용어에 대한 동의 없이 행해지는 비평이란 부책임한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런 경고는 문학비평에 관한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이다. 이것은 아이젠만을 두고 한 이야기라기 보다, 일반적으로 건축을 다른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을 빌어 설명하는 경우에 우리가 부닥칠 위험에 관한 경고일 것이다.

서구에서 앞서가는 이론적 건축가들은 새로운 용어를, 새로운 개념으로 독립시켜 이론화한다. 건축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다른 분야에 대해 우리는 효과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 그 과정이 한국의 우리에게도 효과적인지 의심스럽다.

앞으로 어떤이론이 우리를 당황하게 할 것인가?

한편으로, 지나친 이론은 당신의 건강한 건축설계를 해칠지 모른다. 지나친 이론은 삼가하되 우리자신의 모습은 냉정하게 바라보자.

■ 註

- 1) 건축문화, 83:06, 로버트 스턴, “포스트 모더니즘은 오해되고 있다” p. 68.
- 2) C. Ray Smith, “Supermannerism: New Attitudes in Post-Modern Architecture”
- 3) “Five Architec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p. 7.
- 4) Kenneth Frampton, “Frontality vs. Rotation” “Five Architec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 5) B. J. Archer (ed), “House for Sale”, New York: Rizzoli. 1980. p. 17.
- 6) The Architects Collaborative의 약자로 월터 그로피우스의 사무실 조직.
- 7) “The new city: architecture and Urban Renewal”,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1967. Design Project for Manhattan Waterfront with Michael Graves.
- 8) “Modern Architecture 1919~1939: Polemics” Princeton University Library, Princeton, New Jersey. 1968.
- 9) “New Urban Settlement: Analytical Phase” The Institute of Architectural and Urban Studies.
- 10) “FIVE ARCHITECTS”, George Wittenborn and Company. New York, 1972. Section on “Cardboard Architecture I” and “Cardboard Architecture II”
- 11) Frank Residence. G. A. Document Special Issue 1970 ~ 1980. p. 172
- 12) “Another Chance for Housing Low-Rise Alternatives”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1973. (3. p. 244)
- 13) 로버트 스턴, 에일세미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오해되고 있다”, 건축문화 83: 06, p. 67.
- 14) “House of Cards”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3
- 15) Firehouse for Engine Company 223. Ladder Company 176
- 16) The OSU Center for the Visual Arts.
- 17) I. U. A. S. : The Institute of Architectural and Urban Studies. 아이젠만이 세운 건축학교로 그의 사무실도 된다.
- 18) “Five Architec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p. 15.
- 19) Johnson, Postscript. 1974. 4. 1. “Five Architec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 20) Hermeticism: 아이젠만의 이론의 화려함을 가르킨 말로 생각됨.
- 21) The Classical Language of Architecture, 1963년
- 22) John Summerson, “The Classical Language of Architecture”. 1장
- 23)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민음사. 1976년. pp19~21
- 24) Bruno Zevi, “The Modern Language of Architecture”. 1973년.
- 25) Bruno Zevi, “The Modern Language of Architecture”. 1973년.

- 26) Colin Rowe, "The Mathematics of Ideal Villa and Other Essays"는 윤재희, 지연순공역, "근대건축론집", 서울: 세진사, 1986. 으로 번역되었음.
- 27) C. Jencks,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London, Academy Edition.
- 28) 앞책 p. 52
- 29) 앞책 p. 52
- 30) 앞책 p. 64
- 31) 권택영, 최동호 번역,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새문사, 1985년, pp117~121.
- 32) C. Ray Smith, "Supermannerism: New Attitudes in Post-Modern Architecture" pp.13~14
- 33) 즉 언어(Language)와 개인언어(Speech)로 나누었다. 언어란 사회적 제약에 의해 여러사람에 의해 동의된 말이며, 개인언어란 공용의 언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 소쉬르의 분류에 의하면 통시적언어(Diachronic Language)와 공시적언어(Synchronic Language)로 나눈다. 통시적언어는 언어를 역사적 변천에 따라 종적으로 그 용법의 차이등을 기술, 연구하는 입장이며, 공시적 언어는 언어의 전체구조나,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상호체계를 특별한 시점에서 관심을 두는 것이다.
- 34) Charles Sanders Peirce
- 35) Ferdinand de Saussure
- 36) 권택영, 최동호 번역,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새문사, 1985년 (6, p54)
- '표시하는 것'(시니피앙, 기표, 능기, 기호표현)과 '표시되는 것'(시니피에, 기의, 소기, 기호내용) 등으로 쓰인다. 능기(能記)와 소기(所記)는 일본학자의 번역이고 국내에서는 기표-기의(記表-記意), 시니피앙-시니피에 등으로 쓰인다. 외국에서 표현과 내용으로 쓰이기도 하나, 혼동을 우려하여 기호표현-기호내용으로 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표시하는 것'-'표시되는 것'으로 하겠다.
- 37) 권택영, 최동호 번역,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새문사, 1985년, pp. 55~56
- 38) 소두영, "구조주의", 서울: 민음사, 1984.
- 기원 4세기 언어고찰의 최초기록. 산스크리트어의 정확한 기술을 위한 지침서. 그리스 언어 연구는 철학자들의 언어에 대한 연구, 문학원전의 주석연구로서 어원론, 음성학, 형태론등이다. 중세의 라틴문법가들의 연구는 수사학 연구에 집중. 10세기이후 일반언어 이론적 연구. 13세기 언어는 사물과 관련되어 정의되어야 한다는 최초의 관점의 대두. 그뒤 민속학, 인류학연구로서 오래된 기록, 모리명의 글자를 읽는 문헌학의 필요성이 대두. (1)옛 원전을 읽어 의미를 파악하는 (2) 글의 배경이 되는 문화, 환경을 이해하는, 두 태도가 있고 파생된 것이 원전 비평(Critique Textuelle)이다.
- 39) 소두영, "구조주의", 서울: 민음사, 1984. pp83~84
- 구조의 뜻은 (1-1) 어떤 구조물이 구성되는 양식. (1-2) 더 넓은 의미로는 건축기술 및 조형미의 전지에서 본 건축물의 부분의 배경. 17-18세기에는 생물에 비유되어 (2)공간적인 어떤 구체적인 총체가 그 부분으로, 조직으로 그리고 그 사물의 요소가 나타내는 관찰 가능하고 분석가능한 형태로 접근되는 양식의 뜻으로 쓰였다. 더 나아가 화학, 물리학에 원용되어 (3)어떤 총체의 서로 다른 부분 또는 일관성이 있는 부분점의 집합. (예컨대 원자구조등), 19세기 스펜서, 모건등의 영향으로 사회과학에서(4)어떤 추상적인 모형, 어떤 현상, 어떤 복합적인 체계를 그 총체의 지속적이고 특징적인 것으로 일반적인 접근을 했을 때, 그 부분들의 배경(사회구조따위). 후에 철학적 추상용어로 쓰인 구조는 용법이 다양하게 쓰였다.
- 40) 소두영, "구조주의", 서울: 민음사, 1984. pp86~94
- 41) 2차 세계대전후의 전후민주주의에의 의욕과 이른바 사회주의에 대한 절망의 표현으로서, 1968년 5월혁명론 프랑스에서의 전통적 대학제도의 개혁운동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난동과 경찰의 강경한 대처가 시민, 지식인, 기술노동자의 가세를 유발시켜 드공체제를 위협했다. 노동자계급과 이에 기반을 둔 노동조합이나 정당에 오히려 보수화되고, 장래 중견기술자나 지식노동자가 될 학생들이 도리어 급진화하여 증산증자제들이 파괴화하거나 반체제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이 이때의 상황이었다.
- 42) 소두영, "구조주의", 서울: 민음사, 198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과 한국학", 보고논총 83-1, 1983. p. 240
-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 구조주의를 제창해 60년대 세계학계에 "방법론" 과문을 던졌던 세계적인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그에 대해 특별히 설명하는 이유는 구조주의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점에도 연유하지만, 그가 한국에 와서 우리에게 던져준 의문에 큰 의의를 두기 때문이다.
-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는 한마디로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는 사회현상은 그렇게 만드는 '미지의 구조'가 있는데 이것을 찾아 내는게 학문의 할 일"이라는 것이다.
-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멀리에서 관찰해야 하며, 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p. 221)
- 서양문화에서의 증용의 개념. 모순된 두개념을 위해 긴장과 평형을 유지하는 개념으로서 증용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p.225.)
- "서양의 지성사에서, 특히 유대기독교의 영향으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유일한 가치있는 존재라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을 나는 반대합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인간 이외의 사물들과 존재들은 인간만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서양의 불락과 황폐를 가져오는 유대, 기독교적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난천 인간중심주의적인 서양의 휴머니즘을 경계하며...(p.237.) 우리문명의 약점은 우리와 자연과의 접촉과 연계를 잃어버린 것이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모든 동물과 식물의 종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미개사회라고 부르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자연속에서의 위치는 다른 동물의 종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사고가 아니고, 인간현상을 연구하는 한가지 방법일 뿐이다. (p.247)
- 구조주의를 동양인은 오히려 쉽게 이해해 왔으며, 또 동양사상과 구조주의는 사실상 공통점이 많다고 귀하는 쉽게 주장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점에서 구조주의는 서양사고의 전통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인류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각 문화지역의 종합적인 이념체계에서 온 것'이라고 레비스트로스 박사는 주장했다. (p. 278)
- 43) 권택영, 최동호 번역, 앞책, pp122~124
- 44) J. C. Snyder and A. J. Catanese 저,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pp34~38
- 45) 권택영, 최동호 번역, 앞책, p. 224.
- 46) 앞책, pp242~243.
- 47) 앞책, pp36~37.
- 48) 앞책, pp270~271.
- 49) 크리스토퍼 노리스저, 이기우역, "다윈스트럭션: 탈구축의 이론과 실천", 전주, 도서출판 인동, 1986. p. 11.
- 50) A+U: 1980: 01
- 51) P/A. 1977: 06
- 52) P/A. Annual Awards
- 53) Thomas A. Sebeok (ed), Encyclopedic Dictionary of Semiotics, Berlin: Mouton de Gruyter. 1986. (Tome 1, 2, 3)
- 54) G. Broadbent, R. Bunt, C. Jencks (ed), "Signs, Symbols, and Architecture": John Wiley & Sons, Chichester, 1980. pp. 1
- 55) 모든 방점은 필자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

1988. 1. 6

■ 개정 이유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내진설계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종전의 구조기준의 체계를 실제 구조계산순서와 부합되도록 재편성하며, 기초구조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 가. 건축물의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의 종류에 지진하중을 추가하고, 동지진하중의 산정방법을 정함(영 제9 조제 1 항 및 영 제14조).
- 나. 구조계산순서와 부합되도록 하중 및 외력에 관한 규정을 종전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규정앞에 두도록 함(영 제2 장).

제1 장 총 칙

제1 조 (목 적)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허용응력도 기타 구조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적용범위) 건축물의 구조설계의 방법과 구조계산 등의 기본이 되는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그에 의할 수 있다.

제3 조 (정 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 간박이벽의 하중산정방법을 정함(영 제10조제2 항).

라. 파라펫·발코니·계단등의 손스침부분에 작용하는 수평하중기준을 정함(영 제11조제4 항).

마.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의 종류를 최저강도(제곱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만을 정함(영 제50조제2 항).

바. 구조내력상 주요한 보의 구조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52조).

사.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내력벽의 구조기준을 정함(영 제54조).

아. 기초구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68조제7 호 제70조)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사재(가새·버팀대·귀잡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의 구조부재로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자중·적재하중·지진하중 기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부분을 말한다.

2. "내수재료"라 함은 벽돌·자연석·인조석·콘크리트·아스팔트·도자기·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이 있는 건축재료를 말한다.

3. "주요구조부"라 함은 법 제2 조제7 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4. "응력"이라 함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휨모멘트·전단력·비틀림 기타 이와 유사한 단면력을 말한다.
5. "허용응력도"라 함은 구조부재를 구성하는 각 재료의 하중 및 외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재단면의 각부에 생기는 응력도가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한계응력도를 말한다.
6. "구조내력"이라 함은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인 구조부재와 그 결합부등이 전달 수 있는 응력을 말한다.
7. "밀면"이라 함은 지진동이 건축구조체에 전달되는 위치로서 구조체가 지면과 직접 접하는 지반표면의 부위를 말한다.
8. "내력벽 방식"이라 함은 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9. "모멘트연성골조방식"이라 함은 횡력에 대한 저항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재와 접합부의 연성을 증가시킨 모멘트골조방식을 말한다.
10. "이중골조방식"이라 함은 횡력의 25퍼센트 이상을 부담하는 모멘트연성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골조방식을 말한다.
11. "모멘트골조"라 함은 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라멘골조가 저항하는 방식을 말한다.
12. "전단벽"이라 함은 벽의 면대로 횡력을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방식을 말한다.
13. "가새골조"라 함은 트리스방식으로서 주로 축방향응력을 받는 부재로 구성된 구조방식을 말한다.
14. "충간변위"라 함은 인접층 사이의 상대수 평면변위를 말한다.
15. "충진진하중"이라 함은 밀면전단력을 건축물의 각 층별로

분포시킨 하중을 말한다.

16. “비구조부재”라 함은 차양·장식탑·비내력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구조해석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구성부재를 말한다.

17. “습윤상태”라 함은 골재의 내부에 물이 포화되어 있고 표면이 물에 젖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18. “지압력”이라 함은 접촉되어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 압축력이 작용할 때 그 접촉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말한다.

19. “세장비”라 함은 압축재에 있어서 좌굴길이를 단면의 회전 2 차반경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0. “내력벽”이라 함은 서로 이웃하여 맞붙은 2개의 다른 벽(부축벽이 있는 경우 그 높이가 부축벽이 접합되는 벽높이의 3분의 1이상인 때에는 그 부축벽으로 나누어지는 양측의 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1. “벽”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 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22. “가동”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축압축 하중을 주로 지지하는데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23. “경량골재”라 함은 기건상태일때의 무게가 1세제곱미터당 1.1톤 이하인 가벼운 골재를 말한다.

24. “구조용 강재”라 함은 원형강·형강·강판·경량형강·강판·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서 구조용재로 쓰이는 강재를 말한다.

25. “조합응력”이라 함은 휨 및 축방향력에 의한 응력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26. “유효단면적”이라 함은 인장재의 모든 단면적에서 편심의 영향이나 리벳·볼트등 접합에 의한 결손 단면적을 뺀 등가단면적을 말한다.

27. “한계세장비”라 함은 탄성좌굴과 비탄성좌굴의 경계를 나타낸 세장비를 말한다.

28. “국부압축”이라 함은

지점반력이나 집중하중에 의하여 웨브플레이트에 국부적으로 작용하는 압축력을 말한다.

29. “부분용입용접”이라 함은 완전 용입용접에 비하여 용입부분이 적은 용접을 말한다.

제 4 조 (구조설계의 원칙) ①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구조의 종별, 지반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기초·기둥·보·바닥·벽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지중·직재하중·적설하중·풍하중·토압·수압·지진하중 기타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이하 “내력부분”이라 한다)인 벽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력에 대하여 유효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구조는 그 지반의 부동침하·떠오름·미끄러짐·전도 또는 동해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 5 조 (구조부재의 강성 및 내구성)

① 건축물의 내력부분에는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순간적 파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성의 확보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내력부분으로서 특히 부식이나 닳아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조부재로 사용되는 복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기타 이와 유사한 함수성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재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6 조 (대규모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법 제11조제2항단서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강을 함으로써 그 구조의 안전이 확인된 때”라 함은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이 확인된 구조로서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7 조 (구조계산)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허용응력도 설계법에 의하거나 건설부장관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것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구조계산법에 의한다.

② 제 1 항의 허용응력도 설계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내력부분에 대한 구조해석은 제 9 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중 및 외력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2. 구조부재의 설계응력은 별표 1에 규정된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산정된 응력의 조합중에서 가장 불리한 값으로 한다.

3. 설계응력은 적재하중의 부분적인 재하에 의한 영향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지진하중은 지진력을 정적인 횡력으로 평가하는 등가정적해석법 또는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해석법에 의한다.

5.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설계응력으로 인한 구조부재 단면의 장기 및 단기의 각 응력도는 제16조·제50조·제58조·제67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각 허용응력도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내력부분인 구조부재는 변형 또는 진동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사용상의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하중 및 외력

제 8 조 (적용범위) ① 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 및 외력의 산정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다.

② 실제의 조사연구에 의하여

설계하중 및 외력의 산정을 할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하중 및 외력의 종류)

① 건축물의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과 같다.

1. 자 중
2. 적재하중
3. 적설하중
4. 풍하중
5. 지진하중

②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것 외에 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토압·수압·진동·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중) ① 건축물의 각 부분의 자중은 별표2에 의한다. 다만, 별표2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부분의 실상에 따라 산정한다.

② 간막이벽의 하중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간막이벽의 하중은 그 실제의 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간막이벽의 위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위치의 변경이 예상될 때에는 그 간막이벽 단위길이의 중량의 3분의 1이 되는 값이상에 해당하는 등가등분포 하중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실에 있어서 그 실의 적재하중이 제곱미터당 400킬로그램이상일 때에는 간막이벽의 하중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적재하중) ① 건축물의 각 부분의 적재하중은 별표3의 가란 및 나란의 값으로 한다. 다만, 별표3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상태에 따라 계산한다. ② 기둥 또는 기초가 받는 수직하중에 의한 압축력의 계산에 있어서는 별표3의 나란의 값에 당해 기둥 또는 기초가 받치고 있는 바닥의 수에 따라 별표4의 값을 곱한 값까지 줄일 수 있다. 다만, 별표3의 5란에 해당하는 거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창고의 경우에는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에 1제곱미터당 4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1제곱미터당 400킬로그램으로 하여야 한다.

④ 파라펫·발코니·계단등의 손스침부분에 대하여는 설계하중에 따라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터당 40킬로그램 이상, 기타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터당 80킬로그램 이상의 횡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높이 1.8미터 이상의 각종 내벽은 그 벽면에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제곱미터당 25킬로그램 이상의 등분포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가동성경량간막이벽 및 이와 유사한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적설하중) ① 건축물에 대한 적설하중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S = P \times Z_s \times C_s$$

S : 적설하중(킬로그램 / 제곱미터)

P : 눈의 평균단위중량(적설깊이 1센티미터당 킬로그램 / 제곱미터)

Z_s : 수직최심적설깊이(센티미터)

C_s : 지붕의 경사도 및 형상등에 따른 계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눈의 평균단위중량은 통상의 경우 별표5에 의하되, 중간값은 직선보간의 방법으로 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직최심적설깊이는 별표6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붕의 경사도 및 형상등에 따르는 계수는 별표7에 의한다.

⑤ 지붕면에 있어서 적설량이 부분적으로 집중 또는 편중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 적설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⑥ 풍하중 또는 지진하중과의 조합이 고려될 경우에는 적설기간에 따라 다음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설하중을 산정한다. 다만, 중간기간일때의 적설하중은 직선보간의 방법으로 구한다.

적설기간	1개월미만	3개월이상
계수	0	0.5

⑦ 건축물의 외벽은 직접 접하는 적설량으로 인한 축압의 영향이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 (풍하중) ① 건축물에 작용하는 풍하중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P = pA$$

$$p = C_q$$

P : 풍하중(킬로그램)

p : 풍압(킬로그램 / 제곱미터)

A : 건축물 또는 그 부분의

유효수압면적(제곱미터)

C : 풍력계수

q : 설계속도압(킬로그램 / 제곱미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풍압은 그 수압면에 대하여 직각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풍압은 설계속도압에 풍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풍압은

1제곱미터당 50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하며, 특히 내력부분에 대하여는 제곱미터당 80킬로그램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풍력계수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적설한 풍동실험에 의하여 풍력계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풍압을 받는 면에 대한 풍력계수는 그 풍상면측풍력계수에 실내압계수 또는 그 풍하면 측풍력계수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1. 외벽이 있는 밀폐형 건축물의 풍력계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에 대한 풍력계수는 그 단면형상에 따라 각각 별표8에 의하되, 경사지붕의 풍상면에 대한 풍력계수는 별표9에, 곡면지붕의 풍력계수는 별표10에, 곡면지붕의 풍상면의 풍력계수는 별표11에 의하며, 별표8 및 별표10에 표시되지 아니한 단면형상에 대한 풍력계수는 그와 유사한 단면형상의 외벽면 및 지붕의 경우에 준하는 값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건축물의 실내압계수는 ± 0.3 으로 하며, 실내압은 벽면과 지붕등의 전체 실내면에

- 균등히 분포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이 없거나 외벽의 일부가 개방된 건축물의 풍력계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가. 풍상측 또는 풍하측의 벽면이 개방된 경우 당해 건축물의 풍력계수는 별표 12에 의하되, 지붕면의 풍력계수는 별표 9에 의한다.
- 나. 독립지붕의 풍력계수는 별표 13에 의하며, 지붕면의 경사각도가 중간값일 때에는 직선보간의 방법에 의하여 풍력계수의 값을 산정한다.
3. 정사각형 및 정삼각형 단면의 래티스구조물의 풍력계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가. 각형부재일 때의 풍력계수는 별표 14에 의한다.
- 나. 원형부재일 때의 풍력계수는 별표 14의 각형부재의 값에 별표 15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 다. 정사각형 단면의 대각선방향의 풍향에 대한 풍력계수는 별표 14의 값에 $1.0 + 0.75\phi$ 를 곱한 값으로 한다. 다만, 중심을 ϕ 는 부재의 실제 수압면적을 구면의 외곽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 라. 정삼각형 단면에 대한 풍력계수는 풍향에 관계없이 별표 14에 의한다.
4. 굴뚝·탱크 및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서 정사각형·정다각형 및 원형단면을 가진 각종 공작물의 풍력계수는 별표 16에 의한다.
5. 지붕면의 돌레, 용마루 및 벽면의 모서리 부분등 건축물의 국부에 작용하는 풍압은 별표 17에 의한 국부풍력계수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국부풍압이 작용하는 폭은 그 수압면의 최소폭의 10분의 1이 되는 치수로하되, 3미터 이내로 한다.
6. 외장재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부분에 작용하는 풍압은 별표 17의 국부풍력계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속도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설계속도압은 별표 18의 값에 의하되, 해안에 직접 면하는 장소나 산정, 산의 능성, 절벽등 지형과 환경의 영향으로 특히 강풍의 작용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있어서는 별표 18의 값에 20퍼센트 이상을 증가시킨 값으로 한다. 다만, 별표 18의 값을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 $$q = G \cdot K_z \cdot q_0$$
- G : 가스트계수
 K_z : 속도압계수
 q_0 : 기본속도압(킬로그램 / 제곱미터)
2.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트계수는 다음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표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정밀한 방법에 의하여 따로 산정한 값에 의한다.

노풍도의 구분	가스트 계수(G)
A	2.00
B	1.50
C	1.25

3.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속도압계수 및 기본속도압은 각각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K_z = 2.58 \left(\frac{Z}{Z_g} \right)^{\frac{2}{\alpha}}$$

$$q_0 = \frac{1}{16} V_0^2$$

Z : 속도압산정높이(미터)

Z_g : 풍속의 기준경도풍고도(미터)

V_0 : 기본풍속(미터/초)

$\frac{1}{\alpha}$: 풍속의 고도분포지수

4.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풍속은 별표 19에 규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동표의 구분에 따르고, 동표에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조건을 고려하여 동표에 정한 지역중 가장 가까운 지역의 풍속에 준하여 정한다. 다만, 별표 19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실제로 관측하여 정한다.

5.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의 기준경도풍고도 및 풍속의 고도분포지수는 별표 20에 의한다.
- ⑤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풍하중으로 인한 진동의 영향을 받기 쉬운 건축물의 각부분에 대하여는 풍속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풍하중으로 인하여 전도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풍하중에 의한 전도모멘트는 건축물의 자중만으로 산정한 안정모멘트 값의 3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를 초과할 때에는 전도모멘트의 초과분에 버틸 수 있도록 보강조치를 하되, 전도모멘트 및 안정모멘트를 산정할 경우의 회전축의 위치는 풍하중벽면의 수직선과 기초판 바닥면의 평균깊이의 수평선이 교차하는 점으로 하며, 기초판 상부의 흙은 안정모멘트를 산정할 경우에 자중에 해당하는 무게로 볼 수 있다.
2. 마찰에 의한 저항력이 미끄러짐을 방지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버틸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3. 전도모멘트에 버틸 수 있도록 설치한 장치는 미끄러짐에도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지진하중) ① 지진력을 정적인 횡력으로 평가하는 등가정적해석을 적용하여 내진구조설계를 하는 건축물은 밀면전단력·충지진하중·충전단력·수평비틀림모멘트·전도모멘트 등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기타 층간변위와 건물분리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의한 밀면전단력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밀면전단력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 한다.

$$V = \left(\frac{A \cdot I \cdot C \cdot S}{R} \right) W$$

V : 밀면전단력

A : 지역계수

I : 중요도계수

C : 동적계수

S : 지반계수

R : 반응수정계수

W : 건축물의 전중량

2.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수의 값은 지진구역에 따라
다음 표의 값을 적용한다.

3.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도계수의 값은 건축물의 용도
· 규모 및 대지의 위치에 따라
* 표의 값을 적용한다.

4.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동적계수의 값은 ** 표의 기준에
의한다.

가. 동적계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1.5를 초과할
경우에는 1.5를 적용 한다.

$$C = \frac{1}{1.2\sqrt{T}}$$

T : 건축물의 기본진동주기(초)

나. 동적계수와 지반계수를 곱한

값이 1.7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75를 적용한다.

다. 가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본진동 주기는 다음의 (1)·(2)
또는 (3) 식에 따라 산정하거나
고유치해석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고유치해석법에 의하여
산정한 기본진동주기가 (1)·(2)
또는 (3) 식에 의하여 구한
기본진동주기에 1.2배를 곱한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1.2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T = 0.085h_n^{3/4}$ (모멘트골조인
경우의 철골구조) ... (1)

$T = 0.06h_n^{3/4}$ (모멘트골조인
경우의 철근콘크리트구조) ... (2)

$T = \frac{0.09h_n}{\sqrt{B}}$ ((1)·(2)를 제외한
구조) ... (3)

h_n : 밑면으로부터

최상층까지의 건축물의
높이 (미터)

B : 지진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의 밑면에서의
건축물평면치수(미터)

5.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지반계수의 값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지반계수는 다음 표의 값을
적용한다.

지 반 종 별	지반1	지반2	지반3
지반계수(S)	1.0	1.2	1.5

나. 지반종별은 *** 표에 의하고,
토성치에 따른 지반상태의
분류는 별표 21에 의한다.

6.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반응수정계수는 구조방식에 따라
*** 표의 값을 적용한다.

7.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전중량은 밑면상부자중의 합계를
사용하되, 건축물의 골조에 정착된
건축설비의 하중을 포함한다.

이 경우 창고 또는 그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에서는 적재하중의
25퍼센트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③ 제 1 항의 경우에 의한

충지진하중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F_x = \left(\frac{W_x h_x^k}{\sum_{i=1}^n W_i h_i^k} \right) V$$

$T \leq 1.0$ 초이면 $k = 1.0$

$1.0 < T \leq 2.0$ 초이면 $k = 1.5$

$T > 2.0$ 초이면 $k = 2.0$

F_x : x층의 층지진하중

W_i, W_x : i, x층의 건축물 중량

h_i, h_x : 건축물의 밑면으로부터 i,
x층까지의 높이

V : 밑면 전단력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층전단력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V_x = \sum_{i=1}^x F_i$$

V_x : x층의 층전단력

F_i : i층의 층지진 하중

⑤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평비틀림모멘트는 건축물의 중심과
강심간의 편심에 의한 비틀림모멘트와
우발비틀림모멘트의 합으로 한다.

이 경우 비틀림모멘트는 편심거리에
층전단력을 곱하여 산정하고,

우발비틀림모멘트는 해석방향에

직각방향평면치수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우발편심에 그 층전단력을
곱하여 산정한 모멘트로 한다.

⑥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전도모멘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층수에
따른 감소계수는 별표 22에 의한
값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초저면에서
지진하중과 수직하중의 합력의
작용점은 기초저면치수 중앙부의
2분의 1을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M_x = \rho \sum_{i=1}^n F_i (h_i - h_x)$$

M_x : x층의 전도모멘트

F_i : i층에서의 층지진하중

h_i, h_x : 밑면에서 i, x층까지의
건축물 높이

ρ : 감소계수

⑦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층간변위는
임의의 층의 주두와 주각에서 생기는
수평변위량의 차이로서 그 층의
층고의 0.01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변위량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delta_x = R \cdot \delta_e$$

δ_x : x층의 수평변위량

R : 반응수정 계수

δ_e : 탄성해석에 따라 구한 x층의
수평변위량

* 구 분	해 당 지 역	지역계수 (A)
지진구역 1	광주직할시, 강원도(화천군을 제외한다),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광양군을 제외한다), 경상북도 울진군.	0.08
지진구역 2	제주도 지진구역 1을 제외한 지역	0.12

** 중요도	1	2	3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 병원, 통신, 활영시설중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발전소, 공공업무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관공립화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6층이상의 아파트, 6층 이상의 숙박시설	중요도 1 및 2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도시계획구역	1.5	1.2	1.0
도시계획구역이 외의구역	1.2	1.0	0.8

지반종별	지 반 상 태
지반 1	암반 또는 암반위의 매우 단단한 모래·자갈 또는 점토로서 암반까지의 전체깊이가 60미터미만인 지반
지반 2	지반 1과 같은 상태로써 암반까지의 전체깊이가 60미터이상인 경우와 깊이에 관계없이 단단한 모래·자갈 또는 점토인 지반
지반 3	단단하기가 보통이하인 점토 또는 느슨한 모래로 전체깊이가 9미터이상인 지반

구 조 방 식	반응수정계수(R)
내력벽방식	전단벽이 모든 수직하중과 모든 횡력을 부담하는 경우
	모든 수직하중과 모든 횡력을 받는 전단벽의 양단부를 기둥과 같은 배근법으로 보강한 경우
모멘트 연성골조방식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이중골조방식	지진력의 25퍼센트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모멘트연성골조가 전단벽 또는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수직하중 및 횡력을 건축물수직요소의 강성비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모멘트골조와는 독립적으로 전단벽 또는 가새골조가 모든 횡력을 부담하는 경우
기타의 골조방식	
고기수조동	

⑧ 인접건축물간 또는 신축이음을 둔 동일건축물간에는 인접양측 건축물의 변형량을 합한 값의 2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⑨ 건축물의 골조에 정착되는 비구조부재 및 건축설비는 내진설계시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조·계단담·광고탑·굴뚝등과 같은 옥외돌출물 및 비내력벽, 달반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비구조부재는 지진시에 전도·국부파괴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건축물의 구조체에 안전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2. 기계설비·보일러·연료탱크·다트 및 배관설비·조명설비·통신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설비기기는 지진시에 이동·전도·국부파괴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건축물의 구조체에 안전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제3장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제1절 목 조

제15조 (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목조의 건축물이나 목조와 조적식구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에서 목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정자각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광·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목조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 ①목재의 허용응력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목재에 대한 나무결방향의 허용응력도는 별표 23에 의한다. 다만, 별표 23에 규정되지 아니한 구조체에 대하여는 비중이 같은 목재의 허용응력도를 적용한다.
2. 목재를 기초말뚝·수조·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상시 습윤상태에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응력도는 각각 별표 23에 정한 값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값으로 한다.
3. 단단한 재질의 목재로서 특히 품질이 우량한 것을 비너장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응력도를 각각 별표 23에 정한 값의 2배까지 할 수 있다.

4. 직접 비·바람에 노출되는 구조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그 허용응력도를 각각 별표 23에 규정된 값의 80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5. 3월 이내의 가설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물의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는 가설하는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으며,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는 별표 23중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의 값에 의한다.

기 간	허 용 응 력 도
1주이내	별표 23에 정한 값의 1.3배
1주초과 1월이내	별표 23에 정한 값의 1.25배
1월초과 3월이내	별표 23에 정한 값의 1.2배

6. 갈라진 틈이 없는 목재의 전단에서는 별표 23에 규정된 값의 전단응력도의 1.5배까지 할 수 있다.

7. 나무결에 경사진 방향의 허용압축응력도는 그 나무결 방향과 힘을 가하는 방향과의 각도에 따라 별표 23의 나무결방향의 허용응력도 값에 별표 24의 허용압축응력도 계수 (중간값은 직선보간으로 구한다)를 곱한 값으로 한다.

8. 압축재의 허용좌굴응력도는 그 세장비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lambda \leq 100 \text{의 경우 } f_k = f_c (1 - 0.007 \lambda)$$

$$\lambda > 100 \text{의 경우 } f_k = \frac{0.3 f_c}{\lambda} \times 100$$

f_k : 허용좌굴응력도 (킬로그램 / 제곱센티미터)

f_c : 나무결방향의 허용압축응력도 (킬로그램 / 제곱센티미터)

λ : 세장비

- ② 목조에 사용되는 강재의 허용응력도는 별표 28에 규정된 값에 의한다. 다만, 단기응력에 대한 강재의 허용응력도는 별표 28의 값의

1.5배로 한다.

제17조 (압축재의 세장비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①목재로 된 내력부분인 압축재의 세장비는 150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은 45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2 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재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온 기둥인 경우 그 이온 부분을 통재기둥과 동등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가새) ①인장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1.5센티미터, 폭 9센티미터이상의 목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압축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3.5센티미터이상이고 골조기둥의 3분의 1쪽에 해당하는 두께인 목재를 사용하며, 좌굴과 재단의 지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③가새는 그 두 끝부분을 기둥·보·기타 내력부분인 가로재와 잇도록 하여야 한다. ④가새에는 파내기 기타 이와 유사한 손상을주어 그 내력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바닥틀 및 지붕틀) ①바닥틀은 수직하중에 대해서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을 가져야 하며, 횡력에 의하여 생기는 전단력에 대하여서도 안전하게 내력벽에 전달 할 수 있는 강도 및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붕틀은 지붕면의 수직하중·풍압력 및 천정등의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이 있어야 하며, 횡력에 의하여 생기는 전단력에 대하여서도 안전하게 내력벽에 전달할 수 있는 강도 및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사용하고, 지붕틀에는 하늘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 (방부조치) ①내력부분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기타 이와 유사한 함수성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지표면상 1미터이하의 높이에 있는 기둥·가새 및 토대등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방부효과를 가지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붙임돌등) 붙임돌·붙임기와 기타 이와유사한 것으로서 목조인 뼈대를 씌우는 구조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 붙임돌등의 두께는 지표면상 1미터이하의 높이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5센티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2 절 조적식 구조

제22조 (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돌구조·콘크리트블록구조 기타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철근 또는 철골로 보강된 부분으로서 구조계산 또는 실험에 의하여 이 절에 규정된 기준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높이 4미터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3조·제24조·제29조·제30조·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내력부분이 아닌 조적식구조의 간막이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3조·제24조·제27조 및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3조 (시 공) ①조적재를 쌓을 때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석회가 혼합된 시멘트모르타르등으로 하되, 시멘트모르타르의 경우에는 시멘트와 모래의 용적비가 1:3이어야 하고, 석회가 혼합된 시멘트모르타르의 경우에는 시멘트와 석회와 모래의 용적비가 1:1:3이어야 한다. 다만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석회가 혼합된 시멘트모르타르가 아닌 것으로서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쌓아야 한다.

③조적식구조인 각층의 벽은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쌓아야 한다.

제24조 (기 초)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중 기초판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무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기초벽의 두께는 최하층의 벽의 두께에 그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등) ①조적식구조인 건축물중 2층 또는 3 층인 건축물에 있어서 최상층부분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높이는 4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내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온 선의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0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③조적식구조의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제26조 (내력벽의 두께)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가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바로 윗층의 내력벽의 두께이상이어야 한다.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높이 및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20분의 1이상, 블록인

(단위: 센티미터)

층 별	벽의길이	5 미터 미만		5 미터 이상 11미터 미만		11미터 이상	
		미터 미만	미터 이상	미터 미만	미터 이상	미터 미만	미터 이상
1	층	15	19	19	29	29	39
2	층			19	19	19	29
3	층			19	19	19	19

경우에는 16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이거나, 돌과 벽돌 또는 블록등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그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높이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위: 센티미터)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3층
층별				
1층	층	19	29	39
2층	층		19	29
3층	층			19

⑤ 토압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식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적식구조인 벽돌구조로 할 수 있다.

⑥ 제5항단서의 경우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1.2미터이상인 때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그 바로 윗층의 벽의 두께에 10센티미터를 가산한 두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중 하나의 내력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인 건축물의 경우 1층을 말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각 벽 상호간에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이내의 간격으로 보강한 내력벽에 있어서는 그 각 벽의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제27조(간막이 벽등의 두께)

① 조적식구조인 간막이벽(내력벽이 아닌 기타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적식구조인 간막이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간막이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간막이벽의 두께는 19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6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간막이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테두리보)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 위에는 그 층이 벽두께 1.5배 이상인 철골구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건축물로서 벽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이상이거나 벽길이가 5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개구부) ① 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창·출입구 기타의 개구부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각 층의 대면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2. 하나의 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와 그 바로 윗층에 있는 개구부와 수직거리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층의 벽에 상하의 개구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개구부 사이의 거리도 또한 같다.

② 조적식구조인 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각층마다 그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면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취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폭이 1.8미터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웃인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조적식구조인 내어민 창 또는 내어쌓기 창은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한다.

제30조(벽의 홈) 조적식구조인 벽에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이상인 연속한 세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고, 가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길이는 3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31조(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의 조적식구조의 부분은 목골 또는 철골의 골조에 볼트·각쇠 기타의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제32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제33조(조적식구조인 담) 조적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높이는 3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담의 두께는 19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2미터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담의 길이 2미터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길이 4미터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의 1.5배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내력부분의 받침방법)

조적식구조인 내력부분은 목조인 구조부분으로 받쳐서는 아니된다.

제35조(구조안전의 확인) 3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처마높이가 11미터이하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15미터이하인 건축물은 각층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40제곱미터를 넘지 아니하고, 이 절(제22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조의 안전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제3절 보강블록구조

제36조 (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에 보강블록 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 4미터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7조·제38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7조 (시 공) 보강블록구조의 철근을 넣은 속빈 부분에는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다져야 한다.

제38조 (기 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 기초로 하되, 그중 기초판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39조 (내력벽) ①건축물의 각 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0.15미터이상인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5센티미터이상으로 하되, 그 내력벽의 구조내력에 주요한 지점간의 수평거리의 5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보강블록구조의 내력벽은 그 끝부분과 벽의 모서리부분에 12밀리미터이상의 철근을 세로로 배치하고, 9밀리미터이상의 철근을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센티미터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각 그 철근지름의 40배이상을 기초판부분이나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켜야 한다.

제40조 (테두리보)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위에는 층이 벽두께의 1.5배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보강블록구조의 담) 보강블록 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담의 높이는 3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담의 두께는 15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2미터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담의 내부에는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센티미터이내의 간격으로 담의 끝 및 모서리부분에는 세로로 9밀리미터이상의 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2조 (준용규정)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0조,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절 철근콘크리트구조

제43조 (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이나 이들 구조와 조적식구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철근콘크리트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②높이가 4미터이하이고 연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44조·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4조 (콘크리트 재료)

철근콘크리트구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모래·자갈·쇄석 및 물에는 철근을 녹슬게 하거나 콘크리트의 용결에 유해한 양의 산·염·유기물 또는 진흙이 함유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자갈 또는 쇄석은 경질로서 철근과 철근사이 및 철근과 거푸집사이를 쉽게 통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제45조 (철근의 이음 및 정착)

①철근의 끝부분은 갈고리 형상으로 구부려서 콘크리트에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정착시켜야 한다. 다만, 기둥 또는 골뚝외의 부분인 경우 이형철근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배근하는 철근중 주근의 이음은 당해 부재에 있어서 인장력이 가장 적은 부분에 두어야 하며, 철근을 이을 때의 겹쳐지는 길이는 용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의 강도, 철근의 강도, 철근의 종류 및 갈고리의 유무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6조 (콘크리트의 배합)

①철근콘크리트구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1제곱센티미터마다 150킬로그램(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제곱센티미터마다 11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②콘크리트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에서 얻은 허용응력도이상이 되도록 골재 및 시멘트의 배합비와 물 및 시멘트의 배합비를 정하여 배합하여야 한다.

제47조 (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는 시공중 및 시공후 5일간은 콘크리트의 온도가 섭씨 2도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콘크리트의 응고 및 경화가 건조나 진동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제48조 (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①내력부분의 거푸집 및 받침기둥은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중에 받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균열 기타

구조내력에 미치는 지장이 생기지 아니할 정도로 응고 또는 경화될 때까지는 이를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거푸집 및 받침기등을 존치시켜야 할 기간은 당해 건축물의 부분 또는 위치,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 양생의 방법, 환경 기타의 조건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 (철근을 덮는 두께) 철근을 덮는 콘크리트의 두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내력벽이 아닌 벽이나 바닥의 경우 : 2센티미터이상
2. 내력벽·기둥 또는 보의 경우 : 3센티미터이상(육면에 면하는 부분으로서 시멘트모르타 바르기, 화반죽 바르기 또는 타일 붙이기 기타 이와 유사한 철근의 내구성의 유지를 위한 마감을 한 것에 있어서는 2센티미터이상)
3. 직접 흙에 접한 벽·기둥·바닥 또는 보의 경우 : 4센티미터이상
4. 기초의 경우 (밀창콘크리트의 부분을 제외한다) : 6센티미터이상

제50조 (철근콘크리트구조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 ① 콘크리트의 허용응력도는 설계기준 강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의 허용압축응력도
(중심축방향의 응력을 받을 때에 한한다)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f_c = 0.3F_c$$

f_c : 콘크리트의 허용압축응력도

F_c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2. 콘크리트의 허용휨압축응력도
(휨재 또는 편심축방향의 압축력을 받는 부재의 압축응력도를 말한다)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f_b = 0.4F_c$$

f_b : 콘크리트의 허용휨압축응력도

F_c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3. 콘크리트의 허용전단응력도는 다음 각목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전단보강철근이 없는 경우의

콘크리트단면이 부담하는

허용전단응력도는 $V_c = 0.3\sqrt{F_c}$ 로,

전단보강철근을 사용할

경우의 콘크리트단면이 부담하는

전단응력도는 $V \leq 1.33\sqrt{F_c}$ 로

한다.

V_c : 콘크리트의 허용전단응력도

V : 전단응력도

F_c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나. 슬라브 및 기초슬라브에

있어서 전단보강철근이 없을

경우의 콘크리트단면이 부담하는

허용전단응력도는 $V_c = 0.53\sqrt{F_c}$,
전단보강철근을 사용할 경우의

콘크리트단면이 부담하는

전단응력도는 $V \leq 0.8\sqrt{F_c}$

V_c : 콘크리트의 허용전단응력도

V : 전단응력도

F_c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4. 철근의 콘크리트에 대한

허용부착응력도는 다음표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위 : 킬로그램 / 제곱센티미터)
 F_c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철근의 종류	허용부착 응력도	상단 및 정착부분	기타의 부분
원 형 철 근		$4/100F_c$ 또는 9.0 이하	$6/100F_c$ 또는 13.5 이하
이 형 철 근		$1/15F_c$ 또는 ($9.0 + 2 / 75F_c$) 이하	$1/10F_c$ 또는 ($13.5 + 1 / 25F_c$) 이하

비고 : 이 표에서 $F_c \geq 250$ 킬로그램 / 제곱센티미터

일 때에는 $F_c = 250$ 킬로그램 / 제곱센티미터로 한다.

5. 허용지압응력도는 다음 각목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단면 전체에 하중이 가하여질 경우

$$f_c = 0.3F_c$$

나. 단면에 부분적으로 하중이

가하여질 경우

$$f_c = (0.5 - 0.2A'/A) F_c$$

A : 단면의 전체면적

A' : 하중이 가하여지는 면적

②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1제곱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으로 한다.

③ 철근의 강도 및 허용응력도는

별표 25에 의하고, 철근의

허용응력도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별표25 및 한국공업규격중 금속부분에

적용하는 규격인 KS D 3504에

의한 항복강도를 기준으로 하되,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원형철근인 경우 : 인장 및

$$\text{압축허용응력도는 } f_t = f_c \leq \frac{F_y}{1.5}$$

또는 1.6톤 /

제곱센티미터이하로,

전단보강철근의

$$\text{허용인장응력도는 } f_v \leq \frac{F_y}{1.5}$$

또는 1.6톤 / 제곱센티미터이하로

한다.

2. 이형철근인 경우 : 인장 및

압축허용응력도는

$$f_t = f_c \leq \frac{F_y}{1.5} \text{로 하거나,}$$

철근직경 $D \leq 25$ 밀리미터일 때에는

2.20톤 / 제곱센티미터이하로,

철근직경 $D \geq 29$ 밀리미터일 때에는

2.00톤 / 제곱센티미터이하로

하고, 전단보강철근의

$$\text{허용인장응력도는 } f_v \leq \frac{F_y}{1.5} \text{ 또는}$$

2.0톤 / 제곱센티미터이하로 한다.

④ 단기응력에 의하여 철근의

단면적을 산정할 경우에는 제 1 항

또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허용응력도의 50퍼센트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⑤ 콘크리트부재의 부정정응력 또는

탄성변형을 산정할 경우의 철근 및

콘크리트의 탄성계수·포와손비 및

선팅창계수는 별표26과 같다.

⑥ 단면적이나 응력도를 산정할

경우의 철근의 탄성계수는

$$E_s = 2.1 \times 10^6 \text{ 킬로그램 / 제곱센티미터로, 콘크리트의}$$

$$\text{탄성계수는 } E_c = 1.4 \times 10^5 \text{ 킬로그램 / 제곱센티미터로 표시한다.}$$

⑦ 단면적이나 응력도를 산정한

경우의 탄성계수비 (n)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강기 또는 단기의 설계응력에

관계없이 $n = E_s / E_c = 15$ 로 한다.

제51조 (기둥의 구조) 내력부분인

기둥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 1호를 제외한 규정은

구조계산 또는 실험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방형기둥에 배근하는 철근중 주근은 4개이상으로 하고, 주근의 주위에 두르는 띠철근과 고정하여야 한다.
2. 띠철근은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사용하고, 띠철근의 최대간격은 다음의 값중 가장 작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둥의 상단 및 하단으로부터 기둥의 폭중 최대폭의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의 띠철근의 간격은 다음의 값을 2분의1로 하여 그중 가장 작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주근지름의 16배
나. 띠철근지름의 48배
다. 기둥의 최소폭
라. 30센티미터
3. 나선형으로 감아 돌린 철근(이하 "나선철근"이라 한다)은 직경이 6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하고, 그 정착은 기둥의 끝부분에서는 1.5회를 더 감아야 하며, 나선철근의 간격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3센티미터이상, 8센티미터이하
나. 기둥유효직경의 6분의1이하
다. 굵은 골재의 직경의 1.5배이상
4. 기둥의 작은 변은 그 구조내력에 주요한 지점간의 거리의 15분의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둥의 세장비를 고려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둥의 최소철근비(기둥의 단면적에 대한 주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말한다)는 기둥 단면의 최소폭과 각 층마다의 기둥의 유효높이의 비가 5이하일 때에는 0.4퍼센트, 10을 초과할 때에는 0.8퍼센트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둥단면의 최소폭과 각 층마다의 기둥의 유효높이의 비가 5를 초과하고 10이하일 때에는

직선보간의 방법으로 구한 값으로 한다.

제52조 (보의 구조) 내력부분인 보는 복근으로 배근하되, 주근은 직경 12밀리미터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늑근은 직경 6밀리미터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배치간격은 보춤의 4분의3이하 또는 45센티미터이하 이어야 한다.

제53조 (콘크리트슬라브의 구조) 내력부분인 콘크리트슬라브 (기성콘크리트 제품인 것을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콘크리트슬라브의 두께는 8센티미터이상으로서 다음표에 의하여 산정한 두께이상이어야 한다.

(단위: 센티미터)

지 지 조 건	주변이 고정된 경우의 두께 (센티미터)	캔틸레버의 두께 (센티미터)
$\lambda \leq 2$ 의 경우 두방 향으로 배근한 콘 크리트슬라브	$\frac{\lambda \ell_x}{16+24\lambda}$	-
$\lambda > 2$ 의 경우 한방 향으로 배근한 콘 크리트슬라브	$\frac{\ell_x}{32}$	$\frac{\ell_y}{10}$

비고: λ : 콘크리트슬라브의 장변 및 단변의 각 유효길이의 비
 ℓ_x : 콘크리트슬라브의 단변의 유효길이

2. 최대휨모멘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장철근의 간격은 단변방향은 20센티미터이하로, 장변방향은 30센티미터이하로 하되, 바닥판의 두께의 3배이하로 할것.

제54조 (내력벽의 구조) 내력부분인 콘크리트벽체는 수직하중·수평하중·휨모멘트 및 전단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력벽의 최소두께는 벽의 최상단에서 4.5미터까지는 1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하며, 매 3미터 내려감에 따라 1센티미터씩의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두께가

12센티미터이상의 경우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내력벽의 배근은 9밀리미터이상의 것을 45센티미터이하의 간격으로 하여야 하며, 벽두께의 3배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두께가 25센티미터이상일 때에는 벽양면에 복근으로 하여야 한다.

제55조 (무근콘크리트로 된 구조에 대한 다른 구조규정의 준용) 무근콘크리트로 된 구조의 건축물이나 무근콘크리트로 된 구조와 조직식구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무근콘크리트로 된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이장 제2절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철골구조

제56조 (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철골구조·철골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이나 이들 구조와 조직식구조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철골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제57조 (재 료) 압축응력 또는 접착응력의외응력이 생기는 부분에는 주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 (철골구조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 ① 구조용강재의 허용응력도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허용응력도를 결정하는 기준값은 별표27과 같다.

1. 구조용 강재의 허용인장응력도는 유효단면적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f_t = \frac{F_y}{1.5}$$

f_t : 허용인장응력도(톤 / 제곱센티미터)

F_y : 허용응력도를 결정하는 기준값

2. 구조용강재의 허용전단응력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f_s = \frac{F_y}{1.5\sqrt{3}}$$

f_s : 허용전단응력도
(톤/제곱센티미터)

F_y : 허용응력도를 결정하는
기준값

3. 구조용강재의 허용압축응력도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가. 전단면적에 대하여,
 $\lambda \leq \lambda_p$ 일때에는

$$f_c = \frac{\{1 - 0.4 \left(\frac{\lambda}{\lambda_p}\right)^2\}}{n} F_y,$$

$\lambda > \lambda_p$ 일때에는 $f_c = 0.277 \cdot$

$$F_y / \left(\frac{\lambda}{\lambda_p}\right)^2$$

$$\lambda_p = \sqrt{\frac{\pi^2 E}{0.6 F_y}}$$

f_c : 허용압축응력도
(톤, 제곱센티미터)

λ : 압축재의 세장비

E : 영계수 (톤/제곱센티미터)

$$n : \frac{3}{2} + \frac{2}{3} \left(\frac{p}{\lambda_p}\right)^2$$

λ_p : 한계세장비

나. 압연형강 또는 용접 I 형강
단면의 웨브플레이트 끝부분에
작용하는 국부허용압축응력도는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f_c' = \frac{F_y}{1.3}, f_c' : \text{국부허용}$$

압축응력도 (톤/제곱센티미터)

4. 구조용 강재의 허용휨응력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가. 하중면내에 대칭축이 있는
압연형강·플레이트거더 기타의
조립재로서 판요소의 폭 두께의 비의
제한을 만족하는 경우 강축에
대하여 휨모멘트를 받을 때에
부재의 압축축허용휨응력도는
다음의 (1)식 또는 (2)식중 큰
값으로 한다. 다만, 압축축응력도
또는 인장축응력도는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값을 초과할 수 없다.

$$f_b = \left(1 - \frac{0.4 \left(\frac{\ell_b}{i_b}\right)^2}{C_m \cdot \lambda_p^2}\right) f_t \dots (1)$$

$$f_b = \frac{900}{\ell_b \cdot h} \dots (2)$$

여기에서, $C_m = 1.75 - 1.05$

$$\left(\frac{M_1}{M_2}\right) + 0.3 \left(\frac{M_1}{M_2}\right)^2 \leq 2.3$$

f_b : 허용휨응력도

ℓ_b : 압축플랜지의 지점간거리
(센티미터)

i_b : 압축플랜지와 보의 축의
1/6로 된 T형강 단면의
웨브축에 대한 단면2차반경
(센티미터)

h : 보의 축 (센티미터)

A_t : 압축플랜지의 단면적
(제곱센티미터)

$$\lambda_p = \sqrt{\frac{\pi^2 \cdot E}{0.6 \cdot F_y}}$$

나. 가목의 경우 각각 좌굴구간
끝부분의 작은쪽 (M_1) 과
큰쪽 (M_2) 의 각각의 강축에
대한 휨모멘트 (M_1/M_2) 는
단곡을일 때에는 정부호(+),
복곡을일 때에는 부부호(-) 로
하여 구간중간의 휨모멘트가
 M_2 보다 클 경우 $C_m = 1$ 로 한다.

다. 강판, 상자형단면 및
하중면내에 대칭축이 있고
양축에 휨을 받는 부재로서
폭두께의 비에 의한 제한을
만족시키는 경우 및 면내에
휨모멘트를 받는 가세트플레이트의
압축축 및 인장축의

허용휨응력도는 각각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값으로 한다.

라. □ 형강단면부재 및 하중면내에
대칭축이 없는 부재로서 폭
두께의 비에 의한 제한에 따를
경우 부재의 압축축허용
휨응력도는 가목의 산식중 (2) 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값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베어링플레이트등 면밖에
휨모멘트를 받는 판의
허용휨응력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f_{b1} = \frac{F_y}{1.3}$$

f_{b1} : 허용휨응력도

(톤/제곱센티미터)

바. 휨모멘트를 받는 판의
허용휨응력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f_{b2} = \frac{F_y}{1.1}$$

f_{b2} : 허용휨응력도

(톤/제곱센티미터)

5. 구조용강재의 허용지압응력도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핀 및 하중점스티프너의
접촉부 기타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지압응력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F_y 는 접촉하는
부재의 재질이 다를 때에는 작은
쪽의 값으로 하고,

$$\text{지압응력도는 } \sigma_p = \frac{P}{A_p} \text{ 에 의한}$$

값으로 한다.

$$f_{p1} = \frac{F_y}{1.1}$$

σ_p : 지압응력도 (톤 /
제곱센티미터)

P : 압축력 (톤)

f_{p1} : 허용지압응력도
(톤/제곱센티미터)

A_p : 접촉부의 단면적
(제곱센티미터). 다만,
핀접합에서는 $A_p = t \cdot d$ 로
한다.

t : 핀의 판부의 두께
(센티미터)

d : 핀의 지름 (센티미터)

나. 미끄럼판의 지지부 또는
볼러의 지지부의 허용지압응력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F_y 는 접촉하는 부재의 재질이
나를때에는 작은 쪽의 값으로
하고, 지압응력도는

$$\sigma_p = 0.42 \sqrt{\frac{P \cdot E}{b \cdot r}} \text{ 에 의한 값으로}$$

한다.

$$f_{p2} = 1.9 F_y$$

σ_p : 지압응력도
(톤/제곱센티미터)

P : 압축력 (톤)

E : 영계수 (톤/제곱센티미터)

b : 지지부의 나비 (센티미터)

r : 지지부의 곡률반경
(톤/제곱센티미터)

f_{p2} : 허용지압응력도
(톤/제곱센티미터)

② 리벳트·볼트 및 고력볼트의 허용응력도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리벳트·볼트 및 고력볼트의 허용응력도는 별표 28에 의한다.
2. 리벳트·볼트의 이음판의 허용지압응력도는 리벳트 및 볼트의 축지름에 판의두께를 곱한 투영단면에 대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이 경우 민리벳트 및 민볼트일 때에는 판의 두께는 판속에 묻힌 깊이의 2분의1을 판의 두께에서 뺀 값으로 하고, 고력볼트접합일 때에는 허용지압응력도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f_e = 1.25 F_y$$

f_e : 허용지압응력도
(톤/제곱센티미터)

③ 용접 이음매의 허용응력도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모살용접·구멍용접·홈용접·부분용입용접·강관분기이음용접의 이음매의 허용응력도는 모재의 허용전단응력도로 한다.
2. 맞댄 용접의 허용응력도는 모재의 허용응력도로 한다.
3. 다른 종류의 강재를 용접할 때에는 접합될 모재의 허용응력도중 작은 쪽의 값으로 한다.
- ④ 주강 및 단강의 허용응력도는 각각 해당하는 압연강재의 허용응력도에 의할 수 있다.
- ⑤ 조합응력을 받는 강재의 허용응력도인 수직응력도와 전단응력도가 생기는 구조구분의 응력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f_t^2 \geq \sigma_x^2 + \sigma_y^2 - \sigma_x \sigma_y + 3 \tau_{xy}^2$$

σ_x, σ_y :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는 수직응력도(톤/제곱센티미터)

τ_{xy} : σ_x, σ_y 가 작용하는 면안의 전단응력도(톤/제곱센티미터)

⑥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응력중 폭풍·지진·적설의 경우 각 부분에 있어서의 응력을 산정할 때에는

제 1 항 내지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응력도의 50퍼센트까지 증가할 수 있다.

제59조 (인장재) ① 리벳트·볼트 또는 고력볼트로 접합된 인장재는 단면결손의 영향을 생각해서 유효단면적을 산정하여 설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7 형강, □ 형강등이 가세트플레이트의 한쪽에만 설치될 경우에는 편심의 영향을 고려하여 유효단면적을 산정하여 설계에 사용한다.

③ 인장재의 최대 세장비는 자중에 의한 처짐이나 진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재의 경우 250 이하, 2 차 부재의 경우 300 이하로 한다.

제60조 (압축재) ① 압축재의 최대 세장비는 주재인 경우에는 200 이하, 일반압축재인 경우에는 250 이하로 한다.

② 조립압축재의 세장비는 전단변형에 의한 좌굴응력의 저하를 고려하여 그 구조형식에 따라, 세장비를 증가시킨 유효세장비를 산정하여 설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61조 (보) ① 형강보 및 조립보는 이에 가하여지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휨강도 및 전단강도를 가져야 하며, 처짐이나 진동등의 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웨브플레이트의 두께가 춤에 비하여 비교적 작을 경우에는 하중점이나 하중점외의 부분에도 적당한 간격으로 스틱프너를 사용하여 보의 안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 (기 등) ① 기둥은 압축력에 의한 좌굴과 휨모멘트에 의한 면내 및 면외좌굴에 대하여 모두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조립기둥은 그 구조형식에 따라 세장비를 산정하여 설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63조 (접 합) ① 내력부분의 강재를 서로 잇는 경우에는 리벳트접합·고력볼트접합 또는 용접접합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볼트접합의 방식으로 이을 수 있다.

1. 처마높이가 9미터이하이고 경간이 13미터 이하인 건축물(연면적 3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볼트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그 주위를 콘크리트로 채워 넣거나 너트의 부분을 용접하거나 너트를 이중으로 사용한 경우

2. 리벳트접합 또는 용접작업이 심히 곤란한 부분을 잇는 경우로서 고력볼트와 볼트를 병용한 경우

② 내력부분의 이음부분 또는 맞춤부분은 철골재리벳트접합, 고력볼트접합 또는 용접접합의 방식에 의하여 당해 부분의 존재응력 전부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장응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서 그 이음부분이 밀착되도록 한 구조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압축력 및 휨모멘트의 4분의 1 (기둥의 밑둥에 있어서는 2분의 1) 이하를 접촉면으로 부터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 그 나머지를 전달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제64조 (리벳트·볼트 및 고력볼트)

① 2 이상의 리벳트·볼트 또는 고력볼트의 중심상호간의 거리는 그 지름의 2.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리벳트는 구멍에 충전되도록 끼워야 하며, 리벳트구멍의 지름은 리벳트의 지름에 따라 다음 표의 값에 적합하여야 한다.

리벳트의 지름(밀리미터)	리벳트구멍 지름의 리벳트의 지름과의 차(밀리미터)
16이하	1.0
20이상 28이하	1.5
32이상	2.0

③ 볼트구멍의 지름은 볼트의 지름보다 0.5밀리미터이상 크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사재·벽등의 배치) 골구·바닥판 및 지붕틀에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 내력상 안전함이 확인된 경우외에는 철골 또는 철근의 사재나 철근콘크리트구조인 벽·육상바닥판 또는 바닥판을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66조 (방청 조치) 내력부분에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녹슬지 아니하도록 방청도료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방청구조를 하여야 한다.

제67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

①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사용하는 강재의 허용응력도는 별표 29에 의한다.

② 리벳트·볼트 및 고력볼트의 허용응력도는 별표 28에 의한다.

③ 아크용접이음매의 경우 그 단면에 대한 허용응력도는 별표 30에 의한다. 다만, 강재중 SS50의 용접이음매는 응력을 부담시킬 수 없다.

④ 조합응력을 받는 강재의 허용응력도인 수직응력도와 전단응력도가 생기는 구조부분의 응력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f_{12} \leq \sigma_x^2 + \sigma_y^2 - \sigma_x \sigma_y + 3 \tau_{xy}^2$$

σ_x, σ_y : 서로 직교하는 수직응력도
 τ_{xy} : σ_x, σ_y 가 작용하는 단면내의 전단응력도

⑤ 콘크리트의 허용응력도에 관하여는 제50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철근의 허용응력도에 관하여는 제50조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철근 및 철골재의 콘크리트에 대한 허용부착응력도는 다음 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위 : 킬로그램 / 제곱센티미터)
 F_c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상 부 철 근	기타철근 및 철골
원형철근 $\frac{4}{100} F_c$, 또는 9.0 이하	$\frac{6}{100} F_c$, 또는 13.5 이하
이형철근 $\frac{F_c}{15}$, 또는 $(9 + \frac{2}{75} F_c)$ 이하	$\frac{F_c}{10}$, 또는 $(13.5 + \frac{F_c}{25})$ 이하
형강·강관	0.02 F_c

⑧ 각종 응력의 조합에 의한 각 부분의 설계응력에 있어서 특히 단가응력에 의하여 그 단면적을 산정하는 때에는 제 1 항 내지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응력도의 50퍼센트까지 증가할 수 있다.

제 6 절 기초구조

제63조 (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건축물의 기초등의 구조설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9조 (지반의 허용응력도) 지반의 허용응력도는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표 31에 정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70조 (기 초) ① 직접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기초지반에 직접 전달시키는 확대기초로서 그 접지압은 허용지내력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말뚝기초에서 말뚝의 내력은 그 허용지내력 이하이고 침하등에 의하여

상부구조에 유해한 영향을 마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7 조제 2 항제 4 호 및 제14조의 규정은 1988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하중 및 외력의 조합(제9조 제2항 제2호 관련)

응력의종류	하중및외력의 작용상태	일반지역	다설지역(수직 최상적설량 외경이 1미터이상인지역 을말한다)	비 고
장기외응력	평상시	D+L	D+L+S	—
단기외응력	적설시	D+L+S	D+L+S	—
	폭풍시	D+L+W	D+L+W D+L+S+W	건축물의 기둥의 넘어져 뺏히는등의 경우에는 L 은 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적재하중을 뺀값으로 한다.
	지진시	D+L+E D+E	D+L+S+E D+E	—

비고 : 위 표에서 D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중에 의한 응력, L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재하중에 의한 응력, S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적설하중에 의한 응력, W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풍하중에 의한 응력, E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하중에 의한 응력을 말한다.

(별표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지중 (제10조 제1항 관련) (단위 / 킬로그램 / 제곱미터)

건축물의부분	종	별	하 중	비 고
지	기 와 지 중	부토가 없는 경우	65	지붕밑의 널 및 서까래등의 무게를 포함하고, 중도리의 무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토가 있는 경우	100	
	석이 면트 스지 레붕	중도리에 직접 이는 경우	25	중도리의 무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타의 경우	35	지붕밑의 널 및 서까래등의 무게를 포함하고, 중도리의 무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붕	골지 절 판붕	중도리에 직접 이는 경우	5	중도리의 무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얇은 철관지붕	20	지붕밑의 널 및 서까래등의 무게를 포함하고, 중도리의 무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유리지붕		30	철세틀의 무게를 포함하고, 중도리의 무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두꺼운 스테트지붕	45	지붕밑의 널 및 서까래등의 무게를 포함하고, 중도리의 무게를 포함한 지 아니한다.
목중 조도 인리		중도리의 지점간의 거리가 2미터이하 인 경우	5	
		중도리의 지점간의 거리가 4미터이하 인 경우	10	

건축물의 구분	종	별	하	중	비	고
반	상대반자	반대·발대반이 기단의 바탕의 무게를 포함한다.				
	섬유관반자·널반자·금속관반자·철관반자	반자에 대하여				
	죽고시멘트관반자					
	우물반자					
	회반죽반자					
자	모르터반자					
	목조인	널바닥	장선의 무게를 포함한다.			
	바닥	다다미바닥	바닥널판 및 장선의 무게를 포함한다.			
	바닥	정간이 1미터이하인 경우				
	바닥	정간이 6미터이하인 경우				
벽	목조인	널바닥	장선 및 장선받이의 무게를 포함한다.			
	벽	우로평블록 바닥	마감두께 3센티미터마다 그 무게의 값을 곱한다.			
	벽	모르터바닥·인조석바닥·타일블록				
	벽	아스팔트합수층바닥				
	벽	목조건축물의 벽의 골조	기둥·사잇기둥 및 가새의 무게를 포함한다.			
벽	벽	비닐판붙임벽·투박물임벽·섬유관 붙임벽	벽이상의 무게를 포함하고, 골조의 무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벽	출대회반죽벽				
	벽	철망모르터벽				
	벽	목조건축물의 외벽	골조의 무게를 포함한다.			
	벽	회반죽벽	마감두께 1센티미터마다 그 무게의 값을 곱한다.			
벽	벽	모르터벽 및 인조석벽				
	벽	타일 붙임벽				
	벽	목조건축물의 벽의 골조	기둥·사잇기둥 및 가새의 무게를 포함한다.			
	벽	비닐판붙임벽·투박물임벽·섬유관 붙임벽	벽이상의 무게를 포함하고, 골조의 무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벽	출대회반죽벽				

(별표 3) 건축물의 자·부분별 적재하중
(제11조제 1항 및 제 2항 관련)
(단위 : 킬로그램/제곱미터)

건축물의 부분	구조재산의 대상	(가)	(나)
(1) 주택의 거실, 주방, 침실 또는 기둥의 전속재를 하는 경우	바닥의 구조재산을 하	180	130
(2) 사무실	사무실	300	180

건축물의 부분	구조재산의 대상	(가)	(나)
(3) 학교의 교실	바닥의 구조재산을 하	230	210
(4) 백화점 또는 점포의 판매장	바닥의 구조재산을 하	300	240
(5) 극장·영화관·연예장·민감점·공회당·점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객실 또는 집회실	바닥의 구조재산을 하	300	270
(6) 자동차 차고(다만, 용비다단 주차는 실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및 자동차 통로	바닥의 구조재산을 하	360	330
(7) 헬리콥터 착륙장	바닥의 구조재산을 하	550	400
(8) 복도·현관 또는 계단	바닥의 구조재산을 하	500	400
(9) 옥상광장 또는 발코니	바닥의 구조재산을 하	550	400

(별표 4) 건축물의 자·부분의 적재하중 적재계수
(제11조제 2항 관련)

발치는 바닥의 수	2	3	4	5	6	7	8	9	10	11이상
저 감 계 수	0.95	0.90	0.85	0.80	0.75	0.70	0.65	0.60	0.55	0.50

(별표 5) 문의 평균단위 중량
(제12조제 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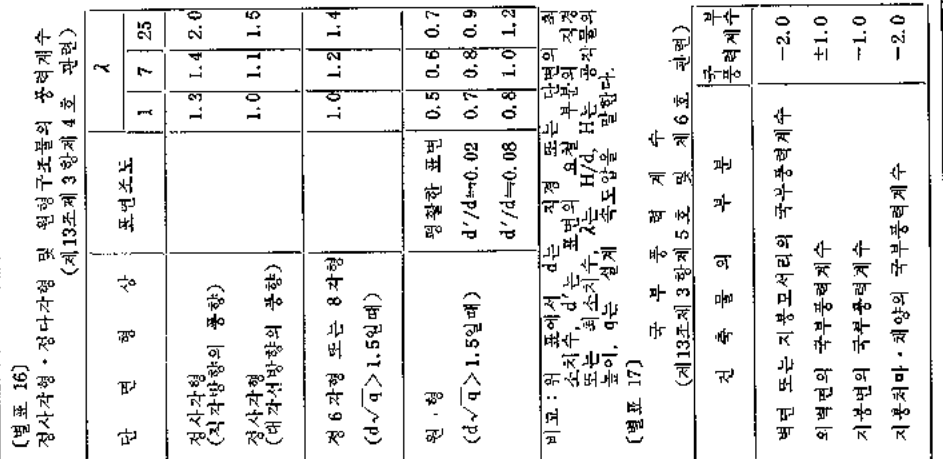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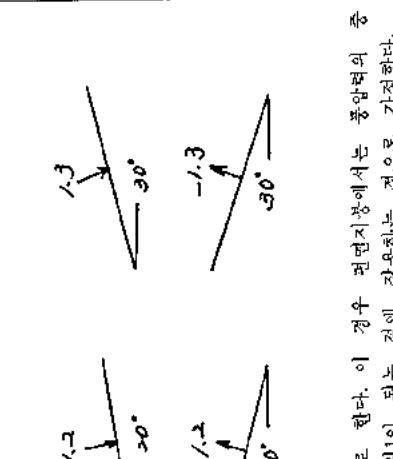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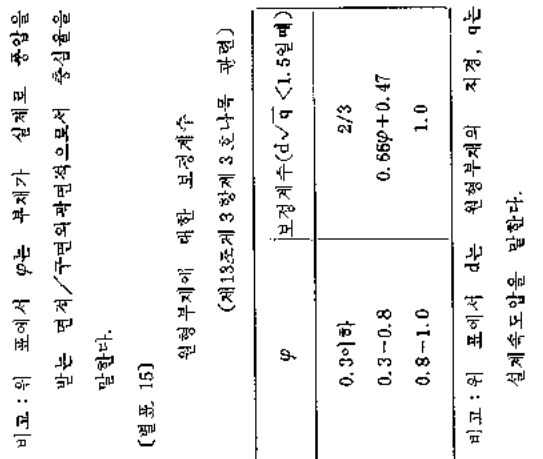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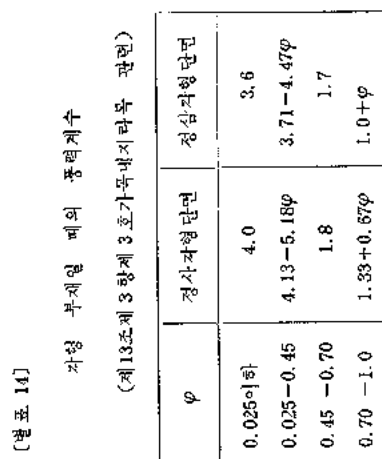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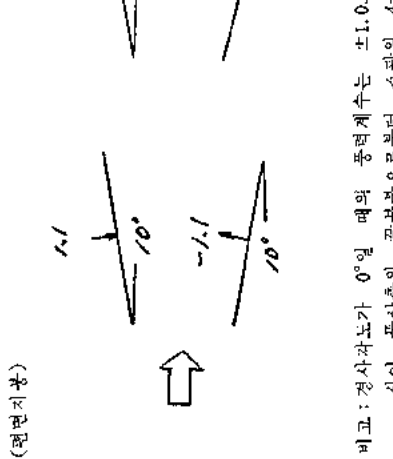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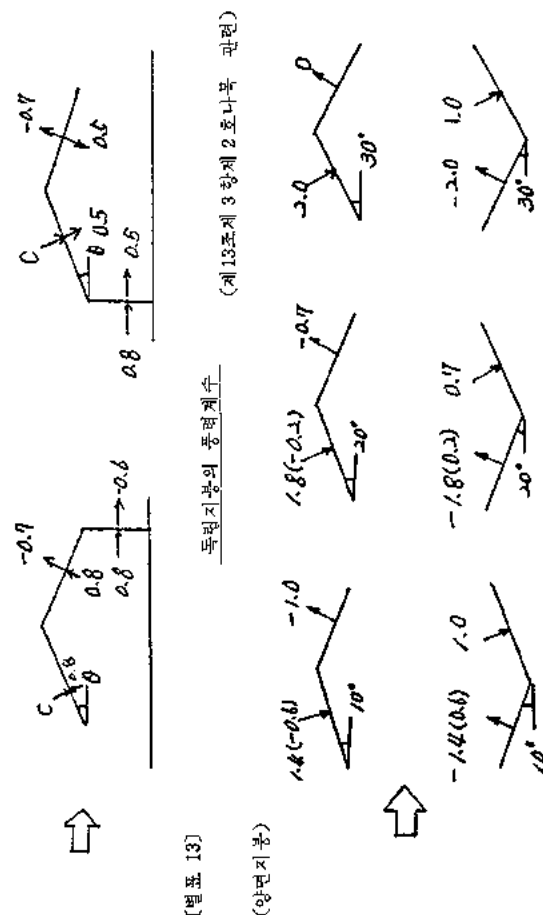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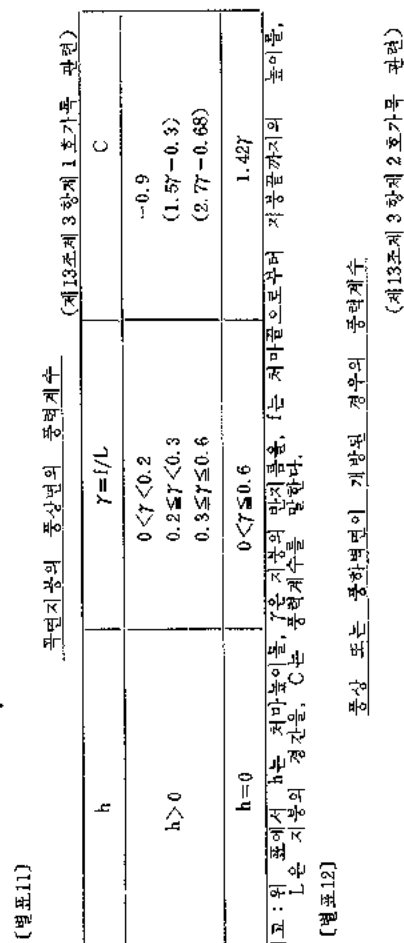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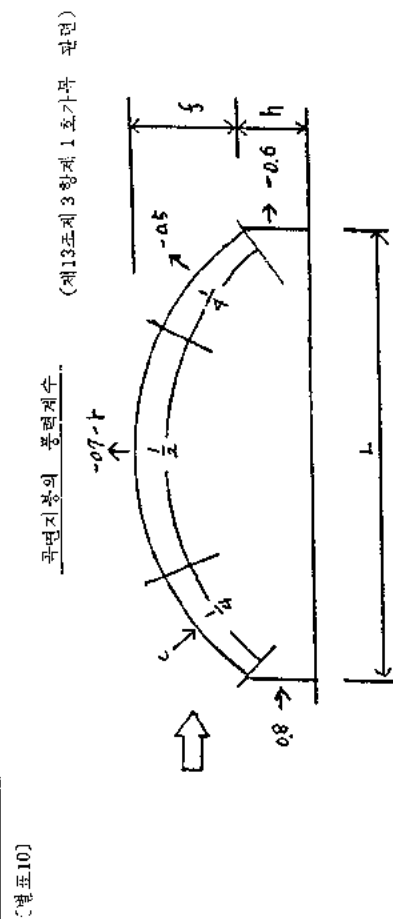
수직최심적설깊이 (센티미터)	평균 단위 중량 (P) (적설량 1센티미터당 킬로그램/제곱미터)
50이하	1.0
100	1.5
150	2.0
200이상	3.0

(별표 6) 지역별 수직최심적설 깊이
(제12조제 3항 관련)

지역구분	지	역	수직최심적설량
I	여수·진주·종무·부산·울산·제주·서귀포		30센티미터
II	인천·서울·수원·서산·대전·이리·전주·파주·울진·포항		50센티미터
III	군산·목포·춘천·청주·추천령·대구		70센티미터
IV	속초·강릉·대관령		150센티미터
V	울릉도		350센티미터

지붕경사도 및 형상중에 따른 계수 (제12조제 4항 관련)			
지붕모양			
적설하중분포 및 계수	 $C_s^* = 0.8 - \frac{\alpha - 30}{50}$ 포준값	 C_s^*	 C_s^*
	α	C_s	α
	$0 \sim 30$	0.8	0.6
	40	0.6	0.45
지붕모양	 $C_s^* = 0.8 - \frac{\alpha - 30}{50}$	 C_s^*	 C_s^*
	α	C_s	α
	$0 \sim 30$	0.8	0.6
	40	0.6	0.45
적설하중분포 및 계수	 $C_s^* = 0.8 - \frac{\alpha - 30}{50}$	 C_s^*	 C_s^*
	α	C_s	α
	$0 \sim 30$	0.8	0.6
	40	0.6	0.45

지붕경사도 및 형상중에 따른 계수 (제13조제 3항제 1호가목 및 제2호가목 관련)			
지붕모양			
적설하중분포 및 계수	 $C_s^* = 0.8 - \frac{\alpha - 30}{50}$ 포준값	 C_s^*	 C_s^*
	α	C_s	α
	$0 \sim 30$	0.8	0.6
	40	0.6	0.45
지붕모양	 $C_s^* = 0.8 - \frac{\alpha - 30}{50}$	 C_s^*	 C_s^*
	α	C_s	α
	$0 \sim 30$	0.8	0.6
	40	0.6	0.45
적설하중분포 및 계수	 $C_s^* = 0.8 - \frac{\alpha - 30}{50}$	 C_s^*	 C_s^*
	α	C_s	α
	$0 \sim 30$	0.8	0.6
	40	0.6	0.45



[illegible]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중개정령

1987. 12. 19

■ 개정이유

도시계획시설에 관한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도시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 및 설치기준의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도로의 기능별 구분으로서 현행의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국지도로 및 구획도로외에 자동차전용도로 및 특수도로(자전거 및 보행자전용도로등)를 추가함(제8조제4항).
- 나. 도로의 배치간격을 도시규모·지형조건 및 토지이용계획등에 따라 각각 원칙적인 결정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함(제10조제1호).
- 다. 도로의 노면폭은 교통분담계획과 도로공작물 및 점용물의 설치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함(제10조제2호).
- 라. 가각부의 보도·차도의 경계선은 원호 또는 복합곡선의 형상으로서 설치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최소곡선의 반경기준을 정함(제13조제2항).
- 마. 도로의 조명시설기준을 한국공업규격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제14조).

- 바. 건축법령상의 용도지역내 건축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별도로 특례를 정할 필요성이 적은 자동차검사시설·시장·연구시설 및 문화시설에 대한 시설입지 기준을 삭제함(제21조의3 제2호, 제56조제7호, 제91조제1호 및 제91조의3 제2호).
- 아. 자동차전용도로 교차지점에서 입체교차의 교차점광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간선도로의 교차점광장은 도심부에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제1항제1호).
- 자. 유원지내 건축물건폐율 기준에 관한 용어를 건축법상의 용어로 통일·조정하고 그 용적율의 상한기준을 현행의 60퍼센트에서 200퍼센트 이하로 조정함(제47조제9호 및 제10호).
- 차. 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이고 국제규격의 경기시설을 갖춘 6종목 이상의 경기장이 있는 운동장으로서 주위에 사적과 휴식공간이 있어 휴식과 관광등에 이용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관광사업시설 기타 운동장의 관리에 필요한 수익을 위한 수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함(제81조제2항).

3. 국지도로: 근린주거생활권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생활권의 골격을 형성하고, 근린주거생활권내 교통의 지산기능을 하는 도로
4. 구획도로: 가구를 확정하고 택지와와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5. 자동차 전용도로: 도시내 주요지역 또는 도시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대량통과 교통의 처리를 목적으로 차량출입을 제한하며 자동차 전용으로 하는 도로
6. 특수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자전거전용 도로 등 자동차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제10조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다만, 도시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이용계획 및 인구밀도등에 따라 배치간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 제2호 본문(각 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의 규모는 당해 도시의 성격과 발전 추세를 감안한 교통량에 대한 목표년도에 있어서의 교통기관별 분담계획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도로노면의 폭은 각종 도로공작물 및 점용물의 설치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 최소단위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0조 제3호중 “분리대” 다음에 “주·정차대”를 삽입한다.

제13조 제목 “(가각전제기준)”을 “(가각부의 처리기준)”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 또는 복합곡선의 형상으로 설치하되, 곡선반경은 다음의 값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조간선도로: 12미터
2. 국지도로: 10미터
3. 구획도로: 6미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도로의 조명시설기준) 도로의 조명시설은 한국공업규격의 도로조명기준에 의한다.

제21조 제2항제1호중

“간이주유시설”을 “자가주유시설”로, “간이정비시설”을 “자가정비시설”로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간선도로: 도시내 주요지역간, 도시간 또는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대량통과

교통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내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2.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와 국지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생활권의 외곽을 형성하고, 도시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

한다.

제21조 의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검차량의 출입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철도의 종류) 이 규칙에서 “철도”라 함은 주로 지역간의 교통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와 철도역사시설의 개선을 촉진하고 철도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관련사업의 시설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차점광장

- 가.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은 입체교차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로 또는 도류화교차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심부나 지형여건상 광장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7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유원지안에서 유원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면적의 합계는 당해 유원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유원지면적의 100분의 15 이내로 하여야 한다.
10. 유원지안에서 유원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지상연면적의 합계의 유원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 제1항중 “시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설시장,”을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대규모소매점 및 도매센터와”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매시장 : 최종소비자와의 자에 대한 물품등의 판매가 행하여지는 시장으로서 도매센터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2. 소매시장 : 최종소비자에 대한 물품등의 판매가 행하여지는 시장으로서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대규모소매점·농수산물 공판장 및 가축시장

제56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 또는 과밀화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7조 제1항중 “시장법”을 “도·소매업진흥법”으로 한다.

제79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종합운동장(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을 육상경기장과 1종목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설치하는 것 또는 3종목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관람석의 수가 1천석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다).

제81조 제2호 라목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운동장에는 운동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운동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이고 국제규격의 경기시설을 갖춘 6종목이상의 경기장이 있는 운동장으로서 주위에 사적과 휴식공간이 있어 휴식과 교양 및 관람에 이용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가. 과학·문화·교양시설

나. 관광사업시설 기타 운동장의 관리에 필요한 수익을 위한 수익시설

제91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적인 연구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도심부가 아닌 저밀도지역으로서 전기·상하수도 등 도시편익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91조 의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요시설물의 인근지역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6조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이 규칙에서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와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및 산업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로서 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127조 제1호 본문중 “

“분뇨종말처리시설 및 쓰레기종말처리시설”을 “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하고, 동호단서중 “쓰레기종말처리시설”을 “쓰레기처리시설”로 한다.

제1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의 설치기준)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및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건설부제공〉

'88년도 始務式 거행



사무식 광경



'88년도 첫 도서신고 업무 開始

본협회 88년도 始務式이 1월 4일 오전 10시부터 본부와 서울특별시지부, 서울건축사복지회 임원 및 직원이 연석한 가운데 합동으로 거행되었다.

安箕泰 회장은 이날 新年辭를 통해 「지난해에는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임원과 직원이 합심한 가운데 잘 넘길 수 있었다」고 치하하고 「금년에는 바쁜 정치일정과 올림픽 등 많은 일을 위해 국민적 입장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직원들은 심기 일전하여 직장인의 긍지를 살려 책임있게 일해줄 것」은 물론 「임원들께서도 한층 협회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더욱 큰 발전을 기록하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격려했다. 특히 安箕泰 회장은 「협회 일이라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앞장설 것이니 본부, 지부, 복지회에 서로 총화적인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俞景哲 서울특별시지부장은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해」라고 전제하고 「우리 협회로서도 연합회제도 실시를 전제로 한 독립 예산제의 출범 첫해를 맞게 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가 우리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회장을 중심으로 합심 단결하여 슬기롭게 앞길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許格 서울건축사복지회 회장은 「작년은 유례없이 바빴던 해였으나 남겨 놓은 일은 별로 없었다」고 회고

하고 「금년은 더욱 노력하여 좋은 열매를 거두자」고 말하였다.

직원 일동은 安箕泰 회장, 俞景哲 서울특별시지부장, 許格 서울건축사복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拜禮로써 개별적인 새해인사에 대신하였으며 40여분만에 始務式을 끝냈다.

한편, 구립 31일에도 본부와 서울특별시지부, 서울건축사 복지회가 합동으로 終務式을 거행한바 있다. 본協會가 88년도에懸案으로 처리 또는 추진해야 할 業務 內容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主要推進業務計劃

1. 建設技術管理法 對策

- 一. 施行令作業 直接參與 (短期)
- 一. 同法 第40條 改正作業 (長期)
- 一. 工事의 品質・工程・人事管理等 業務指針
- 一. 公務員이 행하던 감독 대행의 업무계획
- 一. 監理Check List 作成 研究

2. 日刊新聞 廣告用 文案作成

- 一. 建設技術管理法와 關聯事項
- 一. 人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內容
- 一. 建築士業務報酬基準 解説
- 一. 建築士業務 解説과

당부사항

一. 其他事項

3. '韓國의 建築' 책자發刊

- 一. 編輯費用對處 및 作品 決定
- 一. 發刊에 必要한 印刷費 충당

4. 우루과이 라운드 對策

- 一. 建築設計・監理業務의 開放對備
- 一. 國內建築士 免許와 海外免許認定

5. 2級建築士 特別銓衡制度改善

- 一. 法改正 初案作成 建議
- 一. 方法에 대한 대책수립

6. ARCASIA大會 開催準備

- 一. 資材, 作品 共同展示場 및 호텔選定
- 一. 찬조業體 및 찬조비 마련
- 一. 國際會議에 必要한 제반事項 準備

7. 建築士業務報酬基準 改正 建議

- 一. 設計・監理報酬料率 現實化
- 一. 用役報告委員會 檢討

8. 許可制度 改善案 作成

- 一. 支部別 도서심의회도 강화
- 一. 一定 規模以下 建築物의 設計監理 一元化

9. 調査・檢査대행 建築物業務 改善方案

- 一. 支部別 實施하는 內容
- 一. 現行制度의 改善點 보완 建議

10. 建築士不在地域 建築士事務所 設置方案 研究

11. 會誌 '建築士' 自立 運營 體制 確立

- 一. 廣告 및 有料로 자립 기반 研究

12. 週間新聞 發刊推進

- 一. 協會弘報 增大로서 비예산사업추진

13. 會館實貨收入 増大로 自立 運營 研究

14. 建設部內 建築局 新設建議

15. 建物유지관리보고 및 運營 細部事項 研究

16. 設計著作의 前設計者 同意書첨부 改善案 研究

17. 建築士業務 제한실시 개선 안 작성

18. 建築士 所得 標準率 引下 推進

19. 定款改正案 研究

20. 年金 效率 運營 研究

21. 경향하우징페어作品 展示 準備

22. 地方巡迴作品 展示會 開催 準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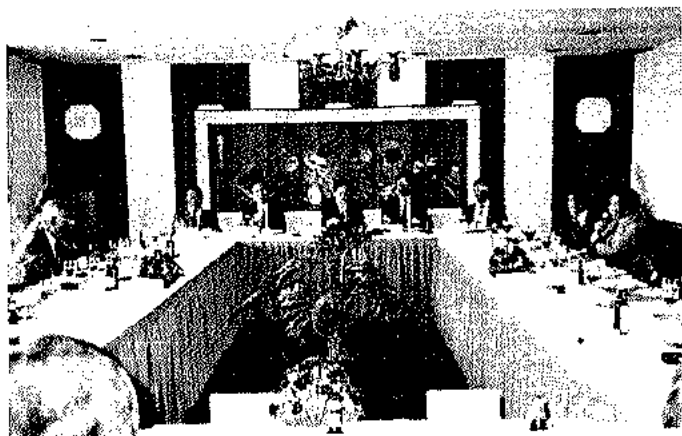
23. 建築資材展示會 開催準備

이외에도 총회에서 보고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支部消息

서울특별시지부

지부장 俞景哲



서울시장간담회(서울특별시지부)

서울시장과 간담회

지난 11월 6일 엔지니어 클럽에서 서울특별시 김진원 부시장, 유명규 건설관리국장, 변영진 건축과장과 서울특별시지부 유경철 지부장, 이

영희 부지부장 및 지부 임원·분소장·협의회장 등이 연석한 가운데 지부 당면과제인 건축사 행정처분 문제, 감리업무문제 등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의견 교환을 하였다.

감리제도 관련 공청회

지난 11월 20일, 본회 4층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건축과장과 서울특별시지부 지부장, 임원, 분소장, 지역감리사무소 소장이 연석한 가운데 감리제도 개선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공청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감리제도에서 상설점검반

배제

- 현행 감리제도에 상설점검을 지역감리반에서 하도록 함
- 교환감리제도 바람직
- 감리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설계사가 감리하는 방안(현행 제도하에서는 불가하므로 건축사법이 개정되어야 함)

건축실시

구립 4일 회원 약1백50명이 한국

무역센터를 방문, 특수건축물에 대한 현장 견학을 실시하였다.

서울시와 간담회

구립 4일 지부장실에서 유명규 건설관리국장, 변영진 건축지도과장, 건설행정계장, 행정계장을 초청하고 유경철 지부장, 이영희 부지부장을 비롯한 양원영·유용준·민경진·성도영·권태정·박창호·이정재·정정찬간사, 장순 강동분소장, 김인곤 강남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설점검반 폐지
- 교환 분리감리 협회에 위임
- 건축사에게만 책임 전가되는 행정처분 배제



감리제도 개선에 따른 공청회

인천직할시지부

지부장 鄭昌奎

市政發展 유공표창 수상

평소 남다른 애항심으로 지역사회 의 안정과 주민복지증진에 건력함으로써 市政發展에 기여한 공이 크게 인정되어 구립 11일 仁川直

轄市로부터 鄭昌奎 지부장이 단체 표창을 수상한 것을 비롯, 高昌永 지부장, 金相郁 회원, 沈昌求 회원, 朴仁遠 회원이 각각 개인표창을 받았다.

광주직할시지부

지부장 朴永憲

신년 始務式

1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광주 건축사회관 회의실에서 회원과 사

부국 직원 등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겸한 始務式을 거행하였다.

신년 인사회를 겸한 始務式(광주지부)



경기도지부

지부장 趙相鎬



건축사 송년회(경기도지부)

건축사 送年會

구립 11일 수원소재 부라운 관광호텔 6층에서 지부 임원, 대의원, 회원 등 70여명과 경기도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87년도 건축사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본 송년회 석상에서는 개인 경비를

들여 87년도 경기도 주택개발사업 계획에 의거한 농어촌 합동주택 모형을 제작 출품함으로써 건축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한 趙命鎬, 劉聲鍾, 崔在楠 회원에 대한 京畿道 知事の 표창장 수여식과 權純在, 崔勝元 회원에 대한 지부장의 감사패 수여식도 함께 거행되었다.

충청남도지부

지부장 康祐植

대전건축사 부부송년회

구립 28일 대전시 소재 신신농원그릴에서 지부 소속회원 부부 약90명이 모인 가운데 87년도 대전건축사 부부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이웃돕기 성금기탁

구립 30일 새 충남 상조은행에 이

웃돕기 성금 30만원을 기탁하였다.

청소년육성 기부금 기탁

작년 10월 26일 청소년육성기부금 50만원을 한국청소년연맹에 기탁하였다.

경상북도지부

지부장 金永吉

경북건축사 송년회의 밤

구립 29일 경주 도곡호텔에서 지부장을 비롯한 회원 52명이 부부 동반한 가운데 경북건축사 송년회 밤을 개최하였다. 송년회 밤에 참석한 건축사 일동은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는 외에도 해안경비대 대원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을 위문하기 위한 축적 모금을 하여 72만 8천원을 모으기도 하였다.



경북건축사협회 송년의 밤(경북지부)

제주도지부

지부장 白亨哲



지부장일행 보육원 방문(제주지부)

'88신년 교례회

1월 4일 오전, 지부 회의실에서 지부회원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88신년 교례회를 가졌다. 白亨哲 지부장은 새해에는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단결하자는 내용의 신년 인사말을 하였다.

'87송년회

구립 11일 파라다이스 제주호텔에서 회원부부 합동으로 노래자랑, 경품뽑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송년회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현경대 지역구 국회의원도 참석하여 축하하여 주었다.

연말 이웃돕기

구립 30일 지부장과 임원 등 일행이 제주 보육원을 방문하고 10만원 상당의 과일을 전달, 보육원 어린이들을 위로하였다. 제주도지부는 10년전부터 보육원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 4명과 結婚하고 매년 2명분의 양육비와 2명분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오고 있다. 한편, 구립 30일에는 서귀포 이세환 분소장이 분소 회원과 서귀포 성요셉 양로원을 방문하고 연탄 구입비로 10만원을 기탁하였다.